

연구보고 2016-56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1.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통일학연구원)

연구책임자 : 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기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 박민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원)

##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통일학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수혜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분석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 사회 정착에 중요한 부분인 경제적인 정착과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사회문화적 적응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및 인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요하게 다룬다.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3만 여명에 다다르고 있고, 그 중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71%로 남성 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응 교육, 정착금 지원, 취업 지원, 사회보장 지원, 교육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 보니 해당 지원에 대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혜율이 적지 않기는 하나, 기존의 정책들은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여성 북한이탈주민 경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에서부터 남성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었고,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도 남성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주요 지표로 제시되는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보다 13.1%포인트 낮고, 평균 임금도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임금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72.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회문화적인 적응과 관련해서도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남성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적응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의 내용과 정도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 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제1장 3절, 4절)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에 대한 성별 분석(제3장)
- 북한이탈주민 정착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제4장)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법률 및 조례 성별영향분석(제5장)
-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제6장)

### ○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분석
- 통계자료 분석 :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조사』,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 )』
- 설문조사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여성 138명, 남성 62명)으로 설문조사 실시
- 심층면접 : 1) 북한이탈주민 17명(여성 11명, 남성 6명)을 대상으로 구직 및 취업 경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사업 담당자 5명(전문상담사 3명, 고용지원센터 상담사 1명, 양성평등교육 강사 1명) 면접 실시
- 자문회의 운영 : 북한 및 탈북청소년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실무 담당자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 III. 주요 연구결과

### I. 북한이탈주민 현황

-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29,830명이고, 이 중 여성이 21,114명, 남성이 8,71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71%이다. 연령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30대가 8,602명(29.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다음

이 20대 8,350명(28.3%), 40대 4,970명(16.7%)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직업을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은 무직 부양이 가장 많고, 남성은 노동자가 가장 많다. 재북 당시 생활수준은 중간층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데, 여성이 남성 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은 전체적으로 중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수를 보이나,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여성 보다 남성의 학력 수준이 높았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 형태는 ‘양부모-자녀가구’가 27.6%로 가장 높고 ‘성인 단독가구’ 27.2%, ‘편부모-자녀가구’가 24.3%로, 여성 가구주 비율이 남성 가구주 보다 높게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득한 학력은 일반대학교가 30.3%로 가장 높고, 다음이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 19.6%, 전문대학 16.0% 순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은 65.0%, 여성 51.9%로 남성의 참가율이 높고 평균임금은 여성 130.3만원, 남성 180.4만원으로 임금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 종사 업체의 유형으로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남성은 ‘제조업’, ‘건설 및 운수업’ 순으로 높다. 종사상의 지위는 남성은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만족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높는데, 만족의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 보다 높았다.
  
- 향후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여성의 경우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에 대한 성별 분석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과 취업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안정 지원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고, 취업 지원은 직업훈련비 및 훈련 수당,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지급과 자산형성제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문화적응 지원은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교육과 함께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 1) 생활안정 지원 정책

- 생활안정 지원 정책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적용 수급자의 수가 2013년 5,627명에서 2015년 3,499명으로 줄어들었다.
  - 성별로 특례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은 41.4%, 남성은 42.5%로 나타난다.
  - 특례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정착지 진입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50%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고, 여성이 남성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 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5.3%이고, 여성 29.3%, 남성 15.1%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이 높아 여성의 생계급여 의존도가 높고,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 취업지원 정책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은 여성의 수혜율이 높으나, 실제 취업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취업장려금 수혜율은 남성이 높다.
  - 직업훈련 수당 수혜율은 남성 7.9%, 여성 12.5%, 직업훈련 장려금은 남성 3.8%, 여성 7.0%, 자격취득 장려금은 여성 9.6%, 남성 6.2%이다. 반면 취업장려금은 남성 35.6%, 여성 33.3%로 남성이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
  - 2015년 시행된 자산형성제도의 경우 남성 1명, 여성 7명이 신청하여 여성 신청자가 많으나, 신청 액수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은 1인당 평균 신청액이 6,000,000원이고 여성은 5,400,000원이다.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비율은 2015년에는 남성 26명, 여성 134명으로 여

성의 수가 많은데, 취창업률에서는 남성 84.6%, 여성 51.5%로 남성의 취창업률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난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2015년 이용자가 299명으로 취업 연계율은 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문화적응 지원 정책

-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원에서는 12주간 총 39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적응센터는 2주 동안 60시간의 교육을 운영한다.
  - 하나원 교육과 지역적응센터 교육은 거의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원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관련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 지원 중 의료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의료 급여 1종 수급자는 여성이 11,741명, 남성 4,699명으로 모집단과 유사한 성별 비율을 보인다.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취업이 11,817건으로 가장 많고, 심리·정서 11,234건, 건강 9,497건이 뒤를 이었다.
- 교육지원은 정규학교 지원과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여성의 경우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남성은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비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607명, 남성이 3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경우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하는데 하나원은 전체 교육 시간 중 3시간, 지역적응센터는 2시간을 배정하고 있었다.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은 만족도 하위 10위 과목에 포함되고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 1) 경제적 정착 경험

-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하나원 퇴소 직후인 경우가 전체의 23%로, 많은 수가 남한 정착 초기에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에 정착하며 생계비를 받더라도 생활비와 브로커 비용, 북한 송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이고, 이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뒤로 미루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제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직업 훈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율과 장려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참여율과 수령비율이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양상은 자격증 취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경우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취업을 하더라도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생애 주기와 정착 단계, 진로 등 정착과 생활 전반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훈련부터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인 직업 교육이 아니라 정착 단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구직활동 경험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이용하기보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 북한이탈주민이 공공지원 기관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공지원 기관에서 연결해주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에 회의적이기 때문이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낮고 평균 임금도 낮다. 종사하는 사업체 유형에서도 직종 분리가 나타



나고 있고,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에서도 성별 차이가 보였다. 근로형태는 북한 이탈주민의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 여성의 경우 30-45시간 미만, 3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보다 월등히 높아 여성의 근로 시간이 남성 보다 짧음을 알 수 있다.

- 여성들의 근로 시간이 짧은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고, 육아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와 노동 문화의 차이도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남성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문제로 일하는 방식과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출산과 육아로 인한 교육기회 및 경력 단절의 문제, 둘째, 교육 기회 부족의 문제, 셋째, 건강상의 문제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 넷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직장 내 조직 문화의 부적응 문제, 다섯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진로 설계의 부재이다.

## 2) 사회문화적 적응 경험

○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 정착과 경제활동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이다.

-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환경,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외상,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입국 초기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녀 양육에만 몰두하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다.

-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가족 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은 가족 문화와 자녀 양육,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에 비해 남성은 직장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배우자가 남한 출신, 중국 출신, 북한 출신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특성이 가족 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만족도는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 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녀 양육 문화의 차이도 어려움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소통이나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기도 했다.
  -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자신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등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수혜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 조사 전체 사례 수 200명 중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75.5%였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83.5%였다.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함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당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시행한 교육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직장에서 받은 교육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규모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폭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과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력은 배우자와 직장 상사에 의한 경우들이 있었고, 피해에 대해 참고 말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별 차이는 나타났는데 여성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의 정도가 여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여성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인식하기도 하였다.

####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분석

-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법률과 시행령, 규칙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 범위, 기준 등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 IV. 제도개선과제(안)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정책 수혜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정보 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고,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구한 경로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가 24.0%로 가장 높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친구, 지인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임.</li> <li>- 북한이탈주민의 인적 네트워크가 초기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li> </ul> </li> <li>○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정착 지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는 하 나원과 지역하나센터 교육을 통해서만 접하게 됨.</li> <li>-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살펴 보면 여성에 특화된 정보나 관련 기관과 연계가 미비한 실정임.</li> </ul> </li> <li>○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해당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ul>	<p><b>1.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p.205)</b></p> <p>①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개발</li> <li>-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취업 정보, 각종 지원 서비스 정보,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신고 및 대처 방안, 여성 관련 지원 기관 소개</li> </ul> <p>②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 다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보완: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연동</li> <li>-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 초기 적응 교육 시 관련 기관 및 지원 사업 소개: 관련 기관 방문이나 기관담당자 프로그램 참여 등</li> </ul>	<p>통일부 정착지원과</p> <p>통일부(남북하나재단, 하나원)</p>
경제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외에 ‘여성’이라는 변수임.</li> </ul>	<p><b>2. 여성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p.208)</b></p> <p>① 자선형성제도의 기입 조건 완화</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지원 정책 중 자산형성제도의 경우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가입금액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격차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p> <p>- 자산형성제도 수혜자는 2015년 기준 여성 7명, 남성 1명이고, 평균 신청액은 여성 5,400,000원, 남성 6,000,000원으로 성별 격차가 나타남.</p> <p>○ 정착 초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간제 노동을 시작하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생계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함.</p> <p>-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첫 시작 시기는 퇴소 직후인 경우가 23%로 많은 수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일 시작 시점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1개월 이상-3개월 이내' 일을 시작했다 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이었던 것에 비해, 남성은 '6개월 이상-12개월 이내' 가 많은 비율을 보임.</p> <p>○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에 연결되지 못함. 직업훈련 수당 및 장려금, 자격 취득 장려금은 여성이 남성 보다 높으나, 취업 장려금은 남성이 35.6%, 여성이 33.3%로 남성의 수혜율이 높음.</p> <p>-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취업유율에</p>	<p>-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 운영 지침」 개선: 하한선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p> <p>② 체험 중심 직업 교육과 의사소통 훈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의 체험 중심 직업 교육 확대</li> <li>- 폴리텍대학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교육 훈련 실시</li> <li>- 언어 및 의사소통 훈련 지원</li> </ul> <p>* 내일배움카드제의 취약계층 특화 계약직함훈련과정에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및 의사소통 훈련 포함</p>	<p>③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시기에 따른 단계별 적응, 취업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진입 직후, 1년 후, 2-3년 후, 5년 후 등 각각 적응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공</li> </ul>	<p>통일부(하나원, 지역적응센터)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p>
<p>○ 지역적응센터, 고용지원센터, 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정보서비스 연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센터 간 업무 협력 추진(사례 관리, 일자리 연계, 상담 등)</li> <li>- 지역적응센터: 초기 대상자 발굴과 연계, 취업 지원 사례 관리, 업무 연계를 담당</li> <li>- 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진로 설계를 담당</li> <li>- 새로일하기 센터: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업무 담당</li> </ul>	<p>통일부 정착지원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p>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서 남성 84.6%, 여성 51.5%로 남성의 취창업율이 높게 나타남.</p> <p>○ 남북한의 문화 차이로 구직 과정 및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임.</p> <p>○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적응센터, 고용지원센터, 세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으나, 통합적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p> <p>→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p>		
	<p>○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문제 중 하나는 고용의 질이 열악하다는 점임.</p> <p>-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수준인데, 재북 학력 뿐만 아니라 남한 취득 학력이 남성보다 낮아 취업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p> <p>- 남성이 여성보다 일반대학교 재학 비율이 더 높고(남성 32.5%, 여성 29.5%), 대학원 이상 재학하는 비율도 더 높음(남성 5.2%, 여성 3.1%).</p>	<p><b>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p.211)</b></p> <p>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진학 및 학업 유지 지원기반 연장</p> <p>-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임신출산으로 진학이 지연된 경우에 한해 대학진학 연령을 현행 만 35세 미만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연장</p> <p>- 대학 재학 기간 동안의 교육 지원 시 임신 출산으로 학업이 지연되는 경우 지원 기간 연장</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복지 지원	<p>○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이산의 상처 등으로 인해 알콜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p>	<p><b>5. 북한이탈주민 복지 지원 강화(p.214)</b></p> <p>① 북한이탈주민의 중독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중독 사업 추진</p>	<p>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p>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들이 있음.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적응과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은 알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li> <li>-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도 남성의 경우 지난 1년동안 음주량이 주 1-2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li> <li>- 그 외 약물중독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사범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와 연구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응센터와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li> </ul>	
	<p>○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 내용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개별 강사에 의존하는 경향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시행하는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이 진행 교육 상 황에 따라 교육 시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교육에 대한 시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li> </ul> <p>○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북한 내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의식 및 폭력,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 여성 북한이탈주민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pp.143-163 참조).</li> </ul>	<p><b>6.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보장 및 전문화(p.215)</b></p> <p>①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 3시간, 지역적응센터 2시간 이상 교육 시수 보장</li> <li>-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등 교육대상 확대</li> </ul> <p>②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교육 매뉴얼 개발 및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표준 매뉴얼 개발</li> <li>- 개발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강사 대상 보수 심화 교육 진행</li> <li>- 강사 전문성 증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li> </ul> <p>③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폭력 및 차별 대처 매뉴얼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 피해 사례 조사</li> <li>- 여성 북한이탈주민 피해 사례별 대응 방안 제시</li> </ul>	<p>통일부(하나원)</p> <p>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통일부 정착지원과</p> <p>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p>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 북한이탈주민은 어려움의 주요 의논과 상담의 대상으로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를 끌고 있으나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의 경우 여성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지역적응센터 상담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p>	<p><b>7. 지역적응센터 상담의 전문화(p.216)</b></p> <p>①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강화 - 전문상담사의 상담 역량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폭력 상담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p> <p>② 폭력 피해 지원 전문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 - 지역적응센터와 폭력 피해 지원 기관 업무 연계를 통한 폭력 피해 대응 -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이해 교육 실시</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정책 수립 및 실행 체계	<p>○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 의식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미흡한 실정임.</p>	<p><b>8.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p.219)</b></p> <p>① 북한이탈주민정책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p> <p>②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지침」, 개선 - 제6조(활동 지원)</p> <p>⑤ 이사장은 상담사들의 성인지 의식 함양을 위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lt;신설&gt;</p>	<p>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p>○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다수이고, 통일정책과 젠더 이슈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내에 여성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부재함.</p> <p>○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착을 시행하는 유관 부처의 협력 체계는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 협력 체계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p>	<p><b>9. 성인지적 관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실행을 위한 체계 마련(p.219)</b></p> <p>① 유관 부처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책 협의체 구성 - 통일부(통일여성정책과) 주관 하에 해당 부처 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업무 협의</p> <p>②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보장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관련 협의회 구성 시 여성 참여 보장 내용 지침에 포함 *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위원) 개선안</p> <p>7.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p>	<p>10.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및 정책 수혜에 대한 성별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p.220)</p> <p>① 성별분리통계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제도 수혜와 관련한 성별 분리 통계 마련과 대외 발표 시 성별 분리 통계 제시</li> <li>-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의 각종 서식에 성별 표기란 마련</li> <li>(교육지원신청서, 관리대상자 명단, 만족도 조사 설문지, 감사 현황 등)</li> <l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사이트 내 특화 통계 DB에 여성북한이탈주민 통계 자료 추가</li> </ul> <p>② 정착 경험의 성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 조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조사문항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와 조사 문항 및 선택 문항 개발</li> <li>-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인권 실태 조사 추가 시행</li> </ul>	<p>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p>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p>
<p>○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p>	<p>12.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p.222)</p> <p>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개신안 - 제5(보호기준 등)</p> <p>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기준은 성별,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 제24조(교육지원)</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p>통일부 정착지원과</p>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성별, 나이, 수능능력(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p> <p>② 통일부 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르고 양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p> <p>-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40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또는</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이 지연된 경우 만 40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사람.</p>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7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	10
제4절. 해외 사례 .....	15
<b>제2장 북한이탈주민 일반 현황</b> .....	33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입국 현황 .....	35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	39
<b>제3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b> .....	57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요 .....	59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지원 .....	65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	82
<b>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b> .....	103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105
제2절. 경제활동 경험 .....	111
제3절. 사회문화 적응 경험 .....	147
<b>제5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 법률 성별영향분석</b> .....	185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	187
제2절. 경제적 자립지원 및 교육지원 .....	189

<b>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b> .....	19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95
제2절. 정책 제언 .....	205
■ <b>참고문헌</b> .....	225
■ <b>부    록</b> .....	229
[부록]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양성평등 등 교육 실태 조사 설문지 .....	231

## 표 목 차

<표 1-1>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	17
<표 1-2>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교육지원 .....	19
<표 1-3> 서독의 동독이탈 장기실업자 지원정책 .....	21
<표 1-4> 통일과정에서의 여성관련 법률 개·제정 내역 .....	23
<표 1-5> 독일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	24
<표 1-6> 이스라엘의 이주자 정책 대상 구분 .....	25
<표 1-7>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주자 정착지원 부서 및 업무 내용 .....	26
<표 1-8> 이스라엘의 이주자 정착지원정책 개괄 .....	27
<표 1-9>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주자 정착지원정책 .....	28
<표 2-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16년 9월 말) .....	35
<표 2-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입국 현황 (2016년 9월 말) .....	36
<표 2-3> 탈북 동기별 현황 (2014) .....	37
<표 2-4>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 (2016년 9월 말) .....	38
<표 2-5> 재북 시 생활수준 .....	38
<표 2-6> 북한이탈주민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 (2016년 9월 말) .....	38
<표 2-7> 남한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형태 .....	40
<표 2-8>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내 본인의 위치 .....	40
<표 2-9> 배우자 출신국가 .....	41
<표 2-10> 취학 전 자녀 유무 .....	41
<표 2-11> 취학 전 자녀 출생국 .....	42
<표 2-12> 현재 다니는 학교의 종류 .....	43
<표 2-13> 향후 진학 계획 (재학경험 무) .....	44
<표 2-14> 과거 재학 학교(전문대학 및 일반대학교) 자퇴 이유 .....	45
<표 2-15> 현재 다니는 학교(전문대학 및 일반대학교) 휴학 이유 .....	45
<표 2-16> 종사 사업체의 유형 .....	47
<표 2-17> 사업체의 종사자 수 .....	48

<표 2-18> 직장에서의 지위 (종사상 지위) .....	49
<표 2-19>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 .....	50
<표 2-20>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 이유 .....	50
<표 2-21>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 .....	51
<표 2-22> 지난 1년 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 .....	52
<표 2-23> 차별/무시당한 이유 .....	52
<표 2-24> 3년 전 대비 생활여건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 여건 (만 19세 이상) ..	53
<표 2-25> 향후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	54
<표 2-26> 향후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 .....	55
<표 2-27> 향후 확대해야 하는 복지 서비스 .....	55
<표 3-1>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	61
<표 3-2>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	62
<표 3-3>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63
<표 3-4>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	65
<표 3-5>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선 ('15년 6월까지 적용) .....	66
<표 3-6> 북한이탈주민 특례수급자 성별 현황 .....	66
<표 3-7>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	67
<표 3-8>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원 제도 변화 .....	69
<표 3-9> 미래행복통장 제도 .....	71
<표 3-10>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제도 .....	73
<표 3-1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적 .....	74
<표 3-12>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	75
<표 3-13>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 수혜 현황 .....	76
<표 3-14> 2015년도 자산형성제도 신청 현황 .....	77
<표 3-15> 2016년 남북하나재단 취업 프로그램 .....	78
<표 3-16>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	80
<표 3-17>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	81
<표 3-18> 새로일하기센터 이용자 취업 현황 .....	81
<표 3-19> 2016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 교육 프로그램(정규) .....	83
<표 3-20> 2015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	85

<표 3-21> 지역적응센터 초기 집중 교육 내용 .....	85
<표 3-22>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표준 교과 편성안(기본 프로그램) .....	86
<표 3-23> 지역적응센터 지역 적응 지원 표준 교과 편성안 .....	87
<표 3-24>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 평가 상위 10과목 .....	89
<표 3-25>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진료 현황 .....	91
<표 3-26> 북한이탈주민 의료 급여 1종 수급자 .....	92
<표 3-27> 개인 심리상담 및 검사 현황 .....	92
<표 3-28> 지역적응센터 상담실적(2015년 기준) .....	93
<표 3-29> 현재 다니는 학교 종류 .....	94
<표 3-30>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수혜 현황 .....	95
<표 3-31> 2016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 교육 프로그램(우리 사회 이해 증진) .....	96
<표 3-32> 2016 하나원 사회적응 자율 참여 보충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98
<표 3-33> ‘결혼과 가정생활’ 및 ‘알기 쉬운 인권 이해’ 교과목 평가 .....	100
<표 4-1> 응답자의 성별, 거주지역, 연령 .....	105
<표 4-2> 응답자의 탈북년도 및 입국년도 .....	106
<표 4-3> 응답자의 결혼 상태 .....	106
<표 4-4> 응답자의 가족 구성 형태 .....	106
<표 4-5> 북한에서의 학력 .....	107
<표 4-6> 남한 학력 .....	107
<표 4-7> 재북 당시 직업 .....	108
<표 4-8> 현재 취업 여부 .....	108
<표 4-9> 현재 직업 .....	109
<표 4-10>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대상자 .....	110
<표 4-11>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계자 심층면접 대상자 .....	110
<표 4-12> 하나원 퇴소 후 처음 일 시작 시점 .....	111
<표 4-13> 남한에서 처음 구한 일자리 .....	113
<표 4-14> 첫 일자리를 구한 경로 .....	113
<표 4-15> 첫 일자리에서의 근무 기간 .....	114
<표 4-16>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	114

<표 4-17> 직업훈련 참여 및 직업훈련 장려금 수령 여부 .....	117
<표 4-18> 취업 장려금 수령 여부 .....	117
<표 4-19> 취업 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 .....	118
<표 4-20> 자격증 취득 여부 .....	118
<표 4-21> 자격증 취득 분야 근무 경험 .....	119
<표 4-22>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 (중복응답) .....	120
<표 4-23> 취업 상담 경험 .....	126
<표 4-24> 현재 경제활동 상태 .....	129
<표 4-25> 2014년 성별 경제활동 상태 .....	130
<표 4-26>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 (주업 및 부업 포함) .....	132
<표 4-27> 북한이탈주민 산업별 근로현황 및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 .....	134
<표 4-28> 남한 입국 후 취득 학력 .....	135
<표 4-29> 주업에서의 주당 근로 시간 .....	137
<표 4-30> 평소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상위 7순위 .....	138
<표 4-31>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	143
<표 4-32> 지난 1년 동안 음주량 .....	148
<표 4-33> 배우자 만족도 .....	154
<표 4-34> 제3국 탈북청소년 현황 .....	157
<표 4-35> 양성평등 교육 수혜 여부 .....	162
<표 4-36> 양성평등 교육 기관 .....	163
<표 4-37>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수혜 경험 .....	163
<표 4-38>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기관 .....	164
<표 4-39> 성희롱 및 성폭력 인지 수준 .....	170
<표 4-40> 폭력 피해 지원 기관 인지도 .....	170
<표 4-4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교육유형별, 직급별 교육실적 .....	171
<표 4-4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	172
<표 4-4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 .....	172
<표 4-4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후 대처 방법 .....	173
<표 4-45> 성희롱 및 성폭력, 폭력 대응 방식 .....	174
<표 4-46> 배우자의 폭력 .....	175



<표 4-47> 폭력에 대한 인식 .....	177
<표 4-48> 성별고정관념 .....	179
<표 4-49> 북한이탈여성의 성인지·성평등 의식 인식 .....	180
<표 4-50> 성평등의식 .....	181
<표 5-1>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관련 예산사업의 개요 .....	187
<표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 .....	188
<표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	189
<표 5-4>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지원 관련 예산사업의 개요 .....	189
<표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 .....	190
<표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	191
<표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	191

## 그림 목 차

[그림 4-1] 2014년 일반국민 대비 성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 .....	131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10
제4절. 해외 사례	15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의 어려움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계속 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과 사회적 편견의 문제를 다루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의 비율이 북한이탈주민의 70%가 넘음에 따라 젠더 관점이 반영된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여성신문, 2016년 6월 17일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 2016년 9월 현재 까지 총 29,83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입국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2016년 9월 현재 여성의 비율이 71%로 남성 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성별 입국 현황을 바탕으로 예측하건대 향후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정착 문제는 북한이탈주민 전반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국내 정착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령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대와 30대, 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착은 북한이탈주민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착 지원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전반의 성공적인 정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들 경험의 특수성과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위치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성별 고려가 필요한 또다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경험의 성별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라는 점에서 남성 북한이탈주민과 공통점을 지니기도 하지만,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탈북 동기와 과정에서부터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남성은 차이가 있고,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였고,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장활동, 성매매 등 불법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보장체계 붕괴로 인해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오로지 시장과 자신들의 생존 활동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생존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을 결정을 하게 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을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국경을 넘는 과정,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생활 등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신매매와 성매매,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더욱이 탈북 이후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불법적인 지위로 인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권 침해의 상황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과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혼 역시 불법적인 경우가 많았다. 결혼 이후 자녀를 출산하게 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남한으로 입국 후에는 국적이 다른 남편과 자녀 문제, 혹은 가족의 이산 문제로 정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북한 내, 탈북 및 제3국 체류 과정, 남한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경험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재북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무직 부양'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노동자'가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고연령의 여성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무직 부양의 수가 많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대부분 경제난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직 부양의 수가 많은 수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직업 현황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력단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의 직업이 남한에서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시장 활동 외의 직업활동을 가진 경우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직업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 경험의 특수성과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남성의 정착 실태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적인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도 양적으로 늘어나기는 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연구는 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경험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떤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기존 정착 지원 체계가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책 수혜와 정책에 대한 요구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의 경우, 여성은 ‘의료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남성은 ‘취업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교육 지원’에 대한 응답율이 남성 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이들이 처한 위치와 경험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책적 요구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성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 사회와는 다른 문화 속에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김석향 외(2009)의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여성부)에 따르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과 결혼, 우울증 등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원하고 있었다. 조영아 외(2005)의 연구에서도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면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능력의 부족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이들에 대한 부부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자녀교육을 돕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실시,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이 후유증 극복을 위한 치료와 지원, 성폭력 등의 여성 특유의 외상 경험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하는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도 심각한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더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적은 편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인식 및 정보 수준이 낮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폭력의 경험이 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조영아 외(2010), 김현경(2010), 홍승아(2012) 등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맥락 속에서 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문화적·경제적 위치의 성별 차이는 정책적 요구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에 정착 실태에서 나타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남성의 차이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착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경험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취업과 관련한 정착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이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이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착의 도움을 위해 고용과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남한 사회의 정착의 내용에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남한 사회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들에 대한 의식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 차이 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위치, 이들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성별 분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결과 및 통계 자료들에 대한 성별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정착 현황과 정책 환경의 성별 차이를 파악할 것이다.

####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 취업지원 정책 및 양성평등·인권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 중 본 연구에서는 취업지원정책과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진행한다. 각 지원정책의 지원 내용과 그에 따른 정책 수혜 경험과 정책 수혜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한다.

#### 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적응 경험 분석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정착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문화적 차이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적응과 사회문화 적응 경험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구직 및 취업 경험, 건강상의 문제, 교육 경험을 다룰 것인데, 교육 경험의 경우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의식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지침과 규정들이 마련되고 있다. 관련하여 법률 자체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마. 성인지적 관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현황, 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 차이 및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내용 및 수행 방식, 지침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선안, 예산 반영 계획 등 성인지적 관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2014년 12월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약 27,500여명 중 23,141명을 조사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1차 자료로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및 가족 실태, 생활만족도 및 교육 실태, 경제활동 상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제도, 건강 및 의료 등의 정착 실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에서 2015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와 경제활동 자료도 활용하였다.

그 외에 본 연구와 관련한 학술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통계를 검토한다. 특히 기존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통일

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자료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나.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요구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내용은 두 분야로 구성하였는데, 취업 현황 및 취업 지원 수혜 경험에 관한 부분과 양성평등 교육 수혜 경험 및 성인지 의식 관한 부분이다.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여성이 138명, 남성이 62명이었다. 설문조사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 다.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성별 차이와 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경험의 맥락과 성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 및 지원정책에 대한 다층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에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실행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7명을 대상으로 적응의 과정과 북한이탈주민정책 수혜 및 서비스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11명, 남성 6명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 3명(여성 2명, 남성 1명), 30대 6명(여성 4명, 남성 2명), 40대 6명(여성 4명, 남성 2명), 50대 2명(여성 1명, 남성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정책 및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정책 현황을 비롯하여 정책 및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다. 대상자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3명(취업 2명, 심리 1명), 고용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담당 상담사 1명, 하나원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1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의 경우 1명은 북한이탈주민이다.

## 라.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북한 및 탈북 청소년 전문가 1명,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2명,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무 담당자 1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연구자 2명이 참여하여 본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 1.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역시 급속히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관련한 연구(이금순 외, 2003; 강혜영 외, 2009; 김승희, 2009; 안상윤, 2013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하영수, 2010; 김영수 외, 2010; 조동운·김용태, 2011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이우영 외, 2000; 서창록, 2010; 송인호, 2012; 나영주, 2016 등)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적응 실태와 종합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조사·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구체화된 정착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노동과 관련 연구(강일규, 2003; 선한승, 2005; 유길상·김화순, 2007; 조은상, 2012),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의 효과성 연구(황인창, 2007; 김연희, 2010; 박성재, 2011),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윤여상·이금순, 2005; 오수성 외, 2008; 김정규 외, 2009) 등 정착 지원과 관련한 세분화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최용환 외, 2005; 최성일 외, 2009; 최용환·김을식, 2009; 이주호·배정환, 2011; 김강녕, 2012; 안태윤, 2012)들 등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애로 사항으로 경제적 불안정과 가치관의 차이, 사회문화적 이질성, 심리적·정서적 불안정을 꼽고,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비해 수적으로 한정된 신변담당관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의 미비를 지적하였다(조동운, 2015).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부의 정착 지원을 위한 체계 및 제도 정비, 취업지원정책 목표의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 하나센터의 기능 제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국민적·지역사회적 인식 개선,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조에서부터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전반의 적응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적 이슈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이 연구되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젠더 이슈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성별은 하나의 변수로 간주되어 현황 파악에서 성별 차이가 제시된 경우로 분석이 국한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평가나 개선 방안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와 정책에서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북한이탈주민과 젠더 이슈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의 젠더 이슈는 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정해숙 외(2012)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 실태 분석 및 여성청소년 지원 방안』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과 성인지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북한이탈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젠더 이슈를 드러내고,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정책의 성별 수혜 현황 및 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젠더 이슈는 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경험의 특수성에 천착하여 이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지원, 즉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로 다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애란(2009)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 조사 및 지원정책 방안연구』, 고지영·정형옥·최용환(2010)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와 취업지원방안 연구』와 안태운(2012)의 『북한이탈주민인권침해실태조사』, 안태운(2016)의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정착실태연구』 등에서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주로 사회문화적 적응과 취업 등의 경제활동, 결혼과 가족, 자녀 양육,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장혜경·김영란, 2000; 안연진, 2002; 임인숙·윤인진, 2008; 박정란, 2009; 조영아·김연희, 2010; 최선경, 2011; 이수연 외, 2012; 박정자, 2015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적응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체성, 언어표현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다루고 있다. 조영아 외(2005)와 최선경(2011), 박정자(2015)에 따르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면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능력의 부족과 우울감, 부부 및 자녀 관계의 어려움, 북한 및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자녀 부적응의 문제 등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부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자녀교육을 돕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실시,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 후유증 극복을 위한 치료와 지원, 성폭력 등의 여성 특유의 외상 경험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장명선 외(2010), 박성정 외(2011), 홍승아(2012), 김원홍(2013)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와 취업 장애요인을 주로 분석하였다. 장명선 외(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가 나타났고, 홍승아(2012)는 자녀 양육의 문제, 김원홍 외(2014)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각 연구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육 지원, 정신건강 지원,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정책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박성정 외(2011)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는데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회문화적 적응이나 경제활동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 경우도 있는데, 김현경(2010), 조영아 외(2010), 이수연 외(2012) 등의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심리적 외상이 남한 입국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영아 외(2010)에 따르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외상이 정착 초기 정신 건강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정신 건강서비스 제공,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체계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수연 외(2012)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기존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및 이용 현황,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자녀 양육 및 교육,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가족의 구성과 재구성의 문제와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다루었다. 가족의 구성과 재구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순형 외(2009), 김여주(2014), 한순옥(2014), 정선애(2015) 등이 있다. 이순형 외(2009)는 북한 및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주목하여 이러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순옥(2014), 정선애(2015)는 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심층 면접하여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결혼 및 가족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 김여주(2014)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편과 결혼하여 남한에 입국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여 이들이 겪는 정착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박정란(2009)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이주와 생애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홍승아(2012)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부모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과 교육,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각 연구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생활 교육, 자녀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 모자가정의 세대 간 빈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우선 지원,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지역사회적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존 기관과

의 연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이들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기존 여성 관련 정책과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의 연계, 특화된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국한되고 특화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 기존 북한이탈주민정책 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에 대한 구체화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기존 북한이탈주민정책의 몰성성(gender-blindness)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적 과제가 도출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연구자에 의해 제한적으로 개선 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양성 평등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동안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분석평가서 작성을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한 경우는 홍선영 외(2009)의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가 유일하다.

홍선영 외(2009)의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자립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산시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사업의 방향을 성인지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정부 및 부산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에 따른 정책적 요구 파악(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지원사업 실무자 심층면접)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2009년 당시의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토대로 부산시의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분석하였는데,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정책 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성인지적 예산 편성, 정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정책 개선 및 환류의 각 항목을 분석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시한 정책 개선안은 부

산광역시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성인지성을 명시화하는 것, 부산광역시 차원의 성별 맞춤형 또는 여성특화 사업 개발,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기 회의 실시 및 성별 아젠다에 대한 민감성 제고,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에 따른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실시,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 대한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하겠다.

## 제4절. 해외 사례

### 1.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sup>1)</sup>

#### 가. 정책 방향과 정책 주체

분단 40여 년간 서독정부는 동독지역을 떠나 서독지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동독이탈주민을 서독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행하였다. 서독정부의 동독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닌다. 첫째, 통일 독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동독이탈주민의 서독 사회 적응 지원의 방향을 모색했다. 둘째, 2차 대전 이후 당시 서독 내 노동력이 부족했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동독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였다. 노동력 문제는 서독정부가 적극적으로 동독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장 커다란 유인이었다. 동독이탈주민은 외국인 이주자와 달리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이질성이 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착지원 정책은 동독주민의 구직 및 직업훈련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서독정부는 동독이탈주민이 기존의 자기 직업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1) 본 장은 다음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김영윤·양연모 편(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관련하여 서독정부는 동독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이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동독지역에서 기존에 가졌던 직업과 서독에서의 직업이 연계성을 갖도록 지원하였다. 취업 이전에는 일회적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착 초기에는 실업부조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하여 직업 탐색과 구직 기회를 마련하였다.

동독이탈주민의 서독정착지원 정책결정을 담당한 주요 기관은 전독성, 연방이탈주민성, 연방수상청이다. 전독성은 서독 중앙정부 기관으로 동독 대상 첩보활동 및 선전, 동독이탈주민의 서독 정착을 위한 법제 마련을 기획하였다. 이탈주민성은 동독이탈주민의 수용, 거주지 마련, 사회융화 등 동독이탈주민의 서독정착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를 현실화했다. 더불어 서독주민을 대상으로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 독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연방수상청은 독일연방 수상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탈주민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도 하고 각 부처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방향을 조절하였다.

서독 중앙정부는 개별 연방주마다 난민부(Landesflüchtlingsverwaltung)를 설치하고 하위지방자치단체에 난민청을 설치하였다. 각 주의 난민청은 정착지원정책 실질적 실행을 담당하고 각 주의 난민청은 전체 회의를 통해 동독이탈주민의 지역별 배분비율 및 공통 정책 실천사항을 논의하였다. 다른 주의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공황 이후 서독주민의 실직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동독이탈주민 직업지원정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동독이탈주민은 기존 서독지역 주민에게 혐오의 대상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독 정부는 민간단체에 정착지원의 주도권을 이양하면서 이후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교회, 민간단체 등의 비정부 영역에서 추진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는 상담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 나.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서독정부는 동독이탈주민을 위해 이들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독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실행하였다. 동독이탈주민의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다방면에서 사회보장을 시행함으로써 이탈주민이

자기 역량을 쌓고 기존의 경력과 학력을 발휘하여 독립적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지원하였다. 다음 <표 1-1>은 주요 정착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정착지원 분류	상세항목	비고
주거지원	임시수용소	
	주택소개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제공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자를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건설법 제 25조에 따라 동독출신 이주민에게 5년 동안 주택임주 혜택
생활상담·후견	새로운 생활환경 소개	
생활용품 및 가구구입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	독신자	3000DM
	2인 이상 가족 기본금	4000DM
	기타 가족 1인당	1000DM (최대 10명분 10000DM 지원)
학력·경력 인정	동독에서 취득한 학교졸업증명서와 직업교육 자격증명서 인정	연방실향민법
교육 촉진금 지원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보조	연방교육촉진법
대졸자 사회진출보조	직업정착지원	추가 학업 이수 시 장학금지원
자녀수당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지급	연방자녀수당법
사회복지지원	의료보호, 질병급부	질병보험법에 따른 질병보험 급부금 수혜
	연금보험	연금법에 따른 개별적 급부금 수혜(동독 및 동베를린에서의 기여금 불입기간 포함 산정, 자영업자는 기여금 추가 납입시 연금대상 포함)
	실업보험	동독에서의 실직기간, 정치범으로서 구류기간, 자영업기간도 취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실업수당	단계별 임금의 63%
	산재보험	서독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전쟁희생자 원호	연방원호법
	사회부조	생계비 지원, 주택임대료 지원, 난방비 보조금, 의복 및 가구 보조금

※ 자료: 김영윤·양연모 편(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p. 46.

### 1) 주거지원

긴급수용과정을 거쳐 개별 주로 이주지역을 배정 받은 동독이탈주민은 임시수용소, 호텔, 민간 임시주택을 통해 임시거처를 마련하였다. 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일환인 복지주택(Sozialwohnung)에 동독이탈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었다. 또한 정착 초기 임대주택 월세보조금을 주어 월세를 보조하거나 부담조정법을 통해 연방정부 재정에서 장기로 저리융자를 지원하였다. 생활용품 마련비용을 위해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재정지원도 시행하였다.

### 2) 정착금

서독정부는 동독이탈주민이 이탈과 정착과정에서 겪는 소득단절 상황을 감안하여 정착금(Eingliederungsgeld)과 실업부조금(Arbeitslosenhilfe)을 지원하였다.

정착금 수혜 대상은 이주 1년 전 동독 지역에서 150일 이상 임금노동에 종사했던 동독이탈주민이다. 동독에서 정치적 이유로 취업에 제한을 받았거나 수형했다면 그 기간 또한 취업기간으로 인정하였다. 정착금 산정방식은 이탈주민의 동독지역에서의 소득을 서독 수준에서의 소득으로 환산하고 5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동독이탈주민은 최장 312일 동안 각 등급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실업부조금 수혜 대상자는 이주 1년 전 동독 지역에서 150일 이상 취업활동에 종사했던 동독이탈주민이다. 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교육수준을 서독의 임금근로자 수준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독신자는 56%,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8%를 지원 종료 가한을 두지 않고 매월 지급하였다.

정착금과 실업부조금 수혜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되었고 연금보험은 개별 동독이탈주민과 연방노동청이 절반씩 부담하였다. 구직활동, 이사, 취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았고 취업상담과 직장알선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었다.

### 3) 사회보장

「연방사회보장법」은 동독이탈주민이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을 수혜받도록 규정해두었다. 연금기간은 동독 지역에서의 취업기간, 전쟁·정치범으로서의 감옥수용기간, 교육기간, 실업기간, 질병기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었다.

산재보험은 동독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여 산재장애 상태의 동독이탈주민은 산재보험 수혜자가 되었다. 의료보험은 동독을 떠나 2개월 내에 서독에 입국한 이탈주민이 정식 진입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의료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 실업부조 대상 이탈주민은 연방정부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공공부조 시스템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등 특수상황에 처한 이탈주민에게 서독 주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생계비, 거주비, 의료보호 등을 제공하였다. 동독에서 정치범이었거나 전쟁포로였던 이탈주민에게는 사회보장 이외에도 추가적 피해보상이 제공되었다.

#### 4) 교육지원

서독정부는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별도의 정책보다는 서독주민에 대한 교육정책의 틀 안에서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계획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 1-2>에 정리하였다.

<표 1-2>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교육지원

	항목	근거	내용
지원금	보조금(Bafög)	연방교육지원법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 연방정부의 대학생 생활비 지원 제도 - 학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성적에 따라 지원액의 일부를 이차 없이 20년 내 상환 - 이주민의 경우 수급상한연령(30세) 초과와 관계없이 지원
	기타비용 및 보험비용	기본법	- 서독 입국 기준 24 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48개월까지 연장
적응 프로그램	교내 프로그램	개별 학교 정책	- 주 특성에 따라 이주민을 위한 개별적 교육
	학자 지원	학자 경력 지원 프로그램	- 학자 대상으로 경력 도움 프로그램 계획·추진
	연수, 직업전환교육, 언어·직업관련 세미나, 대학입학준비 세미나	연방정부지원	- 세미나 참여 촉진

	항목	근거	내용
학력 및 시험 인정	대학진학을 위한 동독 학력, 시험성적 인정	연방실향민법, 이탈주민법 (Bundesvertriebenengesetz, BVFG)	- 대학 진학을 위한 자격 시험 및 학력 인정 기준 마련
상담	학업 및 학교 생활 관련 상담, 정서적 지원	개신교 디아코니(Diakonie)사업회	- 지역사회
	대학진학상담	긴급수용법(Gesetz ü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 긴급수용소에서 지원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안내

※ 자료: 김영운(2009), “서독 정부의 동독 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해서 본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pp. 5-42; 유욱(2009), “서독의 법·제도적 지원이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주는 함의”,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해서 본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pp. 57-104.

### 5) 취업지원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취업관련 직접적 조치는 근로 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에 의거하였다. 조언, 알선, 보험 및 실업수당을 통한 구직 이전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또한 서독정부는 동독이탈주민이 동독에서 취득한 학력과 경력을 관계 기관에서 최대한 인정해주도록 하였다. 이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장기화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이탈주민이 취업기회를 얻기 위해서 동독에서의 자격시험 통과와 증명서 취득,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것이다.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수령액, 연금산정 기간 등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동독과 서독 간의 산업적·기술적 차이로 경력인정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독정부는 구직자 혹은 실업자의 특성에 맞게 취업지원을 시행하였다. 25세 이하의 젊은 신규취업자와 직업탐색기간 중의 구직자에게 소질개발촉진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자기 적성과 소질, 능력을 개발하여 개인별로 맞는 직종에서 구직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1년에 최고 3000DM을 지원하였다. 대졸자의 경우 직업정착과 관련한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교육을 이수할 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동독이탈주민 대다수는 저학력 취약계층으로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이수 후에도 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해 관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서

독정부는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의 경우 두 가지 경로로 취업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나는 장기실업대책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과 훈련을 병행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한 것이다. 서독정부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였다.

〈표 1-3〉 서독의 동독이탈 장기실업자 지원정책

유형	방법	설명
훈련기관 내 일·(직업교육) 훈련병행	·일방적 부조금 지급 지양 ·임금형태로 경제적 지원	·근로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전문지식 전달, 장기실업으로 상실한 의욕 회복, 열등감 탈피, 정신적 안정감 ·사회법, 동일연방사회보장법에 의거, 부족한 재정은 주정부가 보충
사업체 내 일·훈련 병행	·사업체 현장 투입 ·공공취로사업 투입	·근로훈련기관과 사업체 전문인력의 협조 ·근로와 훈련 병행
인턴십 내 일·훈련 병행	·실습생, 계약직, 파견근로자 형태 ·사업체 취업보장	·사회법, 서독정부 및 EU프로그램 연방사회보장법에 의거 ·훈련생의 직무 대비 사전 준비 및 관심높임 ·작업시간, 사회적·인성적·방법적 능력학습기회 제공

※ 자료: 김영윤·양연모 편(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p. 48

동독이탈주민 중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고위직 경력자 중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는데 서독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기술자의 경우 고용센터(Arbeitsämter)와 지역별 전문인력 중개소를 통해 새로운 산업·기술패러다임을 익혔다. 서독정부는 동독이탈주민이 지식이나 기술의 격차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구직관련 일반적 지원 과 더불어 자격증 교육, 학위 형태 직업교육강좌, 재교육, 직업전환 교육을 통해 해소하도록 지원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거주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서독에서 동독이탈청소년의 인구는 적지 않았고 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다. 통일 이후의 동독여성 지원 정책

동독이탈주민지원정책에서 젠더 이슈는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젠더 이슈가 다루어지면서 여성 관련 정책이 실행되었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일 과정에서 겪은 통일비용, 예상보다 이른 통일 시점, 서독 중심의 흡수 통일 방식 등으로 인한 문제들로 여성문제는 부차적 의제로 남겨졌고 주로 아동보육,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 등에 관한 일부 논의만 이뤄졌다. 동독과 서독은 “독일통일 완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조약(이하 통일조약, Einigungsvertrag)” 제31조에서 “가족과 부녀”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였다.<sup>2)</sup>

- ① 통일독일 후 입법기관은 남녀권리 평등화를 위한 입법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는 임무를 진다.
- ② 법적·제도적으로 부모의 취업활동상 조건이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가정과 직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통일독일 입법기관들의 임무이다.
- ③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의 탁아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91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기간에 동시설의 운영비를 분담한다.
- ④ 통일독일 입법기관은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양독지역의 경우보다 태아에게 더 나은 보호를 보장하고 임신부가 직면하는 양독의 헌법상의 모순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입법을 도입할 의무를 진다. 특히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고 공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광범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시설망을 연방으로부터 재정원조를 받아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에 지체없이 설치한다. 이 상담소는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아 시간대에 상관없이 임신부를 상담하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상기 제1문의 기간 내에 필요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의 기존 실정법을 계속 적용한다.

통일과정에서 통일 조약이 존재했다면 통일 이후 독일은 각종 법률을 정비하였다. 독일 정부가 여성 관련 법률을 개·제정한 주요 내역을 다음 <표 1-4>에 정리하였다.

2) 통일조약 제31조는 다음 자료의 번역을 발췌하였다.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2014, p. 45.

〈표 1-4〉 통일과정에서의 여성관련 법률 개·제정 내역

관련 법률 (개·제정연도)	내용
기본법 개정 (1994년)	<p>“더 나은 헌법에서의 여성”<sup>3)</sup>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동등의 선언에 있어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남녀는 평등하다(기본법 제3조)”만으로는 여성들을 수백 년 동안 받아왔던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여성권리를 요구한다. 국가는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지원한다. 각 여성은 자신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아이 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사는 여성과 남성은 국가를 통해 보호와 지원청구권을 가진다. 각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국가는 여성을 남성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여성의 노동이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남성과 똑같이 지불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권은 여성의 존엄과 관련되는 곳에 그 제한이 존재한다. 공적인 교육은 전통적인 성별역할의 고착화에 반대하도록 작용해야 한다. 그들의 성 때문에 학대받는 여성들은 정치적 망명을 누린다. 동등권은 헌법에서 언어로 표현되어 명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은 남성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져야만 한다. 우리가 이러한 헌법을 가졌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헌법 속의 여성이다.</p>
제2차 남녀평등실현법 <sup>4)</sup>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단독 법률이 아님. 남녀평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li> <li>- 여성지원 및 일·가족 양립 지원법: 근무시간 조정, 동등한 능력을 가진 경우 여성 우대 채용 등</li> <li>- 남녀 임명 및 파견에 관한 법: 여성 대표성 강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여성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고용주와 기관장의 의무 강화</li> <li>- 1998년 이후 모든 주가 평등 지위법 제정: 상근직 평등지위담당관, 여성담당관 의무적 설치</li> </ul>
임산부 및 가족지원법 (1992년, 아동·청소년 지원법 개정)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입학 직전까지의 유치원 입학 및 수확권리의 법적 보장
임산부 및 가족지원법 (1995년, 형법 개정)	낙태시술 3일전 공인 기관에서 상담 후 상담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에 한해 임신 12주 이내 의사가 시행한 낙태수술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자료: 통일부(2014),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pp. 45-68.

서독 정부는 남성 생계부양자와 가사 및 육아를 책임지는 아내,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정상가정(Normalfamilie)”을 가족의 기본 모델로 설정하였다. 통일 이후 많은 동독주민이 실업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정상가정” 정책은 여성의 실

3) 다음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2014, pp. 52-68.

4) 통일조약 제31조는 다음 자료의 번역을 발췌하였다. 통일부(2014),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p. 45.



업난이 남성의 실업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그간 여성고용비율이 높았던 비숙련 업종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동독 여성은 더욱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독정부는 그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했던 동독여성에게 가정에 충실할 ‘선택권’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동독여성의 취업의지는 서독여성보다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통일부, 2014: 79).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다음은 연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관해 정리한 표가 <표 1-5>이다.<sup>5)</sup>

<표 1-5> 독일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관련 정책	내용
성별능력전문센터 설립(2004년)	- 베를린 훔볼트 대학 내 설치 -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성인지, 성주류화 관점 도입 노력
미취학 아동 탁아시설 관련 법 제정(2005년)	- 신연방주 지역에서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탁아시설 확충 노력 - 보육기회확대법을 통해 탁아시설 수용규모 확대, 지역 및 가구 형편에 따른 탁아제도 차별화, 탄력적 시설이용시간, 다양한 프로그램 정립
아동과 청소년 지원법 개정(2013년)	- 2012년 7월 31일 이후 출생한 3세 미만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

※ 자료: 통일부(2014),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pp. 85-86.

## 2. 이스라엘 사례6)

### 가. 정책 방향과 정책 주체 MOIA

1948년 국가 재건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은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상태로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외 거주 유대인 민족의 이스라엘 귀향을 견인하기 위해 1950년에 귀향법 (Law of Return)을 제정하고 다양한 이주민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귀향법은 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국가

5) 다음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통일부(2014),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pp. 85-86.

6) 본 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운영하는 MOIA와 Jewish agency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http://www.moia.gov.il>; <http://www.jewishagency.org>, 검색일 2016년 11월 15일)

안보에 위협을 준 경우, 다수의 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로 귀향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이 권리를 “알리야(Aliyah)”라고 일컫는데 이스라엘로 입국한 유대인은 알리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여겨져 올레(Oleh)비자를 발급받는다. 단, 알리야의 권리가 없는 경우 올레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알리야 권리를 가진 귀국자는 일반 이주자와 다른 존재인 것이다. 다만 알리야 권리를 행사한 경우 중에서도 타국의 영주권을 지닌 경우는 ‘해외주민(residence abroad)’으로 규정하였다. 이스라엘의 이주자 구분을 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이스라엘의 이주자 정책 대상 구분

구분	타국 영주권	알리야	수혜 가능 정책
유대인	없음	있음	·일반적 정착지원 정책, Oleh 특화 지원
	있음: “해외주민”	있음	·일정 기간 이상 해외 거주한 과학자, 기업가 대상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일반, Oleh 특화 지원
비유대인	있음	없음	·일반적 정착지원 정책

※ 자료: <http://www.moia.gov.il>; <http://www.jewishagency.org>, 검색일 2016년 11월 15일.

1968년 이스라엘 정부는 알리야 이주민통합부(The Ministry of Aliyah and Immigrant Absorption, 이하 ‘MOIA’)의 전신인 이주민통합부(The Ministry of Immigrants Absorption)를 설치하고 이주민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했다. MOIA는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이주민 정책을 총괄한다. 다음 <표 1-7>에 각 부서별 업무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1-7〉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주자 정착지원 부서 및 업무 내용

정책 실행	담당 부서	업무 내용
집행	주거 지원과	·모기지 연계, 이주자 대상 월세보조금 지급, 아파트 구입 시 용자 업무 지원, 공공 주택 할당, 이주자 특성에 따른 주택지원 정책, 주택관리 및 재정관련 부처와 협업
	고용 지원과	·취업지원, 정부 및 민간과 협업 ·지부 단위 직업안내소개센터(Vocational Guidance and Referral Center)설치 ·지소 단위 고용상담센터(Learning and Employment Counseling Center) 설치
	사회 복지과	·이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유대인피해자보상분과, 교육분과, 군복무분과, 보건분과 ·모든 이주민 대상 입국 후 6개월간 무상 의료 제공 ·이주자는 4종류의 이스라엘 의료보험 중 택일 등록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민은 6개월 기간 연장 가능
	동화 촉진과	·민간차원의 이주민 동화 활동 지원 ·이주민의 사회적응 교육 담당
	히브리어 교육과	·교육문화부와 협조 ·히브리어 교육과정 '울판' 지원 업무
	경제과	·재정지원 총괄 ·이주자 대상 창업지원센터 운영
교육지원사업	·각 지소 및 동화지원센터 내 교육자문관(Education Coordinator)을 배치하여 이주민과 자녀 교육 자문 ·이주자는 자녀의 학교를 국가교육기관(일반학교, 종교학교), 국가인증 사립학교, 국가비인증 사립학교 중 선택 ·이주자 대상 무상 교육제도 실시 ·이주민 자녀 대상 교내 추가 과외 수업 및 방학 기간 내 울판 6주 과정 보충 학습 프로그램 운영	
독립적 기능 - 고급 인력 정착지원	·대학생국 ·기술자지원센터	
벤 구리온 공항 부서 (Ben Gurion Airport Department)	·초기 정착과정 지원 - 이민 증명서 발급, 식별 번호, 건강 보험 바우처 제공, 바스켓(absorption basket-sal klita) 최초 지불	
출판부서(Publications Department)	·히브리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최신 정보 상세 제공 ·주택, 고용, 건강, 교육, 국민보험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 ·책자, 팜플릿, 잡지, 신문 및 전체 언론 관련 책임	
특별부서 - 에티오피아 이민자 동화 담당부서	·에티오피아 이민자 대상 벤 구리온 공항 입국부터 임시 주택배치까지 모든 업무 담당	
지역차원 생활설계사 고용	·정착 초기 지원 정보 제공 ·울판 연계를 통해 히브리어 학습 지원 ·생계 수당, 월 소득 보조 주선 등 재정 지원 업무 ·MOIA 지소에서 이주민 정착 직접 지원	

※ 자료: <http://www.moia.gov.il>; <http://www.jewishagency.org>, 검색일 2016년 11월 15일.

## 나. 정착지원 정책

이스라엘 정부는 MOIA를 통해 기본적인 이주자 정착지원 시스템 속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유대인 알리야 행사자와 비유대인을 구분하였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알리야 행사자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스라엘 정부는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형태의 유대인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모여 기존의 자기 역량과 직업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이주자 지원정책을 설정하였다. MOIA 중심의 이주자 정착지원 정책은 거주, 사회보장, 취업, 교육 등 다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히브리어 교육을 통해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책도 존재한다. 구직의 경우 숙련기술자, 예술가, 작가, 운동선수, 45세 이상 구직자, 과학자, 연구자, 개인사업자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표 1-8>에 관련 정책을 정리하였다.

<표 1-8> 이스라엘의 이주자 정착지원정책 개괄

항목	상세 서비스 내용
구직 계획 및 상담	일대일 직업계획 수립, 직업심리상담, 직업별 지침 안내
교육 및 훈련 지원	히브리어 학습 기관 소개, 전문자격시험과정(외과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수의사, 언어치료사, 변호사, 회계사)준비 알선 및 지원, 직업훈련 및 재훈련 과정 안내
상담	
재정	구직기간 내 수입 보장, 직업훈련바우처 지원
특정 직업군 맞춤 지원	과학자 대상 특별 지원, 이주기업가 대상 지원
고용센터 연계	신규 이주자 및 oleh 소지자 대상 고용센터 연계
기타	구직활동 지원, 구직 워크샵 연계

※ 자료: <http://www.moia.gov.il>; <http://www.jewishagency.org>, 검색일 2016년 11월 15일.

구직지원과 관련하여 MOIA는 통합직업서비스(a basket of vocational services)를 통해 oleh 소지자를 비롯한 이주자 개인이 기존 직업과 전문성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찾도록 정착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서비스는 이스라엘 전역에 연계망을 갖추었고 각 개인은 직업상담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개별적 직업계획 부

터 일대일로 수립하고 지원받았다. 하위항목별 상세 서비스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주자 정착지원정책

지원 영역	상세 지원 항목	수혜신청기간 (이주 이후)	수혜기간	비고
정착 초기 경제적 지원	The Absorption Basket	Oleh 취득 후 1년 내 신청	6개월	정착지원금
	주택·전자제품 구매 지원	Oleh 취득 후 4년	주택 1회, 전자제품 1회	장기 저리 융자
히브리어 교육	수업료	1년 6개월	1회	비 유대인은 실업수당과 교통비지원
주택 지원	임대료 보조	바스켓 1년, 이후 4년	바스켓 1년, 이후 4년	
	주택자금 융자	15년	1회	
	공공주택			
구직	실업수당	1년	6개월	
	자격증·(재)연수	10년	별도규정	
	승진·배치		12개월	
	직업별			예술가, 작가, 운동선수 등
	특성별			숙련기술자, 45세 이상
	과학자 고용지원자금	3년	4년 내	인문·사회 연구자 4년으로 연장가능
	사업가 대상 전문상담 및 대출	10년(일반) 2년(알리아)	1회	
학생 대상	수업료 대출		수학기간 중 3년까지	

※ 원자료: 정지영(2000),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본국귀환 및 정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논집』 제5호, <http://www.moia.gov.il>; <http://www.jewishagency.org>

이러한 직업프로그램은 신규 이주자는 정착 10년 이내까지, oleh 소지자는 2년 이내까지 수혜 받을 수 있다. 각 해당 기간에 대학교육, 고등교육, 전문직종 훈련 기회가 있으며 oleh 소지자는 정착 첫 해부터 수입보장을 받는다. 다만 일반 이

주자는 구직활동기간 동안만 수입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수입보장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먼저 상담사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 상황에 따라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보장을 받을 수 있다.

### 3. 독일과 이스라엘의 정책 사례가 주는 시사점

#### 가. 독일 사례의 시사점

독일의 경우 분단을 겪었고 또 상이한 체제 속에서 이탈주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물론 상이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단 상황에서 이탈주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서독 정부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 정부는 동독이탈주민의 구직이 동독 지역에서 기존에 가졌던 직업과 유리되지 않고 연계성을 갖도록 지원하였다. 무엇보다 정착 초기에 자기 적성과 경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동안 실업부조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둘째, 연방제라는 점에서 우리와 상이한 지점이 있으나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폭넓게 바라본다면, 독일 전역의 주 단위 난민부와 하위지방자치단체의 난민청이 전체 회의를 통해 공통적 정책 실천사항을 논의하고 다른 주의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였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공통 정책사항을 실행하면서도 매우 능동적으로 정책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방식은 유용하다 평가하겠다.

셋째, 동독이탈주민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동독 지역에서의 거주기간까지 산정하여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부조금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절차와 재정상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탈 이전의 삶에 대해 인정한다는 지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군분투 중인 이탈주민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과거 자신의 삶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정서적 위로와 안정, 사회적 소속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넷째, 서독 정부가 서독주민을 대상으로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서독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서독주민의 동독주민지원정책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독 정부는 민간단체가 정착지원의 주체가 되도록 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 복지정책의 틀에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시민의 북한과 통일 논의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장기실업자에 대해 일과 훈련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장기 실업의 경우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고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을 경험하고 실무를 배우며 자신감을 찾도록 하여 무기력감을 해소하고 자발적 근무동기를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섯째, 무조건적 보조금 지급보다는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했던 사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단순 지급형태가 아니라 이탈주민이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자기 삶을 꾸려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의 방식을 익혀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서독정부가 동독이탈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한 별도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통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일여성이었다는 경험에서도 나타나듯 서독의 여성취업률은 동독의 여성취업률보다 낮았으며 양성평등을 위한 각종 정책도 동독이 서독보다 훨씬 잘 구비되어 있었다.<sup>7)</sup>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동독이탈여성의 서독으로의 정착과정 또한 재생산권 행사나 경제활동·취업에 있어서 동독에서의 삶보다 훨씬 많은 제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서독에서, 통일 독일에서 더 폭넓은 자유가 보장되었던 측면이 있으나 개별 동독여성은 당장 자기 직업을 잃고 자녀를 맡길 보육시설의 부족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다.

여덟째, 분단 시기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이나 통일 초기의 동독주민 지원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의 지속성과 노력은 의미가 있다. 특히

7) 통일부(2014),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pp. 69-70.

보육 시스템 확충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

## 나. 이스라엘 사례의 시사점

이스라엘은 분단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형태였다는 점에서 체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탈한 이탈주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가 다른 이주자보다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이 있는 유대인을 다시 ‘귀향’ 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정착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스라엘 정부는 MOIA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시행했다. 각 세부 부서와 특별부서를 두고 알리야를 실행하기 위해 유대인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직업을 갖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세밀한 정착지원 방식은 이스라엘 정부가 수혜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남북 간의 언어 이질성을 고려할 때, 울판을 통해 히브리어 교육을 했던 이스라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언어 차이가 있고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어투, 표현 등의 문제로 한국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정착 초기부터 장기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점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언어재교육 기간 동안 Oleh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수당과 교통비까지 지급하며 적극적으로 언어교육을 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셋째, 이스라엘 정부는 이주자가 이주 이전에 지니고 있던 자기 기술과 경력이 이스라엘에서 최대한 다시 발휘되도록 경력 손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착을 지원했다. 그래서 구직 지원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그 정책수혜대상을 분류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였다. 연령과 직업, 전문기술 소유 여부에 따라 지원 경로를 세분화 하였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구직을 지원하여 10년 동안 승진과 배치 과정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이스라엘 정부는 이주자가 정책 수혜와 관련하여 충분히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안내를 제공하였다. 또한 Oleh 소지자가 아닌 일반 이주자가 구직 과정에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담사를 통해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사례관리를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양적 측면에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질적 측면에서 상담사의 안내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하겠다.



다섯째, 이스라엘 정부가 여성 이주자 혹은 Oleh를 소지한 여성만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착지원정책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시민을 위한 일반적 양성평등정책의 틀에서 여성 이주자의 권익 보장에 접근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스라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주자를 위한 지침서를 통해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는 각종 일반 정책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정, 직장여성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여성 이주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IA의 출판부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각종 유인물을 통해 여성 이주자가 정책적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자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현재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 및 고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겠다.

## 제2장

# 북한이탈주민 일반 현황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입국 현황	35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39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입국 현황

###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2016년 9월 현재 총 입국자 수가 29,830명으로 3만 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 여성의 비율이 71%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16년 9월 말)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구분	'09	'10	'11	'12	'13	'14	15 (잠정)	16.9월 (잠정)	합계
남(명)	662	591	795	404	369	305	251	213	8,716
여(명)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823	21,114
합계(명)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036	29,830
여성 비율	77%	75%	71%	73%	76%	78%	80%	80%	71%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16. 12.10)

연령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현재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28.3%, 29.1%로 20, 30대가 50%를 넘고 40대가 16.8%를 차지한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주요 인구이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정착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정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의 출산과 양육, 교육과 취업활동 등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생애과정의 경험들은 이들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2-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입국 현황 (2016년 9월 말)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22	1,558	2,378	2,017	1,269	476	323	8,643
여	619	1,901	5,972	6,585	3,701	1,127	916	20,821
합계(명)	1,241	3,459	8,350	8,602	4,970	1,603	1,239	29,464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16. 12. 10)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를 살펴보면,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47.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유를 찾아서’ 32.3%,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21.5%, ‘가족을 따라서’ 21.1%, ‘북한체제가 싫어서’ 18.5%, ‘가족을 찾거나 결함을 위해서’ 11.2%, ‘신변위협’ 9.5%,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7.8%, ‘먼저 탈북한 사람의 권유 및 주변 사람의 권유’가 각각 7.4%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탈북동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남성은 ‘자유를 찾아서’가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경제적인 요인인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는 여성의 경우 77.2%, 남성은 45.2%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다고 응답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에 비해 남성의 경우는 ‘자유를 찾아서’ 36.3%, ‘가족을 따라서’ 28.8%, ‘북한체제가 싫어서’ 24.4%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탈북 동기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북한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위치가 차이가 있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공식적인 일자리에 여성 보다 높은 임금과 배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 여성들은 남성 보다 낮은 경제적 위치에 있었다. 특히 식량위기 상황에서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남성 보다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면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장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북한 내 경험의 차이가 탈북 동기에서 성별 차이를 나타나게 했고, 탈북 동기의 차이는 남한 생활에서의 기대나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착 실태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표 2-3〉 탈북 동기별 현황 (2014)

(단위: 명, %, 복수응답)

탈북동기	남성		여성		전체	
사례수	3,239	25.4	9,538	74.6	12,777	100.0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1,093	33.7	4,992	52.3	6,085	47.6
자유를 찾아서	1,176	36.3	2,937	30.8	4,113	32.2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374	11.5	2,375	24.9	2,749	21.5
가족을 따라서	932	28.8	1,767	18.5	2,699	21.1
북한체제가 싫어서	790	24.4	1,574	16.5	2,364	18.5
가족을 찾거나 결함을 위해서	474	14.6	957	10.0	1,431	11.2
신변위협	514	15.9	696	7.3	1,210	9.5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263	8.1	730	7.7	993	7.8
먼저 탈북한 사람의 권유	234	7.2	707	7.4	941	7.4
주변사람의 권유	132	4.1	817	8.6	949	7.4
기타	36	1.1	158	1.7	194	1.5
모름/무응답	20	0.6	49	0.5	69	0.5

※ 주: 1997년~2013년까지 입국자 중 만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3,141명 대상조사로 조사완료 인원은 12,777명임.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132-133.

## 2. 북한이탈주민 재북 당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무직부양’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남성은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들의 무직부양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들이 결혼한 경우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 (2016년 9월 말)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등)	기타	계
남	372	643	3,737	3,120	70	74	210	416	1	8,643
여	114	88	7,468	11,017	1,061	182	454	435	2	20,821
합계(명)	486	731	11,205	14,137	1,131	256	664	851	3	29,464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임.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검색일: 2016. 12. 10).

재북 당시 생활 수준의 경우 여성이 남성 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재북 당시 직업이나 학력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서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표 2-5〉 재북 시 생활수준

(N=응답자 전체 12,777명)

구분	사례수	상류층		중상류층		중간층		중하류층		하류층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2,777	355	2.8	1267	9.9	4671	36.6	2338	18.3	4110	32.2	36	0.3	
성별	남성	3,239	122	3.8	376	11.6	1241	38.3	598	18.5	892	27.5	10	0.3
	여성	9,538	233	2.4	891	9.3	3430	36.0	1740	18.2	3218	33.7	26	0.3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174-175.

〈표 2-6〉 북한이탈주민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 (2016년 9월 말)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소학교)	중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북)	기타	계
				(고등중)				(불상 등)	
남	405	136	744	5,268	736	978	351	25	8,643
여	394	185	1,234	15,286	2,047	1,066	479	130	20,821
합계(명)	799	321	1,978	20,554	2,783	2,044	830	155	29,464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해당 학력별 중퇴자 포함.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검색일: 2016. 12. 10).

재북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중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남성이 약 10%, 여성이 약 5%로 고학력 북한이탈남성이 여성 보다 두 배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재북 시 학력, 직업, 생활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북한에서 학력과 직업, 생활수준에서 여성 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남성들과 그렇지 못한 여성 사이에는 남한에서 정착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가 나타난다. 결국 북한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남한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의 재북 당시 생활 수준이나 만족도가 남한에서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 1. 가족 구성 현황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구성형태로는 ‘양부모-자녀 가구’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성인 단독 가구’ 27.2%, ‘편부모-자녀 가구’ 24.3%, ‘2인(부부) 가구’ 11.8%, ‘조(부)모-(편)부모-자녀 가구’ 5.3%, ‘조(부)모-손주 가구’ 0.5%, ‘미성년 단독(또는 형제) 가구’ 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성인 단독가구’와 ‘편부모-자녀 가구’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 보다 높다. 이는 북한이탈 여성의 수가 남성 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다 보니 여성들이 단독 가구를 구성하거나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의 결혼과 자녀양육에서 여러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남한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형태

(N=응답자 전체 12,777명)

구분	사례수	성인단독 가구		2인(부부) 가구		양부모-자녀가구		편부모-자녀가구		조(부)모-(한)부모-자녀가구		조(부)모-손주가구		조(부)모-손주가구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2,777	3474	27.2	1512	11.8	3524	27.6	3102	24.3	681	5.3	69	0.5	32	0.3	383	3.0	
성별	남성	3,239	865	26.7	390	12.0	1009	31.2	652	20.1	163	5.0	22	0.7	9	0.3	129	4.0
	여성	9,538	2609	27.4	1122	11.8	2515	26.4	2450	25.7	518	5.4	47	0.5	23	0.2	254	2.7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221.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내 본인의 위치로는 ‘본인’이 세대주라는 응답이 72.5%로 가장 높은데,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단독 가구나 한부모가정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이 생계와 가정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8〉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내 본인의 위치

(N=응답자 전체 12,777명)

구분	사례수	본인		배우자		딸		아들		어머니		형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2,777	9268	72.5	1779	13.9	696	5.4	634	5.0	100	0.8	46	0.4	
성별	남성	3,239	2212	68.3	252	7.8	0	0.0	634	19.6	0	0.0	46	1.4
	여성	9,538	7056	74.0	1527	16.0	696	7.3	0	0.0	100	0.8	0	0.0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225-226.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여성은 ‘중국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 순으로 ‘남한출신’인 것에 비해, 남성은 ‘북한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에서 탈북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결혼하여 사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에서 기인한다. 중국에서 결혼했던 배우자를 남한 입국 후에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어 중국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남한출신’인 경우가 여성 33.0%, 남성 3.2%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에 대한 남한 출신주민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북



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정도의 차이와도 관련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이 여성 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표 2-9〉 배우자 출신국가

(N=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전체 6,189명)

구분	사례수	북한출신		중국출신		남한출신		기타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6,189	2799	45.2	1751	28.3	1586	25.6	24	0.4	29	0.5	
성별	남성	1,537	1329	86.5	132	8.6	49	3.2	15	1.0	12	0.8
	여성	4,652	1470	31.6	1619	34.8	1537	33.0	9	0.2	17	0.4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214.

북한이탈주민의 취학 전 자녀유무 상태는 ‘있다’는 비율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여성을 가구주로 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고, 여성들이 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취학 전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 문제가 제기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인 경우가 많고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친인척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정착에서 자녀 양육의 문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활동을 위해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표 2-10〉 취학 전 자녀 유무

(N=세대주 또는 배우자 11,047명)

구분	전체	성별		경제활동상태				
		남성	여성	경제활동 (취업자)	경제활동 (실업자)	비경제활동	판별 불가	
사례수	11,047	2,464	8,583	5,887	396	4,516	248	
있다	명	2176	314	1862	921	79	1118	58
	%	19.7	12.7	21.7	15.6	19.9	24.8	23.4
없다	명	8871	2150	6721	4966	317	3398	190
	%	80.3	87.3	78.3	84.4	80.1	75.2	76.6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235.

취학 전 자녀의 출생국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의 특성상 ‘남한’에서 출생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중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학연령 이상인 자녀의 경우는 ‘중국’ 출생인 자녀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제3국 출생 자녀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이 도출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2-11〉 취학 전 자녀 출생국

(N=취학 전 자녀가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2,172명)

구분	사례수	남한		중국		북한		태국		기타		모름/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172	2286	86.3	205	7.7	123	4.6	4	0.2	21	0.8	11	0.4	
성별	남성	313	320	84.4	6	1.6	43	11.3	1	0.3	8	2.1	1	0.3
	여성	1,859	1966	86.6	199	8.8	80	3.5	3	0.1	13	0.6	10	0.4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243.

## 2. 학력

북한이탈주민의 학력과 관련하여 현재 다니는 학교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는 315명, 일반대학교 597명,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는 386명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이 56명으로 9.9%, 여성은 259명으로 18.4%이고, 일반대학교는 남성이 183명(32.5%), 여성이 414명(29.5%)이다.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는 남성 30명(5.3%), 여성 356명(25.3%)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수준이 여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의 진학 관련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들이 향후 진로를 위해 실용적인 대학 및 전공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의 경우 교육비 지원에 있어 연령제한이 없다 보니 일반대학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연령의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진로를 위해 진학을 하기 때문인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이 남성 보다 낮은 현실에서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진학이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하겠다. 이러한 경향성은 향후 진학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표 2-12〉 현재 다니는 학교의 종류

(N=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응답자 1,968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1,968	563	1,405	334	760	401	378	80	15	
(정규학교) 초등학교 재학	명	1	1	0	1	0	0	0	0	0
	%	0.1	0.2	0.0	0.3	0.0	0.0	0.0	0.0	0.0
(정규학교, 한겨레) 중학교 재학	명	105	46	59	93	11	1	0	0	0
	%	5.3	8.2	4.2	27.8	1.4	0.2	0.0	0.0	0.0
(정규학교, 한겨레) 고등학교 재학	명	316	155	161	187	126	1	1	1	0
	%	16.1	27.5	11.5	56.0	16.6	0.2	0.3	1.3	0.0
검정고시 학원 재학	명	38	13	25	9	21	5	3	0	0
	%	1.9	2.3	1.8	2.7	2.8	1.2	0.8	0.0	0.0
대안학교 재학	명	117	47	70	30	83	2	1	1	0
	%	5.9	8.3	5.0	9.0	10.9	0.5	0.3	1.3	0.0
전문대학(2~3년제) 재학	명	315	56	259	5	101	82	97	20	10
	%	16.0	9.9	18.4	1.5	13.3	20.4	25.7	25.0	66.7
일반대학교(4년제) 재학	명	597	183	414	7	386	130	56	17	1
	%	30.3	32.5	29.5	2.1	50.8	32.4	14.8	21.3	6.7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	명	386	30	356	0	25	155	176	27	3
	%	19.6	5.3	25.3	0.0	3.3	38.7	46.6	33.8	20.0
대학원 이상 재학	명	72	29	43	0	2	19	36	14	1
	%	3.7	5.2	3.1	0.0	0.3	4.7	9.5	17.5	6.7
모름/무응답	명	21	3	18	2	5	6	8	0	0
	%	1.1	0.5	1.3	0.6	0.7	1.5	2.1	0.0	0.0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192-193.

향후 진학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일반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 보다 높게 나왔고, 전문대학과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은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진학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향후 진학 계획 (재학경험 무)

(N=재학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향후 진학 계획이 있는 1,047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1,047	212	835	6	314	371	295	47	14
(정규학교) 초등학교	명	2	0	0	0	2	0	0	0
	%	0.2	0.9	0.0	0.0	0.5	0.0	0.0	0.0
(정규학교, 한겨레) 중학교	명	2	1	0	0	2	0	0	0
	%	0.2	0.5	0.1	0.0	0.5	0.0	0.0	0.0
(정규학교, 한겨레) 고등학교	명	6	3	0	5	1	0	0	0
	%	0.6	1.4	0.4	0.0	1.6	0.3	0.0	0.0
검정고시 학원	명	73	13	0	44	14	13	1	1
	%	7.0	6.1	7.2	0.0	14.0	3.8	4.4	2.1
대안학교	명	6	3	0	1	2	1	1	1
	%	0.6	1.4	0.4	0.0	0.3	0.5	0.3	2.1
전문대학(2~3년제)	명	322	51	271	2	97	125	88	6
	%	30.8	24.1	32.5	33.3	30.9	33.7	29.8	12.8
일반대학교(4년제)	명	272	65	207	2	121	77	54	16
	%	26.0	30.7	24.8	33.3	38.5	20.8	18.3	34.0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명	299	47	252	0	35	125	118	17
	%	28.6	22.2	30.2	0.0	11.1	33.7	40.0	36.2
대학원 이상	명	65	27	38	2	11	23	21	6
	%	6.2	12.7	4.6	33.3	3.5	6.2	7.1	12.8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207-208.

대학을 진학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중도탈락률도 적지 않은 수를 보이는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교를 자퇴한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생활비 마련을 위해’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 순으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14〉 과거 재학 학교(전문대학 및 일반대학교) 자퇴 이유

(상위 6순위, N=자퇴 경험자 150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150	56	94	3	49	67	28	3	
생활비 마련을 위해	명	51	20	31	0	19	21	11	0
	%	34.0	35.7	33.0	0.0	38.8	31.3	39.3	0.0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명	35	17	18	0	16	11	7	1
	%	23.3	30.4	19.1	0.0	32.7	16.4	25.0	33.3
취업준비를 위해	명	22	9	13	1	7	11	3	0
	%	14.7	16.1	13.8	33.3	14.3	16.4	10.7	0.0
가족, 친척에게 경제적 도움 또는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한 비용 마련 위해	명	13	5	8	0	3	10	0	0
	%	8.7	8.9	8.5	0.0	6.1	14.9	0.0	0.0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명	11	5	6	0	6	4	1	0
	%	7.3	8.9	6.4	0.0	12.2	6.0	3.6	0.0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명	1	1	0	0	0	0	1	0
	%	0.7	1.8	0.0	0.0	0.0	0.0	3.6	0.0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200.

현재 다니는 학교를 휴학한 이유로는 자퇴 이유와 마찬가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 순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순위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5〉 현재 다니는 학교(전문대학 및 일반대학교) 휴학 이유

(상위 7순위, N=휴학 경험자 185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185	60	125	113	44	23	4	1	
생활비 마련을 위해	명	56	20	36	34	17	5	0	0
	%	30.3	33.3	28.8	30.1	38.6	21.7	0.0	0.0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명	53	19	34	36	10	5	2	0
	%	28.6	31.7	27.2	31.9	22.7	21.7	50.0	0.0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명	33	12	21	20	8	4	1	0
	%	17.8	20.0	16.8	17.7	18.2	17.4	25.0	0.0
취업준비를 위해	명	29	12	17	16	5	7	1	0
	%	15.7	20.0	13.6	14.2	11.4	30.4	25.0	0.0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	명	14	3	11	10	2	2	0	0
	%	7.6	5.0	8.8	8.8	4.5	8.7	0.0	0.0
가족, 친척에게 경제적 도움 또는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한 비용 마련 위해	명	10	0	10	7	3	0	0	0
	%	5.4	0.0	8.0	6.2	6.8	0.0	0.0	0.0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명	8	4	4	7	0	0	1	0
	%	4.3	6.7	3.2	6.2	0.0	0.0	25.0	0.0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195.

### 3. 경제활동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현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룰 예정이고, 여기서는 근로환경을 중심으로 개략하였다. 2014년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6,459명이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이고, 그 중 여성은 4,506명, 남성은 1,953명이다. 이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고용형태나 근로 환경을 살펴보면, 종사사업체의 유형의 경우 남성은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 순으로 '건설 및 운수업'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은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 순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종사 사업체의 유형

(산업 유형)(N=취업자 6,459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6,459	1,953	4,506	19	914	1,566	2,690	1,038	232	
제조업	명	2006	718	1288	5	309	545	864	247	36
	%	31.1	36.8	28.6	26.3	33.8	34.8	32.1	23.8	15.5
숙박 및 음식점업	명	1049	74	975	4	149	212	479	177	28
	%	16.2	3.8	21.6	21.1	16.3	13.5	17.8	17.1	12.1
도소매 및 유통업	명	660	172	488	2	123	206	229	88	12
	%	10.2	8.8	10.8	10.5	13.5	13.2	8.5	8.5	5.2
건설 및 운수업	명	492	401	91	2	56	115	190	119	10
	%	7.6	20.5	2.0	10.5	6.1	7.3	7.1	11.5	4.3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명	465	43	422	0	43	85	190	113	34
	%	7.2	2.2	9.4	0.0	4.7	5.4	7.1	10.9	14.7
사업시설관리 및 산업지원 서비스	명	424	141	283	1	33	62	191	89	48
	%	6.6	7.2	6.3	5.3	3.6	4.0	7.1	8.6	20.7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명	287	75	212	2	44	56	115	49	21
	%	4.4	3.8	4.7	10.5	4.8	3.6	4.3	4.7	9.1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명	196	32	164	1	40	49	79	23	4
	%	3.0	1.6	3.6	5.3	4.4	3.1	2.9	2.2	1.7
교육 서비스업	명	169	27	142	0	26	49	71	23	0
	%	2.6	1.4	3.2	0.0	2.8	3.1	2.6	2.2	0.0
농업 및 어업	명	113	46	67	1	11	20	40	28	13
	%	1.7	2.4	1.5	5.3	1.2	1.3	1.5	2.7	5.6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업	명	102	32	70	0	5	12	44	28	13
	%	1.6	1.6	1.6	0.0	0.5	0.8	1.6	2.7	5.6
전문(자연/사회)과학 및 기술서비스	명	88	45	43	0	24	21	36	7	0
	%	1.4	2.3	1.0	0.0	2.6	1.3	1.3	0.7	0.0
전기/가스/수도 사업	명	62	54	8	0	9	14	24	11	4
	%	1.0	2.8	0.2	0.0	1.0	0.9	0.9	1.1	1.7
금융 및 보험업	명	59	6	53	0	6	24	23	5	1
	%	0.9	0.3	1.2	0.0	0.7	1.5	0.9	0.5	0.4
출판 및 영상사업	명	37	15	22	0	5	7	18	7	0
	%	0.6	0.8	0.5	0.0	0.5	0.4	0.7	0.7	0.0

4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부동산 및 임대업	명	16	1	15	0	1	5	8	1	1
	%	0.2	0.1	0.3	0.0	0.1	0.3	0.3	0.1	0.4
광업	명	10	8	2	0	2	1	6	1	0
	%	0.2	0.4	0.0	0.0	0.2	0.1	0.2	0.1	0.0
기타	명	124	31	93	0	11	54	50	6	3
	%	1.9	1.6	2.1	0.0	1.2	3.4	1.9	0.6	1.3
모름/무응답	명	100	32	68	1	17	29	33	16	4
	%	1.5	1.6	1.5	5.3	1.9	1.9	1.2	1.5	1.7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287-289.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한 취업장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5-29'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이 '1-4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영세한 업체에 주로 취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7〉 사업체의 종사자 수

(N=취업자 6,459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6,459	1,953	4,506	19	914	1,566	2,690	1,038	232	
1~4인	명	1752	433	1319	1	221	395	749	312	74
	%	27.1	22.2	29.3	5.3	24.2	25.2	27.8	30.1	31.9
5~29인	명	2750	864	1886	13	380	684	1127	435	111
	%	42.6	44.2	41.9	68.4	41.6	43.7	41.9	41.9	47.8
30~49인	명	569	202	367	1	84	139	235	96	14
	%	8.8	10.3	8.1	5.3	9.2	8.9	8.7	9.2	6.0
50~99인	명	465	130	335	1	63	104	211	69	17
	%	7.2	6.7	7.4	5.3	6.9	6.6	7.8	6.6	7.3
100~299인	명	496	162	334	0	84	109	218	76	9
	%	7.7	8.3	7.4	0.0	9.2	7.0	8.1	7.3	3.9
300인 이상	명	331	128	203	2	67	104	119	35	4
	%	5.1	6.6	4.5	10.5	7.3	6.6	4.4	3.4	1.7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름/무응답	명	96	34	62	1	15	31	31	15	3
	%	1.5	1.7	1.4	5.3	1.6	2.0	1.2	1.4	1.3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293-296.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직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상용직 근로자’인 비율이 높고, 여성은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18〉 직장에서의 지위 (종사상 지위)

(N=취업자 6,459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6,459	1,953	4,506	19	914	1,566	2,690	1,038	232	
상용직 근로자	명	3462	1077	2385	6	469	901	1441	534	102
	%	53.6	55.1	52.9	31.6	51.3	58.1	53.6	51.4	44.0
임시직 근로자	명	1022	270	752	2	172	233	397	175	43
	%	15.8	13.8	16.7	10.5	18.8	14.9	14.8	16.9	18.5
일용직 근로자	명	1308	373	935	10	236	276	529	189	68
	%	20.3	19.1	20.8	52.6	25.8	17.6	19.7	18.2	29.3
고용주	명	195	65	130	0	3	44	108	37	3
	%	3.0	3.3	2.9	0.0	0.3	2.8	4.0	3.6	1.3
자영업자	명	370	140	230	0	17	81	185	81	6
	%	5.7	7.2	5.1	0.0	1.9	5.2	6.9	7.8	2.6
무급가족 종사자	명	45	9	36	0	5	9	15	10	6
	%	0.7	0.5	0.8	0.0	0.5	0.6	0.6	1.0	2.6
모름/무응답	명	57	19	38	1	12	13	15	12	4
	%	0.9	1.0	0.8	5.3	1.3	0.8	0.6	1.2	1.7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303.

#### 4. 남한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2-19〉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

(N=응답자 전체 12,777명)

구분	사례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무응답		*만족*		*불만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2,777	2265	17.1	6378	49.9	3657	28.6	355	2.8	75	0.6	47	0.4	8643	67.6	430	3.4	
성별	남성	3,239	489	15.1	1527	47.1	1026	31.7	145	4.5	37	1.1	15	0.5	2016	62.2	182	5.6
	여성	9,538	1776	18.6	4851	50.9	2631	27.6	210	2.2	38	0.4	32	0.3	6627	69.5	248	2.6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159.

남한 생활 만족의 이유의 경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고,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순위로 높은 ‘북한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는 여성의 응답율이 높고,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는 남성의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탈북 동기에서 여성은 경제적인 이유가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남성은 자유를 찾아서가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경향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표 2-20〉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 이유

(상위 7순위, N=남한생활 만족 응답자 8,643명)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사례수		8,643	2,016	6,627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명	4,099	959	3,140
	%	47.4	47.6	47.4
북한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명	3,653	788	2,865
	%	42.3	39.1	43.2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명	3,518	775	2,743
	%	40.7	38.4	41.4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	명	2,342	601	1,741
	%	27.1	29.8	26.3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명	2,053	545	1,508
	%	23.8	27.0	22.8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명	429	92	337
	%	5.0	4.6	5.1
이웃, 학교, 회사 등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서	명	281	78	203
	%	3.3	3.9	3.1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162.

그런데 남한 생활의 불만족의 이유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율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 및 차별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율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경제적 위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표 2-21〉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

(N=남한생활 불만족 응답자 전체 430명)

구분	사례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 및 차별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기타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30	235	54.7	180	41.9	122	28.4	116	27.0	35	8.1	52	12.1	6	1.4	
성별	남성	182	88	48.4	82	45.1	60	33.0	50	27.5	16	8.8	18	9.9	2	1.1
	여성	248	147	59.3	98	39.5	62	25.0	66	26.6	19	7.7	34	13.7	4	1.6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165.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없다’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2〉 지난 1년 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  
(N=응답자 전체 12,777명)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12,777	3236	25.3	9410	73.6	131	1.0	
성별	남성	3,239	866	26.7	2338	72.2	35	1.1
	여성	9,583	2370	24.8	7072	74.1	96	1.0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168-169.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는 경우, 차별과 무시의 이유로 응답한 내용으로는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 순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 ‘남한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꼽은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문화적 소통방식과 능력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차별/무시당한 이유  
(N=차별/무시를 당했다는 응답자 3,236명)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사례수	3,236	866	2,370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명	2219	1639
	%	68.6	69.2
남한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명	1379	1026
	%	42.6	43.3
남한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명	622	441
	%	19.2	18.6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라서	명	433	305
	%	13.4	12.9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언론에서 북한체제와 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의 영향으로	명	356	101	255
	%	11.0	11.7	10.8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의 영향으로	명	179	43	136
	%	5.5	5.0	5.7
기타	명	105	29	76
	%	3.2	3.3	3.2
모름/무응답	명	29	10	19
	%	0.9	1.2	0.8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171-172.

북한이탈주민의 지난 3년간 남한에서의 생활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율은 여성이 43.8%로 남성 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남성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탈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시사한다.

〈표 2-24〉 3년 전 대비 생활여건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 여건 (만 19세 이상)

구분	사례수	많이 좋아짐		약간 좋아짐		변화 없음		약간 나빠짐		많이 나빠짐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015년 전체	2239	194	8.5	795	34.2	933	43.0	191	9.1	64	2.9	62	2.4	
성별	남성	778	67	7.7	275	37.0	315	40.8	67	8.1	28	3.6	26	2.9
	여성	1461	127	8.8	520	3.2	618	43.8	124	9.4	36	2.6	36	2.2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pp. 140-141.

향후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향후 생활 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향후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N=응답자 전체 12,777명)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사례수		12,777	3,239	9,538
매우 그렇다	명	3044	845	2199
	%	23.8	26.1	23.1
약간 그렇다	명	5704	1377	4327
	%	44.6	42.5	45.4
그저 그렇다	명	2994	737	2257
	%	23.4	22.8	23.7
별로 그렇지 않다	명	799	206	593
	%	6.3	6.4	6.2
전혀 그렇지 않다	명	170	58	112
	%	1.3	1.8	1.2
모름/무응답	명	66	16	50
	%	0.5	0.5	0.5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181-182.

## 5.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은 여성은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교육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정책적 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2-26〉 향후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

(N=응답자 전체 12,777명)

구분	사례수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주택 문제 관련 지원		법률/가족 관련 지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2,777	4982	39.0	4836	37.8	4274	33.5	3833	30.0	2621	20.5	984	7.7	
성별	남성	3,239	1111	34.3	1172	36.2	962	29.7	1116	34.5	718	22.2	294	9.1
	여성	9,538	3871	40.6	3664	38.4	3312	34.7	2717	28.5	1903	20.0	690	7.2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185-186.

북한이탈여성과 남성은 향후 확대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 지원서비스’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나, 그 외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지원 서비스’에서 남성 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인다. 이는 결국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남성이 처한 정책적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요구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착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27〉 향후 확대해야 하는 복지 서비스

구분	사례수	고용 (취업) 지원 서비스		보건의료·건강 서비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소득 지원 서비스		여가·문화생활 지원 서비스		안전 관련 서비스		기타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419	915	40.6	466	18.0	249	11.0	228	8.6	313	12.7	108	3.9	75	2.9	7	0.2	58	2.2	
성별	남성	865	351	43.3	143	14.0	94	11.3	85	9.5	87	9.8	42	5.0	34	3.7	3	0.4	26	3.1
	여성	1554	564	39.7	323	19.4	155	10.9	143	8.3	226	13.7	66	3.5	41	2.6	4	0.1	32	1.9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pp. 131-132.

제3장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요	59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지원	65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82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요

###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법률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가 변화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지원 정책도 변화해온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2년 4월 이전까지는 특별한 입법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군 보안기관 주관으로 귀순자 지원업무를 처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어 당시 귀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원호처를 주무부처로 하여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였다. 그 후 1979년 1월 귀순자만을 대상으로 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원호처를<sup>8)</sup> 주무부처로 하여 귀순용사에게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우대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권 붕괴 등의 국제정치적 정세와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 상황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3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하였다가,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1997년 「귀순북한동포법」을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1월 현재 총 34조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령 51조(2016.8.11. 개정), 시행규칙 10조(2014.11.28. 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6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4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제도를 강화하였는데 개정된 법률에는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

8) 원호는 1984년에 국가보훈처로 개편되었다(이기영 외, 2008).

인정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정착금의 압류·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등이 있다. 2009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식별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없애도록 1회에 한해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고, 민간지원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적응센터와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게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9곳에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특례 마련, 영농정착 지원 실시, 공공시설 내 편의사업 허가 등 지원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특히, 이 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했고, 이혼 특례 규정 신설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시도하였다. 2013년에는 취업 알선 외 3년 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게 하였고, 2014년에는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통일부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추후 개정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외에도 학력 인정, 의료급여, 소득세, 직업, 주택, 채용 등과 관련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의 <표 3-1>에서 정리하였다.

〈표 3-1〉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구분		주요 내용	소관 부처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총 34조로 구성(시행령 51조, 시행규칙 10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전반	통일부
	의료급여법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 급여의 보호	보건복지부
	소득세법	·정착금·보호금, 그밖의 금품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획재정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입학, 편입, 대학원 입학 정원 규정	교육부
	군인사법 시행령	·북한 군인 출신 특별 임용	국방부
행정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국토교통부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취업성공패키지에 북한이탈주민 포함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및 관리규정	·취약계층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채용	국방부/국세청/ 문화재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 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	국토교통부/ 환경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규정	고용노동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진출 확대	행정자치부

##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개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률적 근간으로 하여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 기관은 통일부가 주된 업무를 담당한다. 정착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능력 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 전국 하나센터 2주 6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아동 등 - 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직업훈련장려금·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시 200만원 추가) · 자격취득시 200만원 ※ 자격취득 장려금 및 직업훈련 장려금은 2014. 11. 29 이후 폐지. 다만, 2014. 11. 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는 적용
	취업 장려금	· 3년간 근무시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 11. 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 적립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2014. 11. 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기타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취업 지원 바우처
사회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약 50만원 수준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구분	항목	내용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 자료: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이들의 고용률 등의 객관적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삶의 질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탈북민-지역민 간의 소통 부족, 자신감·소속감 결여 등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와 융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2016년 11월 통일부는 이들에 대한 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 하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사업안	내용	비고
초기 정착	생애설계과정 운영	▶ 해외 체류기간, 민주주의·시장경제 이해도 등 고려, 맞춤 교육 ▶ 장기적 인생 설계 자문, 취업·교육·진로 안내 ▶ 선배 탈북민 등과 연계 멘토링 지원	17년도~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등 증액	▶ 월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증액 ▶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 등과 연동하도록 제도 개선	18년~
취업	공공부문 채용 확대	▶ 정부부처·지자체 등 탈북민에 적절한 보직 발굴 및 경력경쟁채용 확대 ▶ 민간기업 채용 권고	17년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 탈북민의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	17년도~
	자산형성제도 개선	▶ 가입 요건 및 용도 제한 완화	17년도~ (지침 개정)
	직장-주거 연계 강화	▶ 임대주택 배정시 계약 해지 조건 완화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 지급	17년도~ (지침 개정)
교육	전담 코디네이터	▶ 신청 학교 대상 배치 확대 * 22개교 총21명→희망 35개교 전원 배치	17년도~
	멘토링	▶ 대학생·선배·또래 등 연계,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대상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 지원	17년도~

구 분	사업안	내 용	비 고
	리더육성 프로그램	▶ Youth Vision Program 취업 연계성 강화 ▶ HOPE 프로그램 : 우수 청소년 분야별 전문가와 결연 및 맞춤 지도 확대(교육부)	17년도~
	예비대학과정	▶ 대학특례입학자 대상 언어·글쓰기 등 기초수학능력 증진을 위한 집중교육 실시	17년도~
	통일준비학교	▶ 우수 대안학교 지정, 통일 이후 통합교과과정 개발 및 남한학생 교류프로그램 확대	17년도~ (법률 개정)
	제3국 출생 자녀 지원 강화	▶ 양육 가산금 신설	17년도~ (시행령 개정)
▶ 정원 내 특례입학 및 첫 학기 입학금·학비 지원		19년도~	
협업 체계 강화	탈북민대책협의회 개편	▶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 로 확대 ▶ 광역지자체 포함 및 4개 소위원회 신설	17년도~ (법률 개정)
	하나센터 허브화	▶ 취업·교육·복지 등 종합서비스센터로 시범 운영 후 전국 단위 확산	17년도~
	탈북민 온라인 포털	▶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개발(상담·지원이력 축적 통한 맞춤 관리 기반 구축) ▶ 탈북민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멘토링 시스템	17년도~
인식개선 및 소통강화		▶ 통일문화센터 건립	19년도~
		▶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17년도~
		▶ 1:1 결연사업(실향민 등 포함), 교류프로그램, 소통사례 확산 ▶ 무지개다리 사업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문화부)	17년도 즉시 추진

※ 자료: 2106년 11월 25일 통일부 보도자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통일부가 주요 담당 부서이면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서도 이들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을 통해 취업상담 및 취업 알선을 돕고, 보건복지부는 소득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지원, 교육부는 특례입학 제도 지원,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통일준비학교 시범운영 및 사립 대안학교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신변 보호담당관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이 여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지원

### 1. 생활안정 지원

#### 가. 생활안정 지원 정책<sup>9)</sup>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사회보장 지원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수급 특례가 적용된다.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년간 지속되는 제도로,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의 정착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지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표 3-4〉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2,057,218

\* 가구원 수에 +1명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인 증가시마다 가산

※ 자료: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69 재구성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하나원에 재원 중일 때 이루어진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즉시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하나원을 퇴소하며 거주지로 전입절차를 거쳐 최초전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즉시 급여를 지급받는다.

9)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3-5〉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선 ('15년 6월까지 적용)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타 지원액(B)	117,993	200,908	259,904	318,901	377,898	436,894	495,890
현금급여기준 (C=A-B)	499,288	850,140	1,099,784	1,348,428	1,599,072	1,848,716	2,098,361
주거급여액(D)	110,003	187,303	242,304	297,306	352,308	407,309	462,311
생계급여액 (E=C-D)	389,285	662,837	857,480	1,052,122	1,246,764	1,441,407	1,636,050

※ 자료: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72.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로 선정되고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6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나. 생활안정 지원 수혜 현황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적용 수급자 수를 보면, 2013년 총 5,627명에서 2014년 5,278명, 2015년 3,499명으로 줄어들었다.

〈표 3-6〉 북한이탈주민 특례수급자 성별 현황

(단위: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	1,539	54.6%	1,453	59.0%	903	42.5%
여성	4,088	49.8%	3,825	54.2%	2,596	41.4%
총계	5,627	51.0%	5,278	55.4%	3,499	41.7%

주: 수급 비율 = 해당연도별 수급인원/이전 5년간 입국인원×100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과 통일부 제출자료로 작성.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특례적용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년간 입국자 수의 합은 정확한 모집단이 아니다. 더구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전입 후 3년까지 적용되는데 일괄적으로 5년 기간을 적용했기 때문



에 엄밀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는데, 정착지 진입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50%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고 남성의 적용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다. 전체적인 비율은 2013년 51.0%에서 2014년 55.4%로 올랐다가 2015년에는 41.7%로 떨어졌다. 분석을 하기에는 산출 근거와 분석 범주가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초기 5년 간 생계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적용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다. 정착 후 5년이 지난 시점까지 포괄한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생계급여 수급현황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통일부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06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률은 74.1%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0년 51.3%, 2015년에는 25.3%에 이르렀다. 일반국민 생계급여 수급률이 지난 10년간 2~3%대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 현황을 성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7〉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남성	15~29세	41.4	38.4	41.8	27.9	31.7	9.3	-32.1
	30대	32.8	28.8	23.8	17.1	12.5	9.2	-23.6
	40대	38.9	32.0	27.7	21.6	17.3	15.6	-23.3
	50대	61.4	52.1	33.3	26.5	23.6	19.2	-42.2
	60대 이상	56.8	53.1	54.5	43.7	43.3	40.9	-15.9
	남성 수급률	42.4	37.7	35.0	25.4	24.3	15.1	-27.3
여성	15~29세	39.0	38.6	41.8	35.2	38.5	22.0	-17.0
	30대	39.6	37.7	35.4	35.2	30.3	27.0	-12.6
	40대	74.3	60.0	41.2	36.4	29.6	26.4	-47.9
	50대	96.7	78.2	51.0	42.8	36.2	33.1	-63.6
	60대 이상	96.5	91.5	86.3	77.1	75.3	68.0	-28.5
	여성 수급률	55.1	50.3	43.1	39.0	35.6	29.3	-25.8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전체	15~29세	39.9	38.5	41.8	32.4	35.9	17.2	-22.7
	30대	38.3	35.9	33.0	31.1	26.2	22.6	-15.7
	40대	64.1	52.7	38.0	32.9	26.9	24.1	-40.0
	50대	83.8	69.0	45.1	37.1	31.9	28.6	-55.2
	60대 이상	80.7	76.8	75.3	64.8	64.0	58.6	-22.1
	전체 수급률	51.3	46.7	40.8	35.0	32.3	25.3	-26.0

주: 1. 성별·연령대별 수급비율=해당연도 성별 연령대 수급인원/해당연도 성별 연령대 거주인원  
×100

2. 수급자 인원에는 사망·이민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거주인원에는 제외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자료: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p. 2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이 높은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 입국자 수가 월등히 많고 이들이 최근 입국자로 보호기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국회예산정책처, 2016), 이 외에도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등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임금 수준이 낮아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는 것 보다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 때문에 수급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 2. 취업 지원

### 가. 취업 지원 정책<sup>10)</sup>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은 자활·자립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전까지 체제 경쟁 및 취약계층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이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10)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면서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정착금 지급 방식의 변화로 2005년 이전까지는 일회성 현금지원의 형식이었는데, 2005년부터는 장려금 형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재정비되었다. 이때부터 취업 중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정착 장려금이 취업 지원 정책과 연결되어 인센티브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산형성제도를 도입하여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꾀하였다.

정착장려금은 정착지원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동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13조에 근거하고 있다. 2005년 이전 입국자에게는 정착금으로 1인에게 약 35백만 원을 지원했으나, 이후에는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19백만 원) 외에는 자활노력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착금의 전체 지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본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취업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sup>11)</sup> 이 때 마련된 정착장려금 제도는 2013년에 한 번 더 개정되지만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었다.

〈표 3-8〉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원 제도 변화

구분	기준		금액(만원)		변경 2014년
	2005년*	2013년**	2005년*	2013년**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미만		-	-	미래행복통장 (신설)
	총 500시간	총 500시간 이상	120	120	
	총 500시간 ~ 1220시간	총 620시간 이상	120시간 ×20만원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 1년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과정 수료		200(추가지급)			

11) 또한 이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정착금 가산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가산금은 연령(만 60세 이상), 장애(장애등급별), 장기치료(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만 13세 미만 한부모 아동)에게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로 기준에 따른 해당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통일부, 2015).

구분	기준		금액(만원)		변경
	2005년*	2013년**	2005년*	2013년**	2014년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신청횟수: 1회)		미래행복통장 (신설)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신청횟수: 1회)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50	(수도권) 200 (지 방) 250	동일
	1년차		550 (*10이전) 450	(수도권) 450 (지 방) 550	
	2년차		600 (*10이전) 500	(수도권) 550 (지 방) 650	
	3년차		650 (*10이전) 550	(수도권) 650 (지 방) 750	
총액(최고액)			2,440	(수도권) 2,210 (지 방) 2,510	

\*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 이전 사회진출자에 해당

\*\*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에 해당

단,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까지만 적용

※ 자료: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40 재구성

직업훈련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에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유가 장려금 수령이 목적이 되거나 취업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직업훈련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면서, 2005년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1,220시간 240만원이 지급되던 것에서 2013년 개정에서는 최대 740시간 160만원 지급으로 축소되었다. 이 때 직업훈련 시간으로 인정되는 과정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지원 센터가 해당된다. 그리고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의 직업훈련과 통일부 ‘민간 위탁 교육과정’의 수료시간도 합산된다. 이외 민간훈련기간의 직업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격취득 장려금도 역시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장려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까지 적용되고,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자’에 대해서는 미

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된다. 자산형성제도에 해당하는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도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인 경우여야 해당되나, 출산 또는 병역 등의 사유에 한해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 이후 2년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이어야 하고, 지원 기간은 최초 약정 2년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의 30% 이내(10~50만 원) 중 본인이 계좌 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1:1로 매칭 지원하는 형식인데, 계약을 준수하여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에 적립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그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 만료 시에 기초생계급여수급권자이거나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지원금을 해당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규정된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지급요건 미충족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산형성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약 10여년 만에 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결과라 하겠다.

〈표 3-9〉 미래행복통장 제도

시행제도	주요내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등</li> <li>- 적립 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li> <li>- 지원 기간 : 2년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li> <li>- 적용 대상 : '14. 11. 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li> </ul> </li> </ul>

※ 자료: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28 재구성

취업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2013년 개정에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3년차에 지급하는 금액을 더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학교직원은 기존 보장체계에 속해있는 바, 취업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4년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행복통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한 경우 취업 장려금 수급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취업 장려금 신청 시 출산증명서를 첨부하면 출산 횟수별 1회씩 최대 2년까지 적용 가능하다.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보는 대상에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본인이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등과 함께 육아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와 출산휴가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취업에 있어서 성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는 정착지원법 제16조(직업훈련)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직업훈련신청 등), 제32조의 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49조(권한의 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통일부에서 취업 지원 정책을 실시했으나, 2001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위탁하여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수당은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훈련비와 훈련수당 모두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주요한 법률상의 변화로는 2007년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까지 확대한 것과 2009년 개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과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가 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직업상담을 통한 경로 설정, 근로의욕과 능력 증진을 위한 훈련, 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수당과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150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훈련 목표 인원의 60% 이상을 해당 집단으로 운영하는 취약계층 과정 내에 북한이탈주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서울, 경기, 경남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개설하기도 했다(홍승아 외, 201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약계층 과정이 아니더라도 모든 개설되는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새일센터의 직업상담 및 취업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표 3-10〉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제도

시행제도	시행기관	주요내용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 무료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 수당 지급
취업알선,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 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지원
고용지원금*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지불 임금의 1/2를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 • 고용센터에 신청, 통일부(하나원)에서 지급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까지만 적용

※ 자료: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28 재구성

취업보호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 알선과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포함한다. 정착지원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 알선), 제35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제49조(권한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취업 알선 등의 신청),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지침(통일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취업보호는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보호기간 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와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노령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장애인인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보호담당관이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직업 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취업 알선, 고용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보호 담당관이 고용지원금 접수 및 신청도 담당하는데, 이 제도도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으로 대체되었다. 2014년 11월 28일까지의 입국자 중 취업보호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에서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좌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장기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이 3년간 최대 2,280만원에서 4년간 최대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외에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지원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과 사회적 기업 설립,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착지원법 제36조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임용이 가능하다. 북한의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특별임용을 희망하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8월 예규 제62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2016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통합형 정책을 실시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 나. 취업 지원 수혜 현황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제도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1>과 같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적을 정리했는데, 2015년 기준 9,546명에게(미래행복통장 가입인원 10명과 특별임용자 13명 제외) 311.4억 원이 지급되었다.

<표 3-1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적

분야	내용	2015년 기준 실적
직업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	• 지급인원 : 953명 • 지급액 : 6.8억 원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 원의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 •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원 추가지급	• 지급인원 : 516명 • 지급액 : 7.5억 원
고용지원금	• 급여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채용기업주에 지급)	• 지급인원 : 3,501명 • 지급액 : 133억 원
자격취득 장려금	• 자격취득시 장려금으로 200만원 지급	• 지급인원 : 733명 • 지급액 : 14.7억 원
취업 장려금	•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 주민에게 250만원 지급 (최대기간 3년) • 3년간 근속 시 수도권 1,650만 원, 지방 1,950만 원	• 지급인원 : 2,844명 • 지급액 : 142.7억 원
자산형성 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에만 해당)	• 통장가입인원 : 10명 (지원금은 2016년도에 지급)



분야	내용	2015년 기준 실적
특별임용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국군으로 특별임용</li> <li>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5월까지 총 13명 특별 임용</li> <li>2015년 기준 43개 기관 대상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평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li> <li>전국 23개 지역적응센터에 취업전문상담사 배치</li> <li>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지원</li> <li>영농정착 및 창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정착 지원인원 (총 183명)</li> <li>영농정착 지급액 (총 3.2억 원)</li> <li>창업 지원인원 (총 816명)</li> <li>창업지원 지급액 (총 3.5억 원)</li> </ul>

※ 주: 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자격 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제도가 적용됨.  
 2.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됨.  
 ※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처에서 재구성;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p. 2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015년 기준 2,003.54억 원으로 취업 지원으로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15.5%에 이른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예산 1,246.2억 원 중에서도 25%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3-12〉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5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9,084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24,189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239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77,000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108
소 계 (A)			124,620 (62.20%)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사회안정망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274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탈북여성 폭력예방 및 지원)	300
소 계 (B)			574 (0.29%)

7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5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44,031
	생계급여	생계급여	30,424
소 계 (C)			74,455 (37.16%)
행정자치부	이북도민 관련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605 (0.30%)
경찰청	보안경찰 활동	보안수사 활동	100 (0.05%)
합 계			200,354 (100.00%)

- ※ 주: 1.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액과 생계급여액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추정된 금액임.  
 2. 의료급여는 지원단가, 국고보조비율, 북한이탈주민 인구수를 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함.  
 3. 2015년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전체 평균 급여액(2015년 12월 기준 365,217원)과 수급 인원(6,942명)을 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p. 13 재구성.

이 중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사업의 수혜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3>과 같다.

<표 3-13>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 수혜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직업훈련비	254	9.0	843	10.3	263	10.7	1,018	14.4	168	7.9	785	12.5
직업훈련 수당	254	9.0	843	10.3	263	10.7	1,018	14.4	168	7.9	785	12.5
직업훈련 장려금	170	6.0	604	7.4	127	5.2	579	8.2	80	3.8	436	7.0
자격취득 장려금	183	6.5	769	9.4	169	6.9	710	10.1	132	6.2	601	9.6
취업 장려금	787	27.9	2,517	30.6	960	39.0	2,671	37.8	756	35.6	2,088	33.3
고용 지원금	1,086	38.5	3,020	36.8	1,015	41.2	2,951	41.8	854	40.2	2,647	42.2
자산형성 제도*	-		-		-		-		1		7	

주: 수혜 비율 = 해당연도별 수혜인원/이전 5년간 입국인원×100

\* 자산형성제도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시행

※ 자료: 통일부 자료로 작성

취업 지원 정책으로 지급되는 각종 훈련비 및 수당의 성별 수혜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녀 모두 직업훈련, 자격취득 장려금 등의 수혜율은 10% 내외에 그치는데, 취업장려금과 고용지원금 신청자의 비율은 30-40%에 이른다. 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보다 실제 취업에 대한 보상과 유인을 제공하는 것에 더 많은 호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에게는 각종 수당 및 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신, 자산형성제도가 시행되는데 아직 수혜 현황을 분석할 만큼의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 2015년에 자산형성제도를 신청한 사람은 남성 1명, 여성 7명이고, 각 집단이 신청한 액수는 남성 6,000,000원, 여성 37,800,000원이다.

〈표 3-14〉 2015년도 자산형성제도 신청 현황

구분	신청자 수(명)	신청 액수(원)	1인당 평균 신청액(원)
남성	1	6,000,000	6,000,000
여성	7	37,800,000	5,400,000

\* 자산형성제도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시행

※ 자료: 통일부 자료로 작성

자산형성제도 신청 액수를 1인당 금액으로 평균을 내보면 여성은 1인당 5,400,000원을 신청하여 남성보다 60만원 가량 신청 액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아직 효과성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낮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여성의 저축 금액은 남성 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결국 수혜 금액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업 수혜 현황을 파악해보면,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2016년 8월말 기준 100명이 가입했고, 이는 목표치 400명의 25%, 가입 가능한 대상(2015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 1,400여명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호 의원실 보도자료, 2016. 09. 18.). 근로소득 중 저축액이 있어야만 하고 최소 납입금이 월 10만원이라는 조건은 근로소득이 없거나 저임금 노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미래행복통장 제도 도입과 함께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고용 지원금이 폐지된 상태에서 입국초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취업 지원 정책이다. 취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취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하나원에서의 진로교실과 현장체험교육, 이후 직업 기초교육과 직업 심화교육 및 스피치교육,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입국초기부터 취업 이후까지 정착과정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5〉 2016년 남북하나재단 취업 프로그램

사업명	일시(횟수)	장소	대상	인원 (비고)	
현장 체험 교육 (하나원)	제1차	1.12(화)	골프존안성H (주)PACOM	212기	58명
	제2차	2. 2(화)	골프존안성W고려인삼창	213기	75명
	제3차	2.23(화)	(주)한만두식품	215기	35명(남)
	제4차	3. 8(화)	골프존카운티Q (주)코리아나화장품	214기	70명
	제5차	3.15(화)	(주)한만두식품	216기	27명(남)
	제6차	4. 5(화)	(주)한만두식품	215기	75명
	제7차	4.19(화)	(주)한만두식품	216기	75명
	제8차	5.17(화)	가드너고려인삼창	217기	71명
	제9차	5.18(수)	(주)한만두식품	217기	27명(남)
	제10차	6.15(수)	(주)한만두식품	218기	27명(남)
	제11차	6.17(금)	(주)한만두식품,팩컴	218기	77명
	제12차	7.12(월)	골프존Q, 정관정	219기	90명
	제13차	7.13(화)	진성FM, 팩컴	219기	10명(남)
	제14차	8.9(화)	골프존	220기	87명
	제15차	8.10(수)	한만두	220기	26명(남)
	제16차	9.7(수)	(주)화양에프앤씨, (주)자미원	221기	27명(남)
직업심화교육 스피치교육	제1차(현장교육)	1.20~2.3(수)	골프존	교육생	9명(남)
	제2차	2.13~3.12	재단 강단	교육생	24명
	제3차	3.19~4.16	재단 강단	교육생	20명
	제4차	4.23~5.28	재단 강단	교육생	20명
	제5차	8.20~9.24	재단 강단	교육생	20명

사업명		일시(횟수)	장소	대상	인원 (비고)	
직업기초교육	기업 탐방	제1차	4.22	행남자기, 농심	구직자	19명(남3)
		제2차	5.23	(주)바오스	구직자	6명(남1)
		제3차	9.22	(주)정식품, (주)한삼인	구직자	19명(남4)
	고객만족 서비스교육(CS)	6.7~6.10	재단 강당 (현장면접진행)	구직자	20명(남3)	
	유관기관 일자리협력망회의	9.7	재단 강당	유관기관	11기관 인사담당자	
취업자 직무역량워크숍	1차	6.24~6.25	리솜오션캐슬	취업자	40명(남5)	
하나원 진로교실	화천	제1차	3.24~4.7	화천 하나원	215기	27명
		제2차	4.20~5.4	화천 하나원	216기	22명
		제3차	5.19~6.2	화천 하나원	217기	26명
		제4차	6.10~6.30	화천 하나원	218기	27명
		제5차	7.14, 7.28	화천 하나원	219기	8명
		제6차	8.4~8.25	화천 하나원	220기	26명
		제7차	9.1~9.22	화천 하나원	221기	22명
		제8차	9.29, 10.18	화천 하나원	222기	8명
	안성	제1차	4.15	안성 하나원	216기	103명/16명
		제2차	5.13	안성 하나원	217기	71명/16명
		제3차	5.9	안성 하나원	216기	103명
		제4차	6.9	안성 하나원	217기	71명
		제5차	7.4	안성 하나원	218기	76명
		제6차	8.1	안성 하나원	219기	75명
		제7차	8.29	안성 하나원	220기	84명
		제8차	9.26	안성 하나원	221기	66명

※자료: 남북하나재단, 2016년 취업지원센터 취업실적 관련 자료 (2016. 9. 30. 기준)

이 외에도 단기 연수, 전문 직종(의류 리폼 및 수선 과정,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 귀금속 공예 과정) 특화 교육,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소년 취업교육, 청년 취업 바우처, 온라인 배움터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혜율은 확인할 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공공기관 북한이탈

주민 채용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인원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구인구직이 발생한 건수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3년 69명, 2014년 52명, 2015년 43명, 2016년 42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역시 성별, 연령 등의 정보가 없고, 전체적인 현황이 아니어서 분석에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 지원 수혜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6>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201명, 2014년 155명, 2015년 160명이다. 이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110명, 2014년 91명, 2015년 91명으로 약 56.8%의 취·창업률을 보인다.

<표 3-16>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참여자수	취·창업자수	취·창업률	참여자수	취·창업자수	취·창업률	참여자수	취·창업자수	취·창업률
남성	28	19	67.9%	29	18	62.1%	26	22	84.6%
여성	173	91	52.6%	126	73	57.9%	134	69	51.5%
전체	201	110	54.7%	155	91	58.7%	160	91	56.9%

※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로 작성

그런데 성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한 비율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남성 참여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남성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북한이탈주민 참여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성들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건강 상태, 육아 부담, 교육을 통한 문화적·인적 자원 획득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3년 132명, 2014년 207명, 2015년 29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취업연계율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일하기센터

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일정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7〉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자	취업 연계	취업 연계율	이용자	취업 연계	취업 연계율	이용자	취업 연계	취업 연계율
여성	132	64	48.5%	207	112	54.1%	299	167	55.9%

※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로 작성

〈표 3-18〉 새로일하기센터 이용자 취업 현황

세부항목	2013		2014		2015		누적	
	명	%	명	%	명	%	명	%
사무, 회계, 관리	12	18.8	17	15.2	23	13.8	52	15.2
건설, 기계, 화학, 운송	2	3.1	12	10.7	16	9.6	30	8.7
영업, 판매	6	9.4	8	7.1	7	4.2	21	6.1
교육, 연구	3	4.7	-	0.0	1	0.6	4	1.2
이미용, 숙박, 음식	8	12.5	10	8.9	20	12.0	38	11.1
전기, 전자	9	14.1	14	12.5	13	7.8	36	10.5
보건의료	2	3.1	10	8.9	12	7.2	24	7.0
경비, 청소, 가사도우미	4	6.3	9	8.0	5	3.0	18	5.2
사회, 복지	3	4.7	4	3.6	8	4.8	15	4.4
기타	15	23.4	28	25.0	62	37.1	105	30.6
합계	64	100.0	112	100.0	167	100.0	343	100.0

※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로 작성

이용자 취업 현황을 보면, 사무·회계·관리와 이미용·숙박·음식 분야가 많다. 그런데 기타 분야의 취업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보다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어떤 분야의 발굴과 지원이 더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에서도 취업 현황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 1. 사회적응교육<sup>12)</sup>

##### 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가 하나원 교육이다. 입국하여 보호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12주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언어교육, 진로지도, 심리, 건강증진, 민주시민프로그램, 법률, 인식개선, 여성인권, 금융, 정착 사례, 한국문화, 직업 등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원은 안성 본원과 화천 분소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는데, 안성 본원은 여성 특화교육을, 화천 분소는 남성 특화 교육을 운영한다. 그리고 분소에서는 사회적응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직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하나원에서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2시간 사회적응 교육을 진행한다. 정규프로그램(총 392시간, 공통 357시간, 특화 35시간) 외에, 일과 후 및 주말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을 총 364시간 운영하는데,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성인반(남성, 여성), 청소년반, 초등반, 유치반, 영아반, 경로반 등 7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다(하나원, 2016). 정규교육과정에는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48시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157시간), 진로지도·직업적응훈련(165시간), 초기 정착 지원(57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자율 참여형 보충 과정에는 우리말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교육, 운전이론, 스트레스 관리, 사이버교육, 요양보호사, 정착사례 특강, 체육·문화활동 등이 포함된다.

12)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3-19〉 2016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 교육 프로그램(정규)

교육 분야	교육 주제	교과목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8시간)	정서안정 프로그램 (34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7시간) ·웃음치료(2시간) ·건강한 마음관리(8시간) ·대인간계 의사소통 훈련(7시간) ·MBTI를 통해 본 대인 관계이해(4시간) ·심리 이해 및 심리 검사(3시간) ·마음다스리기(2시간)
	건강증진프로그램 (14시간)	·건강체조(2시간) ·체육활동(본원 4시간, 분소 6시간) ·하나의원 안내 및 보건 진료(본원 4시간, 분소 2시간) ·건강관리법(4시간)
우리사회 이해증진 (157시간, 공통 122시간, 특화 35시간)	민주시민 프로그램(10시간)	·민주시민 및 권리와 의무(2시간) ·시민윤리함양(2시간) ·알기쉬운 한국정치(특화 2시간) ·한국정치와 선거제도(2시간) ·통일정책 이해(2시간)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17시간)	·생활금융(실습, 4시간) ·맞춤형 소비·재테크 설계하기(특화 7시간) ·시장경제 이해(2시간) ·보험 및 금융상품 이해(2시간) ·보험·금융사기예방 사례교육(2시간)
	사회이해 프로그램 (92시간)	·한국문화 이해·직장예절(5시간) ·역사문화탐방(7시간) ·특별활동(7시간) ·가정체험·직업체험(14시간) ·도시체험(7시간) ·봉사활동(7시간) ·공동주택 생활문화체험(특화 7시간) ·생활밀착형 민원서류 작성 연습(특화 3시간) ·남북한 사회비교(2시간) ·우리 역사 바로 알기(6시간) ·결혼과 가정생활(3시간) ·한국문화이해: 가치관 정서(2시간) ·한국문화 이해: 생활문화 및 예절(2시간) ·한국문화 이해: 대중매체 및 사이버 세계(4시간) ·알기쉬운 인권 이해(특화 2시간) ·생활법률(2시간) ·법률피해 구제 사례교육(2시간) ·맞춤식 생활법률교육(특화 4시간) ·신문활용 시사현안 이해(특화 6시간)
	언어적응프로그램 (38시간)	·남북한 언어비교(8시간) ·언어와문화(6시간) ·표준발음 기초 연습(4시간)

교육 분야	교육 주제	교과목
		·표준발음 심화연습(특화 4시간) ·외래어(12시간) ·기초영어(4시간)
진로지도 직업탐색	기초검사 및 취업제도 이해 프로그램(7시간)	·직업심리검사 및 결과설명(3시간) ·직업훈련·자격제도 이해(2시간) ·취업관련법 이해(2시간)
	직업정보 및 취업안내 프로그램(15시간)	·직업의 이해(2시간) ·구직서류·면접준비(3시간) ·진로지도 종합안내(2시간) ·정착사례특강(8시간)
	기초직업적응 프로그램 (본원 143, 분소 150시간)	·기업탐방(7시간) ·직종 체험교육(56시간) ·취업관련기관 현장견학(7시간) ·진로설계 프로그램(8시간) ·직종특화교육(특화 28시간) ·정보화교육(28시간, 특화 7시간) ·직종체험 사전 안내(1시간) ·사이버교육 소개(1시간) ·운전면허 이론 교육(분소 7시간)
초기정착	정착지원제도 이해 프로그램(16시간)	·남북하나재단 위탁교육(7시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이해(2시간) ·수료후 생활 안내(2시간) ·신변보호담당관 안내(1시간) ·탈북민지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소개(2시간) ·의료지원제도 이해(2시간)
		하나원생활안내 프로그램(본원 20시간, 분소 18시간)
		행정지원프로그램(본원 21시간, 분소 16시간)

※ 자료: 하나원(2016), “2016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시행안”.

### 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13)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퇴소 후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초기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적응센터는 전국적으로 16개 지역에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한다.

13)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3-20〉 2015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단위: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6	1	3	2	2	1	1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2	1	1	1

※ 자료: 통일부(2016), 『통일백서』, p. 182.

지역적응센터에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전입 1년 이내에 초기집중교육을 실시하는데, 2주 동안 6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그리고 거주지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기 집중교육은 최초로 지역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교육이고, 지역 적응 프로그램은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있는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기 집중 교육은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교육프로그램 40시간, 지역특성화프로그램 20시간으로 구성된다.

〈표 3-21〉 지역적응센터 초기 집중 교육 내용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초기집중교육 (공통교육)	· 초기집중교육 - 지역사회 안내, 일상생활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개인역량 강화, 언어교육, 정서 안정 등	필수
	· 지역적응지원 - 육아정보제공, 전문봉사단 운영, 지역인시객선사업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자조모임, 문화강좌 안내 등	필수
초기집중교육 (지역특성화교육)	·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진행	기관 자율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 p. 47.

지역적응센터의 초기집중교육의 기본 프로그램의 표준 교과 편성안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 지원이 13시간, 사회적응이 17시간, 정서안정이 4시간, 교육 준비 및 관리가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지원의 경우는 자존감 향상 및 직업 탐색, 실제 구직활동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사회적응 분야는 실생활에 필

요한 내용과 법률,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정서안정의 경우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한다.

〈표 3-22〉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표준 교과 편성안(기본 프로그램)

대주제	소주제	세부내용	시간
진로 및 취업 지원	자존감 향상	• 가치 있는 자신 발견, 취업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동영상 : 북한이탈주민 출연)	13시간
	직업탐색	• 진입 가능한 직업탐색 • 직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이해(동영상: 고용주와 탈북 근로자 출연)	
	구인정보찾기	• 인적 네트워크 구성 • 구직망 구축하기 실습(전화, 이메일 등)	
	이력서 작성 실습	• 이력서 작성 • 이력서 제출 방법 및 실습	
	면접훈련	• 면접 및 이미지 이해(동영상 : The best & The worst, 북한이탈주민 출연) • 모의 면접	
	직장적응	• 고용관계법 및 근로기준법 이해 • 4대 보험료 이해, 실업급여 수급방법 • 진로 인생설계	
사회 적응	공동생활예절	• 아파트 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절 습득과 실습(동영상 : 북한이탈주민 출연) • 지하철, 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이용 방법 • 일상생활 및 공공장소 예절, 적절한 옷차림 등	17시간
	휴대폰사용	• 합리적 휴대폰 구입 및 사용 • 명의 대여의 위험성 • 휴대폰 예절과 상식	
	의사소통 및 표준어 사용	• 언어생활 실습(동영상 활용) • 언어생활이 불안한 이유와 해결방안 • 오해 없이 의사소통하기	
	경제생활	• 돈의 개념 이해 • 합리적 소비, 경제생활 잘한 예 & 못한 예 • 가계부 작성하기	
	생활법률	• 보험사기, 다단계 사기 예방 • 성폭력·가정폭력 대처법 • 명의 도용, 개명신청, 혼인신고, 국제결혼, 주택문제, 각종 사기 분쟁 등	
	건강관리	• 질병예방과 건강 유지방법 • 의료지원제도 안내, 협력 병원 소개	

대주제	소주제	세부내용	시간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가족과의 관계 형성</li> <li>• 새로운 가족 형성 준비 및 적응</li> <li>• 부모의 역할 및 자녀에 대한 이해</li> <li>• 성평등, 부모역량 강화</li> </ul>	
정서 안정	스트레스관리	• 스트레스 이해 및 관리	4시간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장과 이완에 대한 이해</li> <li>• 호흡 및 이완 훈련</li> </ul>	
	자기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감 향상</li> <li>• 자기 강화</li> </ul>	
교육 준비 및 관리	입학·수료식	• 지역적응교육 입학식 및 수료식	6시간
	개인별 적응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초기상담(초기적응 이해)</li> <li>• 개인별 심층상담(적응 방향 설정)</li> <li>• 정착계획 수립(정착단계별 인생 설계)</li> </ul>	
	사전·사후검사	• 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사전 및 사후 평가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 pp. 51-53.

지역적응센터의 지역적응 지원은 교육 및 진학, 진로 및 취업, 생계, 의료, 심리·안정, 법률, 주민교류 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 교과 편성안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적절하게 내용을 구성한다. 지역적응지원의 상담은 주로 전문상담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3-23〉 지역적응센터 지역 적응 지원 표준 교과 편성안

구분	프로그램 예시
교육 및 진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관리</li> <li>• 방과후 공부방 운영</li> <li>• 개인학습지도</li> <li>• 편입학 관련지원</li> <li>• 입시설명회 참석</li> <li>• 검정고시 등 입시학원 연결</li> <li>• 지원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li> </ul>
진로 및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상담 및 연결</li> <li>• 진로·직업훈련교육 상담</li> <li>• 기업체 방문</li> <li>• 각종 취업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li> <li>• 지원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li> </ul>

구분	프로그램 예시
생계 지원	·생계급여 절차와 내용 안내 ·지역 내 후원인이나 단체 결연 ·지원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의료 지원	·의료급여 절차와 내용 안내 ·병원연계 및 무료진료·건강검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긴급 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원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심리·안정 지원	·심리, 정신건강, 성폭력 등 범죄 예방교육 ·심리상담 및 임상사례관리 ·정신질환 치료 지원 ·지원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법률 지원	·생활법률 강좌 개설 ·기초사회생활법률 분쟁 해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 상담 기관 연결
주민 교류 사업	·남북한주민 인식개선사업 및 주민통합사업
기타 사후 지원 사업	·상기 7개 사업을 제외한 사후지원사업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 pp. 53-54.

#### 다. 수혜 현황

사회적응 교육의 경우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에서 하나원 입소와 지역 배정 직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초기 사회적응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의 성별 비율과 수혜율의 성별 비율은 유사한 경향을 띤다는 점에서 성별 격차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교육의 경우 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를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진행하였는데, 본원 39개 과목, 분원 42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내용은 네 가지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네 가지 분야는 강의 목표 및 효과, 강사, 강의방법, 학습자에 관한 것이었다. 평가 결과는 ‘매우 그렇다’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교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해당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개 과목의 평균값은 본원은 1.08-1.15, 분원은

1.00-1.27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10개 과목에 있어 본원과 분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표 3-24>와 같다.

<표 3-24>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 평가 상위 10과목

	본원	분원
1	바른 인품 1, 2	취업관련법 이해
2	외래어 1, 2	취업장려금
3	남북한 언어비교 2	언어와 문화
4	정착사례 특강	심리이해 및 심리검사
5	직업훈련제도의 이해	남북한 언어 비교
6	한국문화의 이해 4	직업적성검사 및 결과 설명
7	언어와 문화	직업훈련사전교육
8	직장설명회	외래어
9	법률피해구제사례	미래행복통장
10	직업정보	표준발음 기초연습

※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2016),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 보고서』.

앞의 표에서 나타나듯 본원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분원은 취업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원과 분원의 차이는 성별의 차이이기도 한데, 분원에는 남성들만 입소해있고, 본원에는 여성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과 관련한 과목에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별 강의 내용과 강사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 정착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른 인식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남성은 직접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것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성들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응센터의 경우에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는 생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 서식을 살펴보면 성별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 만족도 조사 설문지에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 가.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정책

#### 1) 의료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은 하나원의 ‘정서안정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50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하나원에서는 하나원 내의 1차 의료기관인 하나의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는데, 안성 하나의원은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신과로 5개의 진료과목이 있다. 화천의 경우는 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로 4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하나원 수료 후 지역 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 57개의 병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지원을 돕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은 의료급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1종 수급자로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 보호기간은 적용 기간에 제한이 없고,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이며, 적용 기간은 선정 기준 충족 시 즉시 취득하게 된다.

#### 2) 심리·정서 지원

심리 및 정서적 지원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 입소하면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받고,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심리검사의 경우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입이 필요한 이들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상담은 신청을 통해 받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필요에 따라 상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하나원 퇴소 후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지역적응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



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및 정서 안정과 취업을 돕는 전문상담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전문상담사를 취업, 심리, 의료 분야로 구분하여 상담을 전문화하고 있다. 전문상담사의 전공이나 전문성을 살펴보면 심리상담사는 3명, 가정폭력·성폭력상담사 5명, 사회복지사 7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사 인력 구성을 보았을 때, 상담 전문가는 17명 정도인데, 이러한 인력 구성으로 인해 상담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하현선, 2016).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담과 각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지만, 전문상담사의 주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전문상담사로 채용 및 배치하고,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수혜 현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수혜현황을 하나원 입소 당시의 진료 현황과 의료 급여 수혜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진료 현황의 경우는 <표 3-25>와 같다. 진료 현황의 경우는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향후 이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진료 항목 현황을 자료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의료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급여 수혜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약 70% 정도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수혜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3-25>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진료 현황

(단위: 건,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원내진료	40,137	49,303	27,773	19,136	18,389	15,388
원외진료	2,459	3,181	2,997	1,682	1,889	1,532
입원, 수술치료	277	315	279	251	226	198
보철치료	653	707	615	593	531	446

※ 자료: 통일부(2016), 『통일백서』, p. 170.

〈표 3-26〉 북한이탈주민 의료 급여 1종 수급자

(단위: 명)

누적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49,959	14,661	35,298	16,898	5,062	11,836	16,621	4,900	11,721	16,440	4,699	11,741

※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출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하나원 입소 직후 시행하는 심리 상담 외에 개별 상담에 해당하는 개인의 심리 상담 및 심리 검사는 다음 <표 3-27>과 같다. 이 자료 역시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사례 추적 시 성별로 상담 내용을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3-27〉 개인 심리상담 및 검사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인 심리상담	261	247	678	646	1,044	985	891	639
개인 심리검사	19	17	36	19	84	105	160	259

※ 자료: 통일부(2016), 『통일백서』, p. 171.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제도를 통한 상담 실적 현황은 다음 <표 3-28>과 같다.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보이는 것이 ‘심리/정서’이고, 다음이 ‘취업’, ‘건강’, ‘교육’순으로 많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적응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정서적 측면과 취업, 건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담을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이 자료 역시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성별 분리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 진행과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 ‘심리/정서’나 ‘가정문제’, ‘법률관계’, ‘건강’ 등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상담 내용을 성별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3-28〉 지역적응센터 상담실적(2015년 기준)

(단위: 건)

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심리/정서	생계/의료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실적	11,817	3,863	9,497	8,223	6,645	11,234	1,930	4,757	3,191	12,959	74,116

※ 자료: 통일부(2016), 『통일백서』, p. 190.

### 3. 교육 지원

#### 가. 교육지원 정책

##### 1) 교육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은 학비지원, 편입학 지원 및 학력인정으로 이루어진다. 학비지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입학 및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고등학교는 만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학교의 경우는 일반대학(4년제)·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대학·교육대학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 지원을 한다.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 시설 등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학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 및 기술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대학의 경우는 국·공립대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하고, 사립대는 정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50% 보조한다. 이러한 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의 경우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학비 지원 기간도 8학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이 학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과 기간을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연장해줄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은 취업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편입학 지원 및 학력 인정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 학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된 학력에 따라 각 학교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2) 수혜 현황

교육지원의 수혜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재학 비율로 파악할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2,777명 중 1,968명이 초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475명의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에 있다.

〈표 3-29〉 현재 다니는 학교 종류

(단위: 명, %)

	사례수	초·중·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 이상		모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968	422	21.5%	155	7.8%	316	16.0%	597	30.3%	386	19.6%	72	3.7%	21	1.1%
남성	563	202	35.9%	60	10.6%	56	9.9%	183	32.5%	30	5.3%	29	5.2%	3	0.5
여성	1,405	220	15.7%	95	7.8%	259	18.4%	414	29.5%	356	25.3%	43	3.1%	18	1.3%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재구성. pp. 192-193.

현재 다니는 학교 종류를 살펴보면, 남성은 초중고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일반대학이 높다. 여성의 경우는 일반대학 비율이 가장 높고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이 높은 순을 보인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분포와 재학 비율을 살펴보면, 10대의 경우는 2016년 9월 말 기준 남성이 1,558명(46%), 여성이 1,901명(54%)로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데 재학율을 살펴보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비율에서 성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의 경우는 2015년 기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총 2,006명으로, 남성 399명(19.9%), 여성 1,607명(80.1%)이고, 총 45억원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수혜율을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을 20대와 30대로 가정하였을 때, 20대와 30대는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남성이 4,395명(40%), 여성이

12,557명(60%)이다. 이러한 수치로 비교하였을 때는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수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대와 30대 중 이미 북한에서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제시한 인원이 누적 인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문대와 사이버대학, 일반 4년제 대학을 세분화하면 다른 수혜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는 바, 여성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의 영향으로 보인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전문대학과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의 수가 남성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성의 수혜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수혜의 수치만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 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3-30〉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수혜 현황

(단위: 명)

구분	세부항목	누적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교육	학비지원 신청자	1,029	4,574	321	1,384	309	1,583	399	1,607

※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제출자료.

## 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 1)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정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정책은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중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은 ‘우리사회 이해 증진’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은 ‘결혼과 가정생활’ 3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알기 쉬운 인권 이해’는 2016년부터 특화교육으로 2시간 진행된다. ‘우리사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총 157시간 중 5시간이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알기 쉬운 인권 이해’는 2015년에는 공통과목이었으나 2016년 특화과목으로 변경되었다(<표 3-31>).

〈표 3-31〉 2016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 교육 프로그램(우리 사회 이해 증진)

교육 분야	교육 주제	교과목
우리사회 이해 증진 (157시간, 공통 122시간, 특화 35시간)	민주시민 프로그램(10시간)	· 민주시민 및 권리와 의무(2시간) · 시민윤리함양(2시간) · 알기쉬운 한국정치(특화 2시간) · 한국정치와 선거제도(2시간) · 통일정책 이해(2시간)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17시간)	· 생활금융(실습, 4시간) · 맞춤형 소비·재테크 설계하기(특화 7시간) · 시장경제 이해(2시간) · 보험 및 금융상품 이해(2시간) · 보험·금융사기예방 사례교육(2시간)
	사회이해 프로그램(92시간)	· 한국문화 이해·직장예절(5시간) · 역사문화탐방(7시간) · 특별활동(7시간) · 가정체험·직업체험(14시간) · 도시체험(7시간) · 봉사활동(7시간) · 공동주택 생활문화체험(특화 7시간) · 생활밀착형 민원서류 작성 연습(특화 3시간) · 남북한 사회비교(2시간) · 우리 역사 바로 알기(6시간) · 결혼과 가정생활(3시간) · 한국문화이해: 가치관 정서(2시간) · 한국문화 이해: 생활문화 및 예절(2시간) · 한국문화 이해: 대중매체 및 사이버 세계(4시간) · 알기쉬운 인권 이해(특화 2시간) · 생활법률(2시간) · 법률피해 구제 사례교육(2시간) · 맞춤형 생활법률교육(특화 4시간) · 신문활용 시사현안 이해(특화 6시간)
	언어적응프로그램(38시간)	· 남북한 언어비교(8시간) · 언어와문화(6시간) · 표준발음 기초 연습(4시간) · 표준발음 심화연습(특화 4시간) · 외래어(12시간) · 기초영어(4시간)

※ 자료: 하나원(2016), “2016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시행안”.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에 해당하는 과목 중 ‘결혼과 가정생활’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담당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양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내용이다.

제목은 건강한 사랑과 결혼. 지금은 건강한 사랑과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가족과 결혼.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제목만 보면 굉장히 인권 침해나 양성 평등 없이 결혼 생활을 잘 하거나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러면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제목은 되어 있는 데요. 실은 원래 내용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성 평등과 인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권과 소통. 물론 성폭력, 가정 폭력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살짝 살짝 바꿨던 적은 있지만, 항상 기본적인 것은 양성 평등과 인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4대 폭력이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아지면서 부터는 4대 폭력을 나눠서 했어요. <전문가 5, 여성, 양성평등교육 강사>.

하나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강사에 따르면 강의의 제목은 사랑과 결혼에 관한 것이지만,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등 양성평등 및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 그런데 당초 5시간이던 교육 시간이 최근 3시간으로 줄어들어 교육의 내용을 모두 다루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시간이 5시간이던 당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는데, 교육 시간 단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자율참여 보충교육 및 청소년반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 특강’, ‘성교육’,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자율 참여 보충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 특강’의 시간 배정을 살펴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본원에서는 6시간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분소에서는 4시간으로 진행되어 교육 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반의 경우 성교육 4시간,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예방교육 4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별로 구별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에 국한되고 있어 추후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시행안 외에 하나원 프로그램 강사진 현황에서 나타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의 이해’에서 가족문화 및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가족문제’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문제 등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2〉 2016 하나원 사회적응 자율 참여 보충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자율 참여 보충교육 프로그램	본원
	분소	·부모교육특강(4시간)
청소년반 정규교육 프로그램	·성교육(4시간)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예방교육(4시간)	

※ 자료: 하나원(2016), “2016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시행안”

남북하나재단과 지역적응센터에서도 양성평등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북하나재단은 『힘내라! 정착성공: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매뉴얼』을 발간하여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적응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총 7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 장에서 ‘평등한 남녀관계와 행복한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평등한 상황과 사례들을 제시하여 양성평등 개념을 이해하게 쉽게 접근하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법률 분야에서 폭행죄를 다루면서 폭력이 범죄라는 내용을 교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2012년 ‘행복한 가정만들기’ 강좌를 개설한 바 있고, 민간공모사업에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사업이 선정되는 등 건강한 가족 형성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홍승아·김소영·박정란, 2012:191).

지역적응센터의 경우는 초기 집중교육에서 가족이나 폭력의 문제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초기 집중 교육 중 ‘사회적응’ 분야에서 가정폭력대처법, 부부-가족관계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후지원 사업에서 ‘심리 및 안정 지원’의 내용으로 성폭력 등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되는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가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인천시의 경우, 2016년 초기집중교육을 10일 동안 60시간 진행하는데, 양성평등교육을 2시간 1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의는 지역의 성문화 관련 기관장이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역 적응센터 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데, 주요 업무는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을 다룬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최근 인천, 여수, 아산, 경기도 등에서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1년 가족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문제,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인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기획·진행한 바 있다(홍승아·김소영·박정란, 2012:195-196).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북한이탈여성의 정서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2) 수혜 현황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경우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초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수혜에서 성별 격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 외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경우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대신 다음 장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혜 경험을 조사하였다.

하나원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하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 평가서』에 따르면, 양성평등 및 인 권 교육에 해당하는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평가는 본원과 모두 평가가 낮은 교과목 10개에 포함되고 있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인권 이해’과목도 본원 평균 1.34, 분원 1.47로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인다.

〈표 3-33〉 ‘결혼과 가정생활’ 및 ‘알기 쉬운 인권 이해’ 교과목 평가

항목	교과목 평가 결과 평균값	결혼과 가정생활 1	결혼과 가정생활 2	결혼과 가정생활	알기 쉬운 인권 이해	
		본원(여성)	본원(여성)	분소(남성)	본원(여성)	분소(남성)
강의 필요성 설명	1.34	1.48	1.30	1.44	1.39	1.46
정착에 도움	1.33	1.49	1.36	1.50	1.36	1.44
강의 태도	1.29	1.28	1.28	1.42	1.25	1.48
수업 내용	1.31	1.28	1.36	1.48	1.31	1.49
이해도, 집중정도	1.33	1.33	1.38	1.54	1.35	1.47
수업매체 활용	1.36	1.38	1.45	1.54	1.33	1.49
내용 요약	1.33	1.33	1.39	1.50	1.33	1.47
학습자에 대한 이해 정도	1.33	1.46	1.39	1.60	1.35	1.47
학습자 흥미 정도	1.34	1.52	1.39	1.53	1.38	1.47
강의 수준 적절성	1.38	1.48	1.42	1.59	1.40	1.47
평균값	1.33	1.40	1.37	1.51	1.34	1.47

※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2016),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 보고서』, pp. 116-123 자료 재구성.

교육 내용과 관련한 항목은 <표 3-33>에서 ‘강의 필요성 설명’, ‘정착에 도움’, ‘학습자에 대한 이해정도’, ‘학습자 흥미 정도’, ‘강의수준 적절성’에 해당한다. 교과목 평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들이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이다. 특히 강사가 학습자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학습자의 흥미 부분에서 남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만족도의 결과가 낮은 것이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경우는 다루는 내용이 북한에서의 경험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처음 접해보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어렵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기에 당장 정착하는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성평등 및 인권의 문제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추후 생활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해당 과목이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복적인 교육이 실제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 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05
제2절. 경제활동 경험	111
제3절. 사회문화 적응 경험	147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요구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성이 138명, 남성이 62명으로 각각 69.0%, 31.0%이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53.5%, 인천이 23.5%, 경기도가 23.0%이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17%, 30대가 20.5%, 40대가 34.0%, 50대와 60대가 각각 18.0%, 2.0%이다.

〈표 4-1〉 응답자의 성별, 거주지역, 연령

구분		사례수		
		합계	남성	여성
성별		200	62(31.0%)	138(69.0%)
거주지역	서울	107(53.5%)	36(33.6%)	71(66.4%)
	인천	47(23.5%)	10(21.3%)	37(78.7%)
	경기	46(23.0%)	16(34.8%)	30(65.2%)
	합계	200(100.0%)	62(31%)	138(69%)
연령	20대	34(17.0%)	12(35.3%)	22(64.7%)
	30대	41(20.5%)	13(31.7%)	28(68.3%)
	40대	68(34.0%)	17(25.0%)	51(75.0%)
	50대	36(18.0%)	16(44.4%)	20(55.6%)
	60대 이상	4(2.0%)	2(50.0%)	2(50.0%)
	무응답	17(8.5%)	2(11.8%)	15(88.2%)
	합계	200(100.0%)	62(31.0%)	138(69.0%)

응답자의 탈북연도는 2006-2010년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이 2001-2005년, 1995-2000년, 2011-2014년이다. 입국연도는 2006-2010이 43.5%이고, 2011-2016년이 29.5%, 다음이 2000-2005년, 1999-2000년이다.

〈표 4-2〉 응답자의 탈북년도 및 입국년도

구분	기간	사례수	비율	구분	기간	사례수	비율
탈북년도	1995-2000	71	18%	입국년도	1999-20	5	2.5%
	2001-2005	46	23%		2000-2005	28	16.5%
	2006-2010	78	39%		2006-2010	87	43.5%
	2011-2014	19	9.5%		2011-2016	59	29.5%
	무응답	21	10.5%		무응답	21	10.5%

응답자의 결혼 상태는 미혼이 30.5%, 기혼이 38.5%, 이혼이 21.5%, 동거가 5.0%, 사별이 4.5%였다.

〈표 4-3〉 응답자의 결혼 상태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미혼	61	30.5%	27	44.3%	34	55.7%
기혼	77	38.5%	20	26.0%	57	74.0%
이혼	43	21.5%	10	23.3%	33	76.7%
동거	10	5.0%	4	40.0%	6	60.0%
사별	9	4.5%	1	11.1%	8	88.9%
합계	200	100.0%	62	31.0%	138	69.0%

응답자의 가족 구성형태를 보면 자녀와 사는 응답율이 가장 많았고, 남편 또는 아내가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의 가족 구성 형태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없음	51	27.7%	23	45.1%	28	54.9%
남편 또는 아내	74	40.2%	22	29.7%	52	70.3%
부모	30	16.3%	12	40.0%	18	60.0%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녀	88	47.8%	20	22.7%	68	77.3%
손자녀	2	1.1%	0	0.0%	2	100.0%
합계	184	100.0%	60	32.6%	124	67.4%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학력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수였고, 다음이 전문학교,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한에서 학력은 무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 때 무응답은 남한에서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표 4-5〉 북한에서의 학력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소학교 (인민학교)	1	0.5%	0	0.0%	1	100.0%
중학교 (고등중학교)	115	57.5%	27	23.5%	88	76.5%
전문학교	28	14.0%	9	32.1%	19	67.9%
대학교	16	8.0%	10	62.5%	6	37.5%
무응답	40	20.0%	16	40.0%	24	60.0%
합계	200	100.0%	62	31.0%	138	69.0%

〈표 4-6〉 남한 학력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초등학교	0	0.0%	0	0.0%	0	0.0%
중학교	6	3.0%	1	16.7%	5	83.3%
고등학교	28	14.0%	12	42.9%	16	57.1%
대학교	26	13.0%	10	38.5%	16	61.5%
대학원	2	1.0%	1	50.0%	1	50.0%
무응답	138	69.0%	38	27.5%	100	72.5%
합계	200	100.0%	62	31.0%	138	69.0%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재북 당시 직업과 현재 직업을 살펴보았을 때 재북 당시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한에서는 현재 취업 상태인 경우가 55%였고, 현재 직업으로는 서비스직이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현재 직업의 경우 전체 사례 수가 적기는 하지만 남성은 기술직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서비스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재북 당시 직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일을 하지 않았음	22	11.0%	3	13.6%	19	86.4%
학생	29	14.5%	11	37.9%	18	62.1%
군인	8	4.0%	7	87.5%	1	12.5%
노동자	38	62.3%	23	37.7%	61	30.5%
사무원	15	83.3%	3	16.7%	18	9.0%
농장원	16	88.9%	2	11.1%	18	9.0%
전문직(의사, 교사 등)	9	4.5%	7	77.8%	2	22.2%
장사	22	11.0%	3	13.6%	19	86.4%
기타	6	3.0%	1	16.7%	5	83.3%
무응답	7	3.5%	2	28.6%	5	71.4%
합계	200	100.0%	62	31.0%	138	69.0%

〈표 4-8〉 현재 취업 여부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취업	110	55.0%	40	36.4%	70	63.6%
미취업	90	45.0%	22	24.4%	68	75.6%
합계	200	100.0%	62	31.0%	138	69.0%



〈표 4-9〉 현재 직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서비스직	28	14.0%	5	17.9%	23	82.1%
건설직	5	2.5%	5	100.0%	0	0.0%
사무직	8	4.0%	3	37.5%	5	62.5%
영업직	2	1.0%	0	0.0%	2	100.0%
생산직	12	6.0%	3	25.0%	9	75.0%
기술직	11	5.5%	8	72.7%	3	27.3%
전문직	2	1.0%	0	0.0%	2	100.0%
자영업	4	2.0%	2	50.0%	2	50.0%
주부	1	.5%	0	0.0%	1	100.0%
기타	1	.5%	1	100.0%	0	0.0%
무응답	126	63.0%	35	27.8%	91	72.2%
합계	200	100.0%	62	31.0%	138	69.0%

## 2. 심층면접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실행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7명을 대상으로 적응의 과정과 북한이탈주민정책 수혜 및 서비스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11명, 남성 6명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 3명(여성 2명, 남성 1명), 30대 6명(여성 4명, 남성 2명), 40대 6명(여성 4명, 남성 2명), 50대 2명(여성 1명, 남성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정책 및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정책 현황을 비롯하여 정책 및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다. 대상자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3명(취업 2명, 심리 1명), 고용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담당 상담사 1명, 하나원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1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의 경우 1명은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정책 및 사업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다음 <표 4-10>과 <표 4-11>에 정리하였다.

〈표 4-10〉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대상자

	성별	연령	탈북/입국년도	현재직업	결혼 상태	거주 지역
사례1	여성	20대	2011/2011	영업직	미혼	서울
사례2	여성	20대	2011/2011	직업훈련 중 (서비스업 종사 경험)	이혼	경기
사례3	여성	30대	2008/2008	통일교육강사	결혼	충청
사례4	여성	30대	2009	전업주부	결혼	서울
사례5	여성	30대	2009	전업주부 (서비스업 종사 경험)	결혼	서울
사례6	여성	30대	2008/2008	공무원	미혼	경기
사례7	여성	40대	2000/2007	물류센터 근로자	결혼	경기
사례8	여성	40대	1999/2006	물류센터 근로자	결혼	경기
사례9	여성	40대	2003/2009	탈북학생 코디네이터	미혼	경기
사례10	여성	40대	2008/2008	서비스업 (실내골프장 데스크)	결혼	서울
사례11	여성	50대	1998/2003	제조업 근로자	결혼	서울
사례12	남성	20대	2009/2009	대학생(취업준비중)	미혼	서울
사례13	남성	30대	2000/2004	대학생(취업준비중)	미혼	서울
사례14	남성	30대	2012	엘리베이터 업체 근로자	미혼	서울
사례15	남성	40대	2009	시민단체 활동가	이혼	서울
사례16	남성	40대	1998/2004	환경미화원	결혼	서울
사례17	남성	50대	2013/2014	가스회사 근로자	결혼	서울

〈표 4-11〉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계자 심층면접 대상자

구분	성별	담당업무	비고
전문가1	여성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취업)	북한이탈주민
전문가2	여성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취업)	
전문가3	남성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심리상담)	
전문가4	여성	고용지원센터 상담사	
전문가5	여성	양성평등교육 강사	

## 제2절. 경제활동 경험

### 1. 직업교육 및 구직

#### 가. 초기 진입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퇴소 후 바로 일을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나원 퇴소 후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은 '1개월 이상 ~ 3개월 이내'가 전체의 23.0%로 가장 많았다.

〈표 4-12〉 하나원 퇴소 후 처음 일 시작 시점

구분	총 사례수	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기타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32	16.0	46	23.0	28	14.0	37	18.5	7	3.5	50	25.0	
성별	남자	62	10	16.1	12	19.4	7	11.3	14	22.6	1	1.6	18	29.0
	여자	138	22	15.9	34	24.6	21	15.2	23	16.7	6	4.3	32	23.2

\* 무응답은 한국 입국 후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들은 '1개월 이상 - 3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4.6%로 가장 많았으나, 남성들은 '6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에 일을 처음 했다는 응답이 22.6%로 가장 많았다. 표본의 수가 크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원 퇴소 후 3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여성 40.5%, 남성 35.5%로, 여성들의 남한 사회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정착 초기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정착지 진입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 나왔을 땐, 그때 제가 10월 4일에 나왔었는데 한 이틀 뒤에 바로 알바를 했어요.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나왔는데 현금으로 딱 20만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겨울이라서 옷도 사 입고하다 보니까 20만원 다 나가……. 그럼 어떡해요, 알바를 해야죠. 그때 이제 알바천국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전화를…….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알바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여기 하나센터를 다니잖아요. 오전에 하나센터 갔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장한테 얘기해서 오전에 하나센터 갔다가, 네 시에 끝나면 한 시간 이동거리 있으니까, 다섯 시부터 열 시까지 알바, 이렇게. 그렇게 하나센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알바 했고, 하나센터 끝나고서 아예 열두 시간 풀로 아예 식당에 가서……. 오전 열 시부터 열 시까지, 저녁 열 시까지. <사례 1, 여성, 20대>

하나원 나온 다음 날. (어떻게 구했어요?) 벼룩시장 봤는데, 그게 12월 달 났는데, 12월 달이 진짜 바쁜 때잖아요. 그런데 나는 바쁜 줄도 모르고 갔는데, 그냥 뭐 조선족 안 받는다,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일단 만나만 달라고 그래서 나가봤는데, 일단은 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중략) 근데 뭐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었어요. 막 근데 출근했는데 교통비가 없었어요, 진짜 막……. 일주일 출근했나? 그런데 막 교통비가 없었어요. 출근했는데 교통비가 없는, 올 때 돈이 없었어요. (300만원 받았잖아) 그거 브로커비 냈잖아요. <사례2, 여성, 20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생계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처음 남한생활을 시작하며 필요한 지출에 관리비, 월세, 핸드폰 요금, 교통비 등 일상적인 지출까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비가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정착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브로커 비용으로 주고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정착금도 제가 300만 가지고 나왔는데 250만원 바로 갚았어요. 빚을 갚느라고……. 그리고 50만 가지고 나왔죠, 내가 나올 때 실질적으로 가지고 나온 돈은……. 그래서 살면서 빨리 브로커 비용을 갚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누가 소개해 줘서 편의점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다니니까 브로커 비용을 다 갚았죠, 제가. 월급 받으면 바로 입금하고 그래가지고……. 딱 집 정리하고 일자리 찾은 게, 한 달 만에 일자리 찾아가지고 편의점에서 해가지고. <사례 10, 여성, 40대>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이 가진 게 없으니까요. 브로커비용을 주니까. 350만원에 해당하는 브로커 비용을 한 번에 주니까요. 한 번에 빚지기 싫으니까요. 브로커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2달에 100만원씩 내라 그런데 300만원이면 6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300만원 정착금이 나오면 다 주겠으니까 350만원인거 남들은 300만원에 하더라. 300만원에 주겠으니까 50만원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러라. 6개월 걸려서 달라고 하느니 한 번에 주겠다고 하니깐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파트 언니가 아르바이트하는 하나로마트에서 하는데 베이커리 매장에 빵 포장해서 파는 거 일자리 하나에 있는데 본인은 아르바이트가 야채매장이래요. 거기서 시켜줘서 거기서 하다가… <사례6, 여성, 30대>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하게 되는 일은 아르바이트이다. 남한

에서 처음 구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의 39.5%가 서비스직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성은 무응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서비스직이라고 답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남한에서의 일이 식당,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시간제 노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건설직 노동이 11.3%로 서비스직 1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3〉 남한에서 처음 구한 일자리

구분	총 사례수	서비스직		건설직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79	39.5	10	5.0	6	3.0	1	0.5	10	5.0	2	1.0	
성별	남자	62	12	19.4	7	11.3	3	4.8	0	0.0	3	4.8	1	1.6
	여자	138	67	48.6	3	2.2	3	2.2	1	0.7	7	5.1	1	0.7

구분	총 사례수	전문직		자영업		학교 진학		기타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1	0.5	0	0.0	1	0.5	3	1.5	87	43.5	
성별	남자	62	0	0.0	0	0.0	1	1.6	2	3.2	33	53.2
	여자	138	1	0.7	0	0.0	0	0.0	1	0.7	54	39.1

\* 무응답은 한국 입국 후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표 4-14〉 첫 일자리를 구한 경로

구분	총 사례수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교회나 복지기관 등 민간기관을 통해		신문, 잡지 등 (오프라인)을 통해		학교, 학원 추천을 통해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6	3.0	6	3.0	14	7.0	42	21.0	7	3.5	
성별	남자	62	3	4.8	2	3.2	2	3.2	12	19.4	2	3.2
	여자	138	3	2.2	4	2.9	12	8.7	30	21.7	5	3.6

구분	총 사례수	주위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남한 이웃을 통해		기타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50	25.0	18	9.0	8	4.0	49	24.5	
성별	남자	62	12	19.4	6	9.7	5	8.1	18	29.0
	여자	138	38	27.5	12	8.7	3	2.2	31	22.5

\* 무응답은 한국 입국 후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이 때, 일자리는 주위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25.0%), 신문·잡지 등을 통해서(21.0%) 얻게 된 경우가 많았다.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도 구직 경로는 친구, 친지 아는 사람 소개가 전체의 39.1%로 가장 높고, 신문, 잡지 등을 보고 응모했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24.4%를 차지했다. 첫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취업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을 통해 얻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초기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짐작할 수 있다.

첫 일자리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2.5%가 1개월 이상 - 6개월 이내라고 답했다.

〈표 4-15〉 첫 일자리에서의 근무 기간

구분	총 사례수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기타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6	3.0	15	7.5	65	32.5	39	19.5	23	11.5	52	26.0	
성별	남자	62	1	1.6	3	4.8	14	22.6	17	27.4	8	12.9	19	30.6
	여자	138	5	3.6	12	8.7	51	37.0	22	15.9	15	10.9	33	23.9

\* 무응답은 한국 입국 후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만 둔 이유는 ‘몸이 아파서’가 19.5%로 가장 많고, ‘일이 힘들어서’ 13.5%, ‘월급이 적어서’가 15.5% 순이었다.

〈표 4-16〉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구분	총 사례수	월급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임신과 육아 때문에		학교에 다니려고		이직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31	15.5	27	13.5	39	19.5	5	2.5	19	9.5	9	4.5	
성별	남자	62	11	17.7	4	6.5	7	11.3	0	0.0	7	11.3	3	4.8
	여자	138	20	14.5	23	16.7	32	23.2	5	3.6	12	8.7	6	4.3

구분	총 사례수	계약만료		취업 중		차별		적성		기타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4	2.0	3	1.5	1	0.5	1	0.5	4	2.0	57	28.5	
성별	남자	62	3	4.8	2	3.2	1	1.6	1	1.6	1	1.6	22	35.5
	여자	138	1	0.7	1	0.7	0	0.0	0	0.0	3	2.2	35	25.4

\* 무응답은 한국 입국 후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여성들의 경우 건강 문제로 그만 둔 경우가 23.2%로 남성들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일이 힘들어서 그만 뒀다는 응답도 남성들보다 2.5배가량 많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월급이 적어서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17.7%로 가장 높은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또한 ‘몸이 아파서’와 ‘학교에 다니려고’가 동일하게 11.3%로 그 뒤를 따르는 점이 눈에 띈다. 조사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응답 비율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이 여성보다 남한에서의 학력 취득 비율이 더 높고 이것이 경제 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실태조사 결과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남성들이 정착 초기 미래 진로 계획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남한에서의 첫 일자리를 그만둘 때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더 투자하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일을 그만둠으로써 경력 단절이 생기고 교육이나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착 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별다른 기술이 없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흘러도 경력이 인정되거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노동 환경인 경우가 많다. 정착 초기에 다양한 직업 훈련이나 정규 교육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는 직업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뒤로 미루게 된다.

(왜 대학을 갈 생각은 안 했어요?) 엄마 모셔온다고 처음에 그랬었죠. 대학가면 돈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중략]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대학을 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 또 애가 있어가지고. (웃음)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쉽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략] 지금 생각에는 내 대에는 어차피 안 된 거, 아들 대에는 내가 잘 해주겠다 하는 생각이……. 내가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았으니까 내가 뭐 4대에도 애가 뭐 그때는 17이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라도……. 40까지는 진짜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만 잘 키워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례 2, 여성, 20대>

(그래도 교육 같은 것 받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좋은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애를 들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애 생기기 전에 할 수 있잖아요.) 그 때 당시에

는, 돈이……. 우리 신랑이 중국에서 들어와야 하고, 애들이 둘은 중국에서 낳았어요. 개네가 호적이 없이 살았거든. 돈 빨리 벌어서 돈 주고 애들 호적을 만들어야 하니까, 돈 벌기 급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런 교육 받고 이런 건 꿈도 못 꿔고. <사례7, 여성, 40대>

처음에는 공부할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서는 다 아시잖아요. 한번 대학을 갔다가 온 사람들은 다시 결혼한 다음에 대학을 간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도 혼자라도 공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기는 교육이 많이 발전해 있으니, 따로 대학을 간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고, 그냥 오로지 돈 벌 생각만... 빨리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야지만... 그런데 국정원에서 하나원에서 갇혀 있었고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 집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돈을 벌려고 버릇시장부터 찾았지요. 그래서 찾은 직장이 먼저 알바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례 9, 여성, 40대>

또한 하나원 퇴소 후 정착지에 진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초기 1~2년 생활하다 결혼, 출산을 하게 되면 보호기간 5년이 지나거나 대학 진학 지원 연령인 35세가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금방 나왔을 때는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금방 나와서 애를 낳다보니 저희가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기록은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래됐고,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계속 한두 명씩 오니까 그 사람한테 신경 쓰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례 4, 30대, 여성>

(오히려 여자분들은 출산, 초기 정착이 5년이라고 하지만 앞에 한 2~3년은 임신하고 애기 낳고 그러면은 사실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네요?) 네. 그때부터 많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애도 낳고 자리 잡았으니까 근데 그게 없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는 거니까. <사례 5, 30대, 여성>

정착 초기에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고 아이를 키우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생각하는 시점이 이미 거주지 보호기간이 거의 끝나가거나 지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자원을 취득하지 못하면서, 진입 초기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행복통장, 취업장려금 제도 등 취업 지원 제도에서 임신, 출산을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 나. 직업교육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지원 제도 활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2014년 남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23,14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2,777명의 응답을 분석한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4%로 받았다는 응답 3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직업훈련 참여 및 직업훈련 장려금 수령 여부

구분	사례수	훈련 참여		훈련 불참여		장려금 수령		장려금 미수령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2,777	4675	36.6	8,102	63.4	3,314	25.9	9,318	72.9	145	1.1	
성별	남성	3,239	940	29.0	2,299	71.0	611	18.9	2,580	79.7	48	1.5
	여성	9,538	3735	39.2	5,803	60.8	2,703	28.3	6,738	70.6	97	1.0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410, p. 415.

연령별로 살펴보면 직업훈련을 받은 적 없는 경우는 15~19세가 96.5%, 20대가 78.3%로 학업 중이거나 60대 이상 84.4%로 직업훈련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비율은 30대(32.7%)와 40대(31.0%)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훈련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이 39.2%로 남성 29.0%보다 많고 장려금 수령도 여성이 28.3%, 남성이 18.9%로 여성의 수령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 참여와 장려금 수령 모두 약 10% 차이로 여성이 더 많다.

그런데 취업 장려금 수령 여부를 살펴보면, 수령했다는 응답이 여성 31.2%, 남성 28.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4-18〉 취업 장려금 수령 여부

구분	사례수	장려금 수령		장려금 미수령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12,777	3938	30.6	8116	63.5	763	6.0	
성별	남성	3,239	923	28.5	2112	65.2	204	6.3
	여성	9,538	2975	31.2	6004	62.9	559	5.9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457.

〈표 4-19〉 취업 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

구분	사례수	취업한 적 없다		취업한 적은 있으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가입 후 6개월이 안되었다		6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하기 어려웠다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을 꺼려했다		기타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8116	2951	36.4	2196	27.1	577	7.1	315	3.9	75	0.9	1136	14.0	866	110.7	
성별	남성	2112	691	32.7	480	22.7	154	7.3	90	4.3	27	1.3	432	20.5	238	11.3
	여성	6004	2260	37.6	1716	28.6	423	7.0	225	3.7	48	0.8	704	11.7	628	10.5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460.

취업 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취업한 적 없다’, ‘취업한 적은 있으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가장 많은데, 두 응답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 비율이 높다.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한 적 없는 경우가 더 많고,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진 적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여성이 34.9%, 남성이 27.1%로 여성이 취득한 경우가 더 많은데, 자격증 취득 분야 근무 경험은 남성이 45.3%로 여성 40.2%보다 높다.

〈표 4-20〉 자격증 취득 여부

구분	사례수	자격증 취득함		자격증 취득하지 않음		
		명	%	명	%	
전체	12,777	4211	33.0	8566	67.0	
성별	남성	3,239	879	27.1	2360	72.9
	여성	9,538	3332	34.9	6206	65.1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434.

〈표 4-21〉 자격증 취득 분야 근무 경험

구분	사례수	일한 적 있음 (또는 일하고 있음)		일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4,211	1736	41.2	2363	56.1	112	2.7	
성별	남성	879	398	45.3	463	52.7	18	2.0
	여성	3,332	1338	40.2	1900	57.0	94	2.8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449.

자격증 취득 분야 종사 시간도 남성은 3년 이상이 46.5%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1년 미만이 32.9%로 가장 높았다.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종사한 기간은 남성(40.1개월), 40대(31.6개월) 및 50대(36.4개월), 서울(31.8개월), 거주기간이 길수록(10년 이상: 49.5개월), 재북학력 전문학교 졸업(32.2개월) 및 대학교 졸업 이상(38.2개월), 현재 취업자(30.9개월)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되었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450).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거나 자격증과 관련된 취업을 하는 비율은 낮다는 것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여성들의 취업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경제활동 실태에 대한 고려와 함께, 여성들의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과정과 이후 구직 및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였다’(32.1%), ‘자격증을 취득하였다’(28.4%), ‘직업 교육(훈련)을 받았다’(26.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별로 분리해서 보면,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부탁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고 자격증 취득(29.5%), 직업 교육(22.5%) 순이지만, 남성들은 직업 교육이 34.3%로 가장 높고 자격증 취득(26.2%), 일자리 부탁(23%) 순이었다.

〈표 4-22〉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 (중복응답)

구분	총 사례수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주변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였다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26	50	26.3	54	28.4	23	12.1	61	32.1	
성별	남자	72	21	34.4	16	26.2	10	16.4	14	23.0
	여자	154	29	22.5	38	29.5	13	10.1	47	36.4

구분	총 사례수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고용센터 등에서 취업상담을 받았다,		취업박람회나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않았다		기타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26	13	6.8	7	3.7	17	8.9	1	0.5	
성별	남자	72	2	3.3	3	4.9	5	8.2	1	1.6
	여자	154	11	8.5	4	3.1	12	9.3	0	0.0

또한 같은 4번째 순위이기는 하지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였다’는 항목에 남성은 16.4%, 여성은 10.1%가 표시했다.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교육,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자리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은 반면, 남성들은 기술 습득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접근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뭐,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전에 중국에 있을 때에는 기계 했는데, 여기서는……. 북한에 있을 때는 철도 했었고, 중국에 있을 때는 선반 했었거든요. 기계제인데, 여기 와서 선반 찾으려니까. 거기 선반하고 여기 선반하고 또 틀려요. (중략) 도면을 다 볼 줄 아니까. 도면은, 그 중국에 있을 적에 선반하니까 도면을 다 알잖아요. 선반 도면이……. 여기 도면은 이제 뭐 보기 그렇지만, 선반 도면은 보기가 까다로워요. 그런 도면을 봤으니까 여기는 도면이 크고 다 알겠더라고요. 사장도 거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도면 잘 보니까. <사례 16, 남성, 40대>

여자들은, 엘리베이터라는 게 솔직히 고층에 올라가서 설치하는 팀이 있고, 저층, 다 틀러

요. 그런데 기계 타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안전벨트 다 매고 장구 다 차고 들어가서, 여름엔 저거 되고 겨울엔 추위에 싸우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승강장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저거 되죠. <사례 14, 남성, 30대>

물론 북한이나 중국에서 습득한 기술, 경력이 현재 남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 마찬가지이다. <사례 16>도 건설현장 일용직, 장사 등 다양한 일을 하다가 현재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사례 14>는 2년 동안 일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은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들에게는 접근이 제한되는 일자리이다. 여성들이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거쳐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보호사 등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고 시간을 투자해야 관련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착 초기에 바로 일을 시작하다보니 직업 훈련을 받는 등의 준비 기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인맥을 통한 구직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반적인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직접 여기서 오면서 본인들이 뵈던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직접 주변에서 보신 분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해는 약간 있는데, 그 외 직업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시고……. 그냥 뭐 단순노무, 예를 들어서 생산직이면 생산직,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하시고……. 주변에 지인이 하시는 일 아니고서는 직접 체험해 보실 기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 4, 고용지원센터 상담사>

그렇지요, 거의 여자들은 사무직을 원하지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을 의약품회사 사무직에 취업을 시켰는데, 저는 그 분의 장점을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부풀려서 취업을 시켰는데, 사무실에서 그 분의 장점을 보고 그 회사에 취업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그 다음 날엔 전화가 와서, 그분에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이 분이 너무 성실해서 이 분을 쓰고 싶은데, 기본적인 타이핑도 배우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쓸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분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해고를 했어요. <전문가 1, 전문 상담사>

많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 사무직을 원하지만,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직업 능력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다양한 직업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북한 사람들은 그래요... 외래어가 많고, 이야기만 듣고 가보지도 않고 하면 이게 상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것을 좀 돕겠으면, 직접 탈북자들의 따로 취업성공 패키지가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실제 아 자기가 말만 듣고는, 그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9, 여성, 40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원에서도 현장 체험 학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일을 해 볼 수 있도록 고용주와 취업자 모두를 지원하는 단기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체험 중심 직업 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질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 직업 훈련 참여 여부와는 차이가 있다.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 훈련 참여율과 장려금 수령 비율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직업 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되거나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는 경향은 여성들에게서 더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 직업 훈련 참여는 더 많은 것이다. 여기에는 직업 훈련 수당이라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와서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서, 그 때 직업훈련하면 직업훈련수당 주고 자격증 따면 자격 취득수당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그거여서.. 금방.. 금방 바로 한 달 안 되서 직업훈련신청을 했는데.. <사례3, 30대, 여성>

그 아카데미를 다니게 되었어요. 거기에 다녔는데, 사실은 그 때도 뭐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교통비 오 만원 주는 것을 받으려고 다녔어요. (중략) 그러다가 안 되겠다하고, 정부에서 하는 직업 컴퓨터 학원을 좀 알아보자 해서, 탈북자들이 하는 데는 좀 싸잖아요.

그게 혜택도 있고, 그게 단기도 있고 4개월 동안, 그거를 딱 일 년을 다니고, 4개월 동안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니면서 내가 느낀 것이, 그래 사람이 배우면서 몸이 조금은 쉬잖아요. 한쪽에서 배우고 또 수당이 나오니까, 그것은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200만 원 정도 수당이 나오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 9, 여성, 40대>

정착 초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로 공통적으로는 컴퓨터와 문서작성, 여성들은 회계, 남성들은 건설 기술 등을 배우는 학원에 다닌다. 이때의 직업 훈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직업 능력을 키우면서 남한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직업 훈련 수당과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남한 사회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활용하는 지원 제도이다.

처음에 와가지고, 12년도에 왔고, 나가서 생활하는 건 13년도부터. 13년도 그때는 그저 우리 수급비 받으며 학원도 좀 다니며 면허증도 좀 따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 노가다 일을 좀 하다가……. (중략) (어떤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받으셨던 거예요?) 자격증은 제가 운전면허 자격증 하나 따고요. 컴퓨터학원 다니다가 그 수료만 했어요. 컴퓨터학원은 한글이나 뭐 이런 거 하등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한글이나 전문 컴퓨터나 배웠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지식이 좀 미약하니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건설장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건설 취득 자격증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도 가서 교육도 받았겠고……. 네 시간을 받아서 그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했죠. <사례 14, 남성, 30대>

직업훈련은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기에는 남한 사람들을 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단독 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건 제가 많이 부담되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북한에서 저는 노어를 배웠고, 영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분들하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단독 반을 찾아봤는데 일단 서울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잘 된 케이스예요. 내가 그런 단독 반을 찾았으니까 내가 편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례 10, 여성, 40대>

직업 훈련 수당과 장려금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한사회 탐색을 위한 여유를 갖고 기초적인 직업 능력을 키우는 것은 정착 초기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에게는 직업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신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로 통합 지원되는데, 이로 인한 변화와 그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받는 직업 훈련은 정착과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가 정착 초기에 직업 훈련 장려금을 받기 위해 다니는 컴퓨터 학원 수강 등의 기초적인 직업 훈련이라면, 두 번째는 남한 입국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 받는 직업 훈련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못 모셔오고 그러니까, 항상 그쪽 생각 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진짜 엄마를 모셔 와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중략) 돈이 있어야 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할 나이도 있는데……. 대학교는 못 가더라도 간호학원 같은 거라도, 자격증 따서……. 그렇게 너무도 막……. 제가 서빙 같은 것도 재미있기는 한데, 거기도 깔끔하기는 하니까 재미있기는 한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릴 때 하기는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하기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나도 나이 드신 분들 서빙 하는 거 보기 안 좋거든요. 저는 어리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무 일이나 해도 괜찮은……. 앞으로의 직업 때문에도 지금……. 저 교육 받고 있어요, 간호……. 지금……. <사례 2, 여성, 20대>

<사례 2>는 하나원 퇴소 후 정착지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일을 시작했다. 브로커비를 주고, 생활비를 벌어야하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 와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을 지속하다가, 입국한 지 5년이 되는 해가 되어야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때 많이 찾는 직업 훈련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접하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 그에 맞는 전문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다. 어느 정도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생겼을 때,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진로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그 하는 게 지금 그거 교육받고 있어요. 25일날 이제 카드 나오면, 26일날부터 신촌에 있는 학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간호학원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의 직업 때문에. 30~40대, 그러니까 40대까지도 내가 서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북한 사람들이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제일 쉬운 게 서빙이지, 다른 건 힘들어요. 솔직히. (중략) 그거를 상담 받는 것도, 과연 내가 그 공부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다 상담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 앞으로 직업 그런 거에 관한 거 시청하는 거예요. 워크넷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사례 2, 여성, 20대>

취업성공패키지를 지금……. 올해 2월달에 받았나? 네. 2월달에 받고, 3월에 끝났죠.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 취업패키지라는게 1년 동안 지금, 그 취업을 교육하고, 또 취업 직접적으로 연계해달라고 하면 연계해주고 이러잖아요. 그 기간에, 지금 그 기간 중에 소개해 줘서, 소개 받아서 지금 회사 들어간 거죠. (중략) (도움이 되셨어요?) 그럼요. 취업하려면, 솔직히 말해 조금, 지금 40대 후반이니까 어디 가 회사 쪽으로 취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나이가 있고 하니깐. 거기서 또 연계도 해주고……. 자꾸 전화 오고……. 그 쪽에다가 등록 하면 또 전화 오잖아요. 회사 쪽에서 필요나 면접 같은 거……. 이력서 같은 거 올리면 회사 쪽에서 전화나 연락 오거든요? 유리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안 하기보다는 뭐……. 젊으면 몰라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사례 8, 여성, 40대>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직장 연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취업성공패키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 교육의 경우 직업 교육은 일정한 시기에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생애 주기와 정착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원 퇴소 직후와 정착지 진입 1~2년이 지난 시점, 3~5년이 지난 시점의 자기 인식과 미래 계획, 필요한 지원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직업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구직활동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에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본인들 네트워크 안에서 취업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비공식적인 일자리로, 공식적이지 않은 일자리로 가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 4, 여성, 고용지원센터 상담사>

짜라시 신문을 보았어요. 어디 뭐 보안 경찰 뭐 그런 담당 경찰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안타깝고 해결을 못하고 답답할 때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좋은데, 저는 그런 데를 전혀 안 갔어요. (왜요?) 그냥 별로 그 사람들한테 막 가서, 경찰이라면 막 싫잖아요. 뒤로 캐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느낌이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은 또 그런 오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니 죽기 살기로 두만강을 건너 왔는데, 다 사람이 하는 노릇인데 그거 하나 못할까 하는 그런 자부심은 또 있어요. <사례 9, 여성, 40대>

전문가와 취업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2.5%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공공지원 기관을 통해 구직을 하는 비율이 12.9%(취업자), 10.0%(과거 직장 경험), 20.9%(실업자)로 평균적으로 14.6%에 불과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표 4-23〉 취업 상담 경험

구분	총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48	24.0	145	72.5	7	3.5	
성별	남자	62	8	12.9	51	82.3	3	4.8
	여자	138	40	29.0	94	68.1	4	2.9

지역적응센터에 남북하나재단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취업, 의료, 심리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착 취업분야 전문상담사들은 구직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공지원 기관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공공지원 기관에서 연결해주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다보니, 노동력이 부족한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주로 연결된다.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굳이 공공지원 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원하는 사람은 급여가 높고 뭐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뽕뽕하게 갖춘 사람을 원하고... 이게 뭐 그 삼박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면서 조금 실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한이탈 주민을 받겠다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저임금 회사들이더라구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들, 저임금회사들 그런 회사들에서 어떤 정부지원을 바라고 북한이탈 주민들의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회사들이 있고, 조금 중견기업들이나 조금 탄탄한 회사들은 북한이탈 주민을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1, 여성, 전문상담사>

눈높이가 생각만큼 그렇게 낮지는 않으시거든요. (중략)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의 사실, 저희 최저임금 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일자리인데 그런 걸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면 눈높이도 맞지 않고, 사실상..... <전문가 4, 여성, 고용지원센터 상담사>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차별이다.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를 안했어요. 거기에 안 적고.. 뭐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짝 적었는데.. 그 공백이 비잖아요. 어디서 경력이라는 거를 제가 꾸며 낼 수 없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죠. 엄마 아빠가 가게 하나니까 그냥 가게 도왔다.. 꼼꼼히 물으시더라고요. 그 면접관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 정말 호락호락할 줄 알았는데.. 꼼꼼히 묻더라고요. 무슨 가게냐, 어디서 했냐 막 이런 거.. 그러다가 말투가 좀 차이니까 물어보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왔고, 그걸 쓰지 않았다고했더니.. 또 이렇게 걸더라고요. 우리는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실하고.. 뭐 그런 거를 본다.. 인성을 본다.. 그런데 뭐 거짓말 했다.. 뭐 이런 거를.. 사실 뭐 거짓말 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이력서를 북한에서 왔다고 까서 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면접까지 오라고 늘.. 면접은 항상 먹혔거든요. 근데 면접조차도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좌절했어요. 아... 자격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되겠구나.. <사례 3, 30대, 여성>

<사례 3>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다 경력을 허위로 이야기해 문제가 된 이후, 구직 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밝히자 면접까지도 가지 못하는 경험을 하며 좌절감을 느꼈다고 한다.

(어떻게 여기 일자리 구한 거예요?) 저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많이 올렸어요. (근데 시내 씨는 알바천국 말고 워크넷이나 하나재단, 이런 쪽은 잘 안 찾아봐요?) 네. 사실 그쪽으로는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제가 편견이

아직까지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지원을 하면은 안 받아주는 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심지어는 이력서를 넣고 북한 사람인 걸 모르고 했다가, 제가 이제 전화로 면접 보러 오기 전날에 전화를 했었어요. 사실 제가 북쪽에서 왔는데 괜찮냐고. 이러니까 한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신대요. 그런데 세 시간 있다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아직 받아 본 역사도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밝히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례 1, 20대, 여성>

<사례 1>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지원을 할 때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접 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견 없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면접을 보고난 후에야 자신이 북한에서 왔음을 알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공지원 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을 쓰지, 북한 사람들을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요? 면접 보는 회사에서요?) 면접 보는 회사에서는 안하는데, 상담해주고 취업 알선 해주는 곳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잘 안 쓰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이러니까. <사례5, 30대, 여성>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딱 \*\*처럼 이 시점에서 많이 흔들린 것처럼.. 아.. 이게 주변은 다 취직하고 있고.. 혼자서 지금 유학 준비한다고 하는데 돈도 없고 해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한.. 60개 기업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다 떨어졌죠. (어디에서 떨어져요. 서류에서요? 아니면) 서류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면접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북한.. 면접 볼 때는 이제.. 저는 북한.. 그 공백에 대해서 설명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사례 12, 남성, 20대>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낯설어서, 또는 같이 일하면서 겪은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생긴다. 그러다 보니 전문상담사나 취업상담사들은 고용주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북한이탈주민과 원하는 회사와 면접을 갔을 때, 대표나 사장님에게 그런 단기 연수제를 상의를 합니다. 그냥 노라고 하세요. 조금 의논을 하고, 연락을 하면 좋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북한이탈 주민도 처음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로 어떤 직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을까 봐 갈등 같은 것이 있을까 봐 채용을 못하

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취업이 정말 어려워요. <전문가 1, 여성, 전문상담사>

사장님들도 이제 우리가 알선을 해서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이지 못 하고, 신용적인 면에서도 약속 같은 걸 안 지킨다든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고, 단절하고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도 너무 난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세요. (중략) 이제 그게 이제 자기만 안 좋게 이미지를 가졌으면 되는데, 주변으로 퍼지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 채용해 봤는데 이렇더라. 이 사람은 채용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말 듣고, 아 그렇구나, 개네들은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크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전문가 2, 여성, 전문상담사>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사회생활에서의 관계 맺기에 익숙하지 않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등의 행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용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감수성, 태도, 가치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 2. 경제활동

### 가. 임금 및 소득 수준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비율이 남성 60.3%, 여성 47.2%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4-24〉 현재 경제활동 상태

구분	사례수	경제활동 (취업자)		경제활동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판별불가		
		명	%	명	%	명	%	명	%	
전체	12,777	6,459	50.6	440	3.4	5,586	43.7	292	2.3	
성별	남성	3,239	1,953	60.3	119	3.7	1,117	34.5	50	1.5
	여성	9,538	4,506	47.2	321	3.4	4,469	46.9	242	2.5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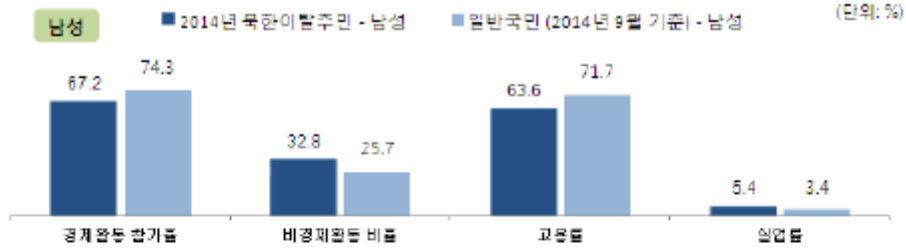
판별불가를 제외한 전체응답자 대비 경제활동인구로 산출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여성이 51.9%, 남성이 65.0%로 남성이 13.1% 더 높고, 고용률도 남성이 12.7% 더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이 여성보다 더 활발한 것이다.

〈표 4-25〉 2014년 성별 경제활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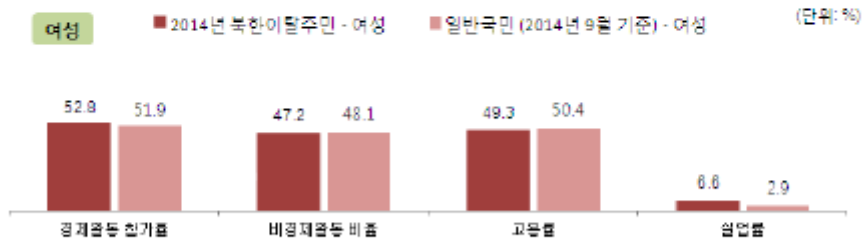
구분	명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인구	6,899	2,072	4,827	-	-	-
(취업자)	6,459	1,953	4,506	-	-	-
(실업자)	440	119	321	-	-	-
비경제활동인구	5,586	1,117	4,469	-	-	-
판별불가	292	50	242	-	-	-
경제활동 참가율	-	-	-	55.3	6.0	51.9
비경제활동 비율	-	-	-	44.7	35.0	48.1
고용률	-	-	-	51.7	61.2	48.5
실업률	-	-	-	6.4	5.7	6.7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257.

그런데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 7.1%, 고용률은 8.1% 더 낮게 나타나 꽤 큰 차이가 있는데 비해, 여성은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은 0.9%, 고용률은 1.1% 낮아 수 치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III-6-7] 2014년 일반국민 대비 성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 - 남성



[그림 III-6-8] 2014년 일반국민 대비 성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 - 여성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교 시 활용한 본 조사의 수치는 모집단 크기만큼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주) 일반국민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청 2014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참조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259.

[그림 4-1] 2014년 일반국민 대비 성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북한이탈주민 남성보다 10% 이상 낮지만 일반국민 여성보다는 1% 정도 낮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에 더해 ‘여성’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도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150만 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 임금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2배 더 많고(여성 77.7%, 남성 28.8%), 15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비율은 남성이 3배가량 더 많다(여성 21.7%, 남성 60.3%).

〈표 4-26〉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 (주업 및 부업 포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5,792	1,720	4,072	18	877	1,419	2,367	898	213	
50만원 이하	명	345	65	280	8	84	62	120	45	26
	%	6.0	3.8	6.9	44.4	9.6	4.4	5.1	5.0	12.2
51-100만원	명	1011	113	898	2	136	211	417	175	70
	%	17.5	6.6	22.1	11.1	15.5	14.9	17.6	19.5	32.9
101-150만원	명	2472	488	1984	5	342	612	1057	374	82
	%	42.7	28.4	48.7	27.8	39.0	43.1	44.7	41.6	38.5
151-200만원	명	1405	657	748	3	238	375	551	219	19
	%	24.3	38.2	18.4	16.7	27.1	26.4	23.3	24.4	8.9
201-300만원	명	451	339	112	0	65	120	185	71	10
	%	7.8	19.7	2.8	0.0	7.4	8.5	7.8	7.9	4.7
301만원 이상	명	61	42	19	0	7	26	19	8	1
	%	1.1	2.4	0.5	0.0	0.8	1.8	0.8	0.9	0.5
모름/무응답	명	47	16	31	0	5	13	18	6	5
	%	0.8	0.9	0.8	0.0	0.6	0.9	0.8	0.7	2.3
평균	만원	145.2	180.4	130.3	85.9	143.1	152.7	145.1	144.3	112.7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338-339.

월평균 임금의 평균값으로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30.3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남성 180.4만원의 72% 수준이다. 이 역시 일반국민 월평균 임금의 성별 차이와 유사하다. 일반국민의 월평균 임금은 2,753,757원으로 북한이탈주민보다 훨씬 높지만, 일반국민 여성의 월평균 임금(2,091,743원)은 남성(3,122,474원)의 67% 수준이다. 남성의 임금이 더 높은 한국사회의 근로 환경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열악한 경제 상태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통한 임금에만 의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기보다 자녀를 키우며 생계급여를 받



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인 437,454원, 2인 744,855원, 3인 963,582원으로 급여 수급 기준에 맞추는 정도로 일을 하거나 비공식으로 일을 하여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업을 해도 150만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낮고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해줄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돈은 많이 모았어요?) 아니요. (왜?) 나가는 돈이 많아요. (뭐가 있었는데?) 엄마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중략) 저 그때 사무실 갈 때 130만원 받았는데 저축 못 해요. 용돈도 빠듯한데 저금할 생각도 못 하죠. <사례 1, 여성, 20대>

<사례 1>은 정착지에 진입하자마자 일을 구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생활비도 써야하고 북한에 보내는 돈도 있다 보니 저축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10만 원은 저축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활용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정착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유형을 살펴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다. 여성은 제조업(28.6%)과 숙박 및 음식점업(21.6%) 종사 비율이 높고, 남성은 제조업(36.8%)과 건설 및 운수업(20.5%) 종사 비율이 높다. 그런데 산업별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사업 유형인 제조업에서 남성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2,673,456원이고 여성은 1,833,794로 같은 업종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보다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 및 운수업의 월평균 정액급여액이 더 높다. 전반적인 여성의 저임금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의지와 자립·자활 동기 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추측된다.

〈표 4-27〉 북한이탈주민 산업별 근로현황 및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

산업	남성			여성		
	취업자	비율	월평균 정액급여액	취업자	비율	월평균 정액급여액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5	3.8	2,353,877	212	4.7	1,389,489
부동산 및 임대업	1	0.1	2,102,342	15	0.3	1,401,450
숙박 및 음식점업	74	3.8	1,899,714	975	21.6	1,443,016
사업시설관리 및 산업지원서비스	141	7.2	2,474,793	283	6.3	1,753,686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32	1.6	2,482,725	164	3.6	1,751,112
제조업	718	36.8	2,673,456	1,288	28.6	1,833,794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43	2.2	3,299,255	422	9.4	1,852,434
농업 및 어업	46	2.4	2,758,757	67	1.5	1,891,259
도소매 및 유통업	172	8.8	2,826,926	488	10.8	1,891,825
광업	8	0.4	2,754,599	2	0.0	1,912,383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업	32	1.6	2,502,129	70	1.6	1,927,498
건설 및 운수업	401	20.5	2,894,615(건설) 2,226,927(운수)	91	2.0	2,060,334(건설) 2,063,384(운수)
교육 서비스업	27	1.4	3,781,085	142	3.2	2,385,962
출판 및 영상사업	15	0.8	3,495,412	22	0.5	2,502,601
전문(자연/사회)과학 및 기술서비스	45	2.3	3,727,295	43	1.0	2,527,696
전기/가스/수도사업	54	2.8	3,943,543	8	0.2	2,724,384
금융 및 보험업	6	0.3	4,305,550	53	1.2	2,913,900
기타	31	1.6		93	2.1	
모름/무응답	32	1.6		68	1.5	
합계	1,953	100		4,506	100	

- ※ 주: 1.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액은 2014년 12월 기준임.  
2. 여성기준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액이 낮은 산업 순으로 나열하였음.
-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1월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실태조사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p. 36 재구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남성, 30대~50대, 경기 및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거주기간 3~5년 미만, 재북학력 중학교 졸업 및 전문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 15~19세 및 20대, 60대 이상, 서울, 거주기간 1~3년 미만, 재북학력 소학교 졸업 이하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30대, 10년 이상 거주, 재북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남한에서 전문대학 졸업 및 일반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종사상지위 상용직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남한에서의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일반대학교 졸업,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자립·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성별, 연령, 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학업 또는 노령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제한이 생기는 연령 변수를 제외하면, 성별과 학력이 주요한 변수로 남는다.

그런데 성별과 학력은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재북학력을 보면 남녀 모두 중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남성 50.4%, 여성 64.9%), 고등교육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성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비율(10.3%)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고, 남성은 대학교 졸업 이상(12.9%)이 두 번째로 많다. 남한 입국 후 취득 학력을 살펴봐도 남성보다 여성이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더 높고 남성은 일반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다.

〈표 4-28〉 남한 입국 후 취득 학력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사례 수		12,777	3,239	9,538
초등학교 졸업 이하	명	117	51	66
	%	0.9	1.6	0.7
중학교 졸업	명	352	166	186
	%	2.8	5.1	2.0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고등학교 졸업	명	1619	405	1214
	%	12.7	12.5	12.7
검정고시학원 재학/졸업	명	138	44	94
	%	1.1	1.4	1.0
대안학교 재학/졸업	명	199	83	116
	%	1.6	2.6	1.2
전문대학 졸업	명	233	68	165
	%	1.8	2.1	1.7
일반대학교 졸업	명	184	66	118
	%	1.4	2.0	1.2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교 졸업	명	198	20	178
	%	1.5	0.6	1.9
대학원 재학 이상	명	113	52	61
	%	0.9	1.6	0.6
남한재학 경험 무	명	9236	2195	7041
	%	72.3	67.8	73.8
학력판별 불가	명	52	10	42
	%	0.4	0.3	0.4
무응답	명	336	79	257
	%	2.6	2.4	2.7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118-119.

현재 다니는 학교 종류에 대한 응답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이 18.4%로 남성 9.9%보다 2배가량,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은 25.3%로 남성 5.3%보다 5배가량 더 많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보다 일반대학교 재학하는 비율이 더 높고(남성 32.5%, 여성 29.5%), 대학원 이상 재학하는 비율도 더 높다(남성 5.2%, 여성 3.1%).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년제 일반대학교와 대학원 이상에 재학하는 비율이 높고, 이는 취업에 있어서 남성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한에서 학력을 취득

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고, 모두가 남한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학력 취득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의 차이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들이 진학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 나. 근로 형태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지난 1주간 주로 활동한 일에 대해서 여성들이 ‘일하였음’(57.7%)이라는 응답 다음으로 많이 한 답변은 ‘심신장애(몸이 불편하여 취업이 어려움) 13.3%’와 ‘육아’(9.8%)였다. 그리고 주업에서의 주당 근로 시간을 물어보았을 때 4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 여성들의 경우 36-45시간 미만, 36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남성의 경우 45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자가 62.5%, 36-45시간미만이 27.0%, 36시간미만이 8.2%였으나, 여성은 45시간이 46.4%, 36-45시간미만 36.5%, 36시간미만 14.4%로 남성들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주업에서의 주당 근로 시간

구분	사례수	36시간 미만		36-45시간 미만		45시간 이상		모름/무응답 (일시휴직)		평균 시간	
		명	%	명	%	명	%	명	%		
전체	6,459	811	12.6	2173	33.6	3312	51.3	16.3	2.5	47.4	
성별	남성	1,593	160	8.2	528	27.0	1221	62.5	44	2.3	50.0
	여성	4,506	651	14.4	1645	36.5	2091	46.4	119	2.6	46.2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317.

〈표 4-30〉 평소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상위 7순위

(N=평소에도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624명,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사례수		624	93	531
건강	명	161	16	145
	%	25.8	17.2	27.3
정규근무 시간이 36시간 미만임	명	116	21	95
	%	18.6	22.6	17.9
육아	명	116	1	115
	%	18.6	1.1	21.7
본인이 원해서	명	63	13	50
	%	10.1	14.0	9.4
통학	명	54	16	38
	%	8.7	17.2	7.2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명	44	12	32
	%	7.1	12.9	6.0
가사	명	11	0	11
	%	1.8	0.0	2.1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323.

또한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 형태에 대해 평소에도 36시간미만으로 일한다는 응답이 여성 80.2%로 남성 59.6%보다 월등히 높았고, 그 이유로도 여성들은 ‘건강’(27.3%)과 ‘육아’(21.7%)를 꼽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문제는 여러 연구들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성인의 1일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량은 2,146 kcal, 59g으로 남한 성인의 1일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량 3,229 kcal, 59g에 비해 현저히 낮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를 일반국민과 비교해보면, 남성은 4.3cm, 여성은 2.9cm 키가 작고, 몸무게는 남성은 9.4kg, 여성은 3.8kg 가벼운 것으로 나타난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그리고 단일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탈북자 환자들을 진료한 결과 남한에 비해 결핵, B형 간염, C형 간염, 기생충 감염 유병률이 높다고 한다(안선영 외, 2015: 60-61).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환경이 북

한이탈주민들의 건강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조금 좀……. 나도 뭐 북한에서, 중국에서 올 때까지 몰랐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간이 나쁘다고, 만성 B형간염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피검사 계속 해요. 그런데 막 이상이 없다, 괜찮다, 술 먹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매운 거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 또 어찌나 많은지. 내가 그래. 에이씨, 사람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냥 먹고 싶을 땐 먹어요. <사례 7, 여성, 40대>

신장염, 뭐……. 약 먹는 거 많아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여기 와서부터 맨 처음부터 신경안정제……. 그 우울증 약을 먹고, 맨 처음부터 그거 먹고, 그거 떠는 거 있잖아요. 손발 떠는 거. 그거 약 먹고 신장도 안 좋아지고, 약 먹는 게 많아. 신장염도 걸리고. (중략) 이걸 수면제고, 그 전에 매일 수면제 먹고 잤어요. 이걸 안정제고, 갑자기 내가 떨리잖아요. 이러다가도 신경 바짝 되잖아요. 그럴 때 막 누굴 때리고 싶던가, 그 약을 먹으면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요. 심장이. 이거 먹으면 괜찮다니까.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증상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여기 오니까 병이 더 생겼다니까. 산에 가면 기분은 좋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환경 탓이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산에 가면 펄펄 난다니까요. <사례 11, 여성, 50대>

또한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외상,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 과정에서의 생활 스트레스 등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사례 11>은 북한에서 본 총살 장면 등이 자꾸 꿈에 나타나고 북한에 두고 온 딸 생각이 난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커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바빠.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엇인가 와서 나를 막 이렇게 찍어노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찍어도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문제 아니고, 정신 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한 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내가 갔더니 거기 앞이 멍……. 거기 플랜카드에 뭐, 우울증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 죽자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난데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짹 말씀했더니 지금 우울증이 왔는데 초기라, 초기예요 이러면서……. 우울증 심하게 오는 사람들이 약도 안 먹겠다 한대요. 약 거부반응 한대요. 근데 나는 약 먹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나아질 것 같다고, 일단 약물치료 해보자고 해서 약을 줘서 그걸 먹었는데, 그거 먹으니까 사람 완전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완전 녹초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잠만 자는 거야. 사람이 머저리 되겠다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딱 한 달만 약 먹고, 내가 내 정신 차려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절로 끊은 거지. 내 절로 끊고 많이 했어요. <사례 7, 4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의욕을 저하시킨다. 이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은 우울감을 강화시키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주변의 도움 없이는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및 근로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의 노동강도가 너무 세서 일을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노동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적인 체력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착지원의 첫 단계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 역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근로 형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주로 여성들이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 전일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애기가 워낙 어리니까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가 힘들죠. (그럼 보통 식당 같은 경우는 알바하시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 하셨어요?) 음, 어떤 때는 8시간 일하고, 어떤 때는 3시간 일하고, 5시간도 일하고……. (시급이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시급, 뭐 최저임금이죠 뭐. <사례 8, 여성, 40대>

제가 애가 있는 분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생산직 같은 것은 그러면 8시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고, 9시에 시작하는데도 있고 거리가 있으면, 그러면 집에서 8시 전에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해요. 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겠다. 그렇다고 아무리 아이돌보미가 있어도, 식전 아침에 가서 아이를 돌보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 1, 전문상담사>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아이를 돌봐줄 가족, 친척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다. 그런데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할 이용요금 때문이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제를 이용하면 최저 부담액이 1,625원이다. 이를 한 달 이용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적은 자기부담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경제적 수준을 고려



하여 초기 정착 5년 동안은 통일부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출근 전후 비는 시간을 채워줄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시간제 노동을 선택하게 되고, 임금도 낮고 고용도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은 숙련도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노동조건이 향상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생계급여 수급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임금이 높지도 않고, 건강상의 이유로 오래 일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육아로 인해 노동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같이 오셔가지고, 그럼 신랑분이 먼저 일을 시작하셨겠네요.) 그쵸, 금방 오자마자 임신되고 그레가지고 신랑이 처음에는 일을 안했어요. 생계비가 나오니까 3명이 같이 나왔으니까 혼인신고 하고 나니까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되면 시엄마가 세대주 되가지고 신랑이 일을 하면 생계비가 찢려요. 3명이 다 찢려요. 그레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냥 생계비를 유지하면서 그게 세 명이 백만 원돈 되는데 알바 식으로. <사례 4, 여성, 30대>

그러면 나 같은 수급자는 빼먹기는 편안하지. (아, 소득이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택한 거죠. 식당은 수급이 잡히잖아요. 월급도 그런데 이걸 수급이 안 잡혀요. 그 오야지한테 돈 들어와요. 그 회사에서. 그럼 거기서 돈을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사례 11, 여성, 5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해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생계비에 의존해서 생활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쩌면 생계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임금도 많지 않은데다가 양육을 도와줄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일제의 일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신랑 나가서 버는 14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은, 그 돈 가지고, 나도 지금 회사에서 100얼마야, 160인가, 그거 집세 나가고, 핸드폰비, 인터넷비, 개인 보험, 무슨 금, 무슨 금, 먹고 살

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 언니는 저축 30만원도 하잖아요. 저희는 저축 자체도 못 해요. 일전도 못 해요. <사례 7, 여성, 40대>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 7>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남편과 서류상 이혼하는 것을 택한다.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통해 가계를 분리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래야 남편과 자신의 소득이 분리되고 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낮은 임금의 직종이 많은 것은 취업 동기와 의지를 감소시킨다. 또한 육아가 개별 가정 및 여성의 부담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직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동강도를 투입할 수 없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아예 진입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으로의 유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입국 초기 5년 동안에 한해 취업을 통해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급여 수급을 보장해주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수준급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와 같이 중위소득의 40% 정도로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더라도 소득을 기준으로 50-100%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실있는 취업 준비와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기간도 조정해볼 만하다. 현재 생계급여 특례 지원기간은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5년 동안 특례 적용을 한다면 하나원 퇴소 이후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인해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여러 제반 여건들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직장 생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라고 나타났다.

〈표 4-31〉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구분	총 사례 수*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심하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어렵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		건강이 나빠서 일을 하기 힘들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일하는 방식이 북한과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다		일을 하기에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7	20	20.6	14	14.4	13	13.4	14	14.4	16	16.5	9	9.3	11	11.3	
성별	남자	29	6	20.7	6	20.7	0	0.0	1	3.4	5	17.2	7	24.1	4	13.8
	여자	68	14	20.6	8	11.8	13	19.1	13	19.1	11	16.2	2	2.9	7	10.3

\* 현재 일을 하는 경우에만 응답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심하다’가 20.6%가 가장 많았고,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가 16.5%, 직장 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응답과 건강이 나빠서 일을 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14.4%로 그 뒤를 이었다.

현실적으로……. 서로 좀 불만족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미스매칭된 건데……. 급여가 좋은 나쁜 소개를 해드려도 결과적으로는 서로 결과가 안 좋게 많이 끝났던 것 같아요. 불성실하다고 표현하고, 또 이제 그 구직자분 말을 들어보면 업체에서 좀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 4, 여성, 고용지원센터 상담사>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1년만 버티면 북한 사람들도 1년 버티면 취직을 잘 한거예요. 1년 버티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자들도 그렇고, 신랑쪽 보니까 남자들도 거기도 그렇더라구요. 1년을 버티지 못해가지고. <사례 4, 30대, 여성>

취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에는 외래어도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인식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

남한 사람들은 일하는 데가 기본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상관들한테 아부, 아침해서 내가 마음 편하게, 육체적으로 편하게 일해먹자, 이게 제일 첫째, 우선.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오직 순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막 이렇게 아부, 아침하고 커피

따라다가 막 드시오,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이거 하세요, 이러면 예. 진짜 북한에서 돌격대 시절처럼 무조건 가라, 직선 가라 그러면 직선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오직 내 앞의 길, 직선밖에 몰라.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시간 슬슬 때우다가 여섯시까지 퇴근하는데, 아 일곱시까지 하자 이러면 사람들이 저는 치워주세요, 이런 꼼수를 쓰는 거지. 남한 사람들은. 이런 꼼수를 써서, 그 다음에 상관관한테 아부, 아첨해서……. 선생님, 아~,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그런데 그런 걸 원래 관리자들한테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우린 그걸 따라 못 가니까 우린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어딜 가나 그래요. 아, 진짜 일 잘 한다 하는데, 애교가 없고……. 그런데 막 아부, 아첨하고 떨지를 못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딱 일하는데, 이 사람은 흔들흔들 놀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는 이만큼 일하고 똑같은 월급 타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안 그래요? 내가 열 박스 할 때, 쟤 한 박스 하는데……. 월급 똑같이 받잖아요. 이게 막 사람이 막 열이……, 짜증나고 그 사람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사례 7, 여성, 40대>

<사례 7>은 이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 다행히 본인과 가족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쉬고, 스스로를 돌보며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다. 여전히 직장 생활에서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무시’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견뎌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모순적인 어려움이 이야기된다. 하나는 건강상의 이유와 북한에서의 노동문화로 인해 남한의 노동강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나는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있을 때에 애를 금방 낳고, 산꼭대기에서 땅을 뒤지면서 농사를 하고 그래야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직장 출근하랴 농사지으랴 돼지 키우랴. 돼지 먹이 만들랴...새벽 세시에 일어나서... 그게 되겠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병만 남고, 그다음에 삼국을 통해서 오는데, 사람들의 정신적인 충격, 가족을 잃어서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또 중국에서 살면서 병을 만나고, 또 남편한테 주어 맞아서...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을 만나고 육체적으로 병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아프기는 해요...솔직히 내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의지로 깡다구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요...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들이 버티지 못하니까,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슬렁슬렁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종략) 그리고 또 뭐 직장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일은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그것을 일반 남한 사람들의 눈에 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꼴 보기 싫어해요.. <사례 9, 여성, 40대>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남북한의 노동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조직 문화, 인간관계 등에서의 미묘한 문화적 차이는 남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게 오해와 편견을 갖게 한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는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일하는 방식이 북한과 달라서 적응하기 어렵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심하다’(20.7%)와 ‘직장 내 인간관계가 어렵다’(20.7%)를 꼽았다. 여성들이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 다음으로 육아와 건강 문제를 선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남성분들의 경우는 아프셔서 퇴사한다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남성분들은 굉장히 급해요 성격이. 그리고 직설적이고, 좀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문화에 익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과 같은 조직문화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선배와 후배, 무슨 뭐 상급하고 하급 이런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전문가 1, 전문상담사>

차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걸 본인이 한두 번이라면 못 느낄지 모르지만, 자주 반복되면 이정도 보이면 사람인 이상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대안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그걸 헤쳐 나가야 되는데 남한 남성들)애들은 그 배운 게 배짱인 줄 알고, 주먹질……. 그 말로 긴 말이 필요 없고 나가서 곤두박질, 한 바퀴 돌려놓으면 그래야 속이, 내가 나은 줄로 생각한다. <사례 15, 40대, 남성>

북한과는 다른 남한의 조직문화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낯설게 다가온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북한에서는 폭력으로 해결하던 일들이 남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에 당황하게 된다. 또한 문화적 민감성이 부족하고 의사소통과 관계 맺기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 적응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성하고 남성이 구직 활동할 때 제한점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정말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사실, 적응력이 여성분들이 확실히 빠르시고요, 보면,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그럴까요? 문화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이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4, 여성, 고용지원센터 상담사>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특히 사회문

화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사회의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고 포용하되, 남한사회에서 중시되는 문화적 가치들을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교육기회 및 경력 단절의 문제이다. 출산 이후에도 육아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불안정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는 교육 기회 부족의 문제로, 첫 번째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남한에서 취득한 학력이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들의 경우 생활비 및 북한 송금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외에도 임신 및 출산, 육아로 인해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로, 북한에서의 영양부족, 관리되지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안 좋은 몸 상태가 탈북과정을 거치며 더 안 좋아지고, 남한에서의 정착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직장 내 조직문화 부적응의 문제이다. 이는 구직 과정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한다.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정착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에게서 더 크게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단계 설정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전망 없이 일을 시작하면서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착 초기부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중복적이고 복합적이다.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제3절. 사회문화 적응 경험

#### 1. 건강 및 사회문화적 적응

##### 가. 건강

앞의 2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근로형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에 대해 다루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고, 취업을 비롯해 사회문화적 적응 등 한국 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남한에 와서 아직 익숙해지지도 않은 입국 초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정착에 영향을 주었다.

저희 애기도 1월 달인데……. 음……. 저희 신랑은 일하느라고 안산 쪽에 있었던 말이에요. 저는 애기 데리고 집에 혼자 있고……. 애기 데리고 혼자 있는데, 그……. 왜요, 그 신랑이 주말에 오거든요? 주말에 오니까 겨울이라 밖에도 못 나가고……. 1월달에, 1월 첫날에 애기 낳았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뭘 생각이 나타나면……. 막 무섭더라고……. 우울증이 심해지는데, 저기서 애기 안고 뛰어내리면 어찌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막 무서운 거야. 나도 모르게 확 뛰어내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적응이 안 됐죠. (중략) 저희는 그냥 혼자니까……. 낮이고 밤이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그냥 멍뚱 멍뚱 앉아 있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 자신이 무서워보기는 그 때가 처음이에요. 또 애기까지 있는데……. 저기서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례 8, 여성, 40대>

반면, 남성들은 음주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음주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한국 사회 적응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의 문제와 함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질병들이 적응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음주량에 대한 응답에서 술을 마셔 본 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 음주 빈도가 ‘주 1-2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거의 매일’이 다음 순으로 높았다.

〈표 4-32〉 지난 1년 동안 음주량

(N=응답자 전체 12,777명)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사례수		12,777	3,239	9,538
월 1회 이하	명	1579	296	1283
	%	12.4	9.1	13.5
월 2~3회	명	1294	413	881
	%	10.1	12.8	9.2
주 1~2회	명	1335	642	693
	%	10.4	19.8	7.3
주 3~4회	명	543	375	168
	%	4.2	11.6	1.8
거의 매일	명	528	438	90
	%	4.1	13.5	0.9
과거에는 마셨지만 최근에는 마시지 않았다	명	1307	356	951
	%	10.2	11.0	10.0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	명	6140	710	5430
	%	48.1	21.9	56.9
모름/무응답	명	51	9	42
	%	0.4	0.3	0.4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 496.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도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음주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례 15>의 경우는 소주를 매일 한 두 병씩 마신다고 했다. 이 경우는 일이 힘들어서 마시게 되고, 술을 마셔야 잠이 온다고 하였다.

(술은?) 술은 마셔요. (얼마나 드세요?) 술은 한 두 병 마셔요. 하루에? 소주? 매일 드세요? 매일 저녁에.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술을? 아니. 주량이 어느 정도이신데요?) 주량은 기분 좋으면 한 4병 먹고……. 소주를?) 네 …… 소주 왜 이렇게 드세요? 두 병?) 일이라는 게……. 힘들어요. 혼자서 운전하고 혼자서 실으러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힘들어요. 술 한 잔 먹으면 뭐,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술 한 잔 먹으면 잠이 술술……. 일어나면 아침되고, 알람 나면 새벽 네 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술 그렇게 드시면, 싫어하지 않으세요?) 뭐, 싫어해도 뭐……. 술 때문에 싸우진 않으세요?) 계속 싸워요. <사례 15, 남성, 40대>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는 전문가 1의 경우도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외로움 때문에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전문가 1은 직접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남자 분들은 혼자다 보니까... 그 외로움에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북한의 생활 습성을 못 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날아가는 것... 헛된, 욕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한 방... 이런 거...그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타깝게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죄를 짓고... 그래서 저는 남자 분들은 그런 위주로 좀 교육을 해요...물론 힘들지요... 남자가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그렇지만 그것을 극복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북한의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또 누군가 인정을 해 주고, 또 결혼을 하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하고, 무엇이든지 본인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 1, 전문상담사>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음주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못한 측면이 있다. 음주는 알콜 중독이라는 중독의 문제라는 점에서 의학적으로나 심리상담적인 측면으로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콜 중독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독의 문제 중 하나가 마약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과 관련한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중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sup>14)</sup> 그리고 2010년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 밀반입, 판매, 투약, 사용 소지, 공범관계 등 마약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약에 연루되는 것은 이미 재북 당

14) 북한이탈주민의 수감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 수감자가 급증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129명남자 111명, 여자 18명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11년에는 51명남자 47명, 여자 4명이던 것이 2012년 68명남자 63명, 여자 3명), 2013년 87명남자 78명, 여자 9명), 2014년 99명남자 87명, 여자 12명), 2015년 112명남자 97명, 여자 15명), 2016년 129명으로 해마다 20%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수감자는 2011년 4명이던 것이 올해는 18명에 달해 5년 새 350% 급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고, 폭력, 사기횡령, 살인, 절도, 강도 등의 순이다.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증가세, 마약사범 최다”, 『중도일보』, 2016년 9월 21일자.

시부터 마약을 해 왔던 경험이 접근성을 높였고,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의 탈출구로서,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약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윤홍희, 2010). 특히 북한에서는 마약이 생존 수단인 장사의 주요한 품목이기도 했고, 뇌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견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과 마약에 대한 인식으로 하여금 북한을 떠난 후에도 마약 투약과 유통을 지속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독의 문제와 관련하여 알코올과 마약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지 않지만, 정신적인 건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건강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착 지원의 첫 단계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사회문화적 적응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제이다.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사회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서로 다른 문화와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위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노동문화의 차이로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문화 차이에 따른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탈북과 한국 입국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따른 트라우마와 가족 이산의 문제 등 역시 사회문화적 적응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한 사례들의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점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적응의 문제는 가족 문화와 자녀 양육, 남편과의 관계

등에서 나타났다. <사례 3>의 경우 남한 남성과 결혼하였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이는 부모, 형제 사이의 친밀함이 낮설기도 했고, 불편하다고 하였다. 특히 <사례 3>은 부모와 헤어져 한국에 혼자 온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보이는 부모-자식 사이의 친밀함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는 가족 내 문화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가족 이산이라는 상처가 시댁 문화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3>과 같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상황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가족들 간의 화목한 모습을 보일 때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더욱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같이 결혼해서 사는 데는 불편한 거 없어요? 남한 사람이랑?) 불편하죠. (어떤 점이 불편한 데..?) 시댁문화 뭐 이런 거.. (시부모님 계세요?) 네. 같이 살진 않고? 같이 안 살고.. (음.. 시댁 문화가 어떤 게 가장 안 맞아요?) 전 부치고.. (거기도 명절은 쇠잖아요) 명절 그렇게 안 쇠요. 교수님. 그냥 간단하게 생선 굽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먹을 거 안 먹을 거 뭐 자아아안뜩 하고.. 그 찌구리고 앉아서 다 같이 부쳐야 되는 그런 것도 짜증이 나고.. 형제들이 모여서 복닥복닥하면서 막 웃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저에게는 위압감을 조성하고, 그런 분위기가 저를 굉장히 화나게 해요. 선생님.. (왜?) 심술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 부모하고 떨어져서 나는 이렇게 고통 받고 있고.. 명절이면 그게 생각이 나는데.. 니들은 히히호호 그렇게 즐거우면.. 니들한테 즐거운 거지 나한테 즐거운 거 아니다. 시댁은 시댁이지 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례 3, 여성, 30대>

그리고 <사례 3>의 경우는 남편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였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 출신 남편이 북한에서 온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매우 불만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 출신 사람에 대한 무시는 가족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다른 공간에서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문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근데 싸우면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이런 이런 게 부족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짜증이 난다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런 건지.. 하.. “당신이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서..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려고.. “나니까 이런 말 해준다”고.. 완전 돌아요. “나 바보 아니라고.. 얘기 하지마. 나 당신보다 충분히 인생 잘 알거든.” 그런데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냥 햇병아리니까.. 너 뭐 모르니까 “그냥 내 의견 따라. 너는 뭐 모르니까.. 뭐.. 전셋집 얻을 때도 내가 이 집 선택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내 말

따라. 넌 뭘 몰라. 니가 뭘 알아.” 이런 거.. (무시 당하는 기분이..) 알아서가 아니고.. 저도 충분히 잘 살 적응을 하고.. 여기 와 6년 됐지만.. 그 또래나 그 6년이라고 하는.. 6년 차인 또래들보다 굉장 잘 적응하고 좀 빠릿빠릿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훨씬 못하는 사람도 잘 사는데.. 뭐 자존심 개똥만큼.. 개똥만큼도 없고.. 뭐.. 그러는데..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 이려고 담배 피러 나가요. 어이가 없고. 막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례 3, 여성, 30대>

<사례 3>은 한국 출신의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생겼다면, <사례 11>은 북한 출신 남편과의 갈등을 이야기하였다. <사례 11>의 경우는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며 음주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데 전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남편의 음주량과 빈도가 매우 많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의 경우는 예전에 중국에서 살 때는 큰 불만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례 11>의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사례 11>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주 6일을 일하는 입장에서 집안일을 돌보기에 너무 힘들었고, 원래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것은 무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남편이 돕지 않는 것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한국 출신 또는 중국 출신 남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자신의 남편과 비교가 되다 보니 더욱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말 안 들어서 술 밖에 안 먹어. 큰일났어. 일찍 들어와도 집 안 치워. 개망태기야.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러대요?) 응, 이집도 맨날 술병이야. 맨날 술이야. 집에 와서 좀 치우면 좋은데, 깨끗하게 한 번 쓸어주면 마누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먹고 살고, 환잔데..... 아프지도 않아요. (중략) 이 사람이 새벽에 나갔다가 어떨 때는 일찍 끝나고 집에 들어와요. 토요일날 놀고. 집은 너끈히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치워 주냐고. 북한 사람들 그게 탈이에요. 김치해도 나 혼자 해야 돼. 안 도와줘. 절대로. (중국 남자들은 잘 한다 그러던데요.) 네. 아이 뭐 음식도 할 줄 몰라. 뭐, 음식 있는 것도 안 찾아먹어. 냉장고에 곰팡이 쓰도록 있어. <사례 11, 여성, 50대>

이처럼 환경이 변한 만큼 의식이나 행동이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사례 9>는 초등학교에서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여러 학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 중국인 남편과 사는 학부모들을 보았을 때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

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사례 9>에 따르면 중국인 남편과 사는 여성들의 경우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남편하고 사는 학부모들이, 그런 가정의 가정폭력이 좀 많지요.. (그런 경우의 여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 중국 조선족 남자들은 여기 와서 중국에 있을 때보다 그 뭐지 권한이 여자보다 더 약해지는 거예요...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를 수밖에 없잖아요...여기서는 여자 목소리가 더 큰데...그러니까 아빠는 중국 조선족들은 여기 와서 한국말을 전혀 배우지를 못하더라고요...나는 배우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연변 말이 북한 말이 더 사투리가 심한 거예요..야 이 개새기 그냥 아이들한테 너무... 한 학부모는 조선족 동포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 교육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중략) 그런데 중국에서 살 때하고 한국에서 살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한국에서 일자리 어디서 얻겠어요, 아빠가 적응을 못하는데, 중국에서는 말이 다 통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여기 와서 제 직장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일용직 아니면 그냥 뭐 노가다 이런 것이니까...북한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은 그 남편들이 원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그냥 팔려가서 결혼한 것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홀로 결혼 하지 않고 온 사람들은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재보다 내가 이런 신세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더 좋은 조건으로...애가 딸린 여자가 중국 조선족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그래서 다른 데서 좋은 남자를 보고 막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면, 기가 눈이 감기고 막히잖아요...그런데서 자꾸 충돌이 생기고, 들어오면, 그 사투리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막 생기고, 엄마 목소리가 더 커요...같이 안 살고, 일용직이다가 보니까 멀리 나가서 사니까 한 삼 개월에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니까 그 정이 더 멀어지는 거지요... <사례 9, 여성, 40대>

<사례 7>의 경우도 중국인 출신 남편과 사는 경우였는데, 처음 정착할 당시 중국인 남편이 한국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하지 못할뿐더러 정착 과정에서 가정의 많은 일들을 자신이 책임져야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례 9>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남편의 문화나 인식, 태도가 자녀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만족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왔으나,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여성의 경우 만족도가 남성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적은 수치지만 30대 여성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 유무에 따라서는 취업을 한 여성의 경우가 더 불만족도가 높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한 여성의 불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 여겨진다.

〈표 4-33〉 배우자 만족도

구분		총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87	15	17.2	42	48.3	26	29.9	4	4.6	
성별	남자	23	7	30.4	12	52.2	4	17.4	0	0.0	
	여자	64	8	12.5	30	46.9	22	34.4	4	6.3	
연령	20대	남자	12	0	0.0	0	0.0	0	0.0	0	0.0
		여자	4	0	0.0	2	50.0	1	25.0	1	25.0
		합계	4	0	0.0	2	50.0	1	25.0	1	25.0
	30대	남자	4	3	75.0	1	25.0	0	0.0	0	0.0
		여자	13	2	15.4	4	30.8	6	46.2	1	7.7
		합계	17	5	29.4	5	29.4	6	35.3	1	5.9
	40대	남자	7	2	28.6	3	42.9	2	28.6	0	0.0
		여자	41	5	12.2	16	39.0	9	22.0	1	2.4
		합계	48	7	14.6	19	39.6	11	22.9	1	2.1
	50대	남자	10	1	10.0	7	70.0	2	20.0	0	0.0
		여자	9	1	11.1	4	44.4	3	33.3	1	11.1
		합계	19	2	10.5	11	57.9	5	26.3	1	5.3
	60대 이상	남자	1	1	100.0	0	0.0	0	0.0	0	0.0
		여자	1	0	0.0	1	100.0	0	0.0	0	0.0
		합계	2	1	50.0	1	50.0	0	0.0	0	0.0
무응답	남자	2	0	0.0	1	50.0	0	0.0	0	0.0	
	여자	6	0	0.0	3	50.0	3	50.0	0	0.0	
	합계	8	0	0.0	4	50.0	3	37.5	0	0.0	
취업 유무	취업	남자	18	5	27.8	10	55.6	3	16.7	0	0.0
		여자	24	4	16.7	13	54.2	15	62.5	2	8.3
	미취업	남자	42	9	21.4	23	54.8	18	42.9	2	4.8
		여자	5	2	40.0	2	40.0	1	20.0	0	0.0

심층면접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남편도 변하고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불만이고,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는 가족에 대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비율이 중국 출신인 경우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자녀양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해당한다. 그래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례 8>은 한국 출신 엄마들이 자녀 양육을 하는 방식에 많은 관심을 표출하였다. 자신의 자녀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 방식을 알고 자신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매우 안타까워했다. <사례 8>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의 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부모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우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이 경우는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 두려워 자녀에게도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방식도 자녀 교육이나 학부모들과 소통을 어렵게 하는데,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의 구별과 차별이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계층적 구별이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중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교육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엄마들은……. 글썄요.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그게 알고 싶어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 그걸 알아서 내가 애기한테 해야, 애기가 학교 가서 여느 애들과 똑같이 뒤처지지 않고 할 것 같은데, 그걸 모르니까……. 저는 집에서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데……. 으음……. (그 애기, 애기 친구 엄마들이랑은 잘 교류를 안 하세요?) 네. 교류 안 해요. (일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아님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글썄요.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류하기가 싫은데요? 그런데 그거 알려면 교류를 해야 알 수 있잖아요. (왜 교류하기 싫으세요?) 아니, 그런데 그게 더 조심스러운게……. 어……. 애기 엄마들이 만약에 재네 엄마 북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애기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냥 북한 사람이 아닌 척 하면서 만나려니까……. 내가 말이나 행동에서도 알릴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 어디서 오셨어요?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애기한테 뭘 영향이 갈까봐……. 또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주공아파트라……. 여기 7단지, 여기 지금 학교가 뭐, 4단지, 5단지, 6단지 애들이 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또 어떤 소문을 들은 거는 또 끼리끼리 논다고……. 8단지 애들 주공아파트라 못 사는 동네라고, 같이 놀지 말라고, 이러는 엄마들도 있대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례 8, 여성, 40대>

<사례 7>의 경우는 <사례 8>과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답답해하기도 했지만, 그 보다 자신의 자녀가 당한 왕따 경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사례 7>의 자녀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 진학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래서 학교를 딱 보냈더니, 학교에 보내놓고 내 마음이 놓여요? 학교를 매일 출근했어. 반에서 가니 계속 이려고 있어. 계속 이려고 있는 거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째가 가져왔을 때 1학년 됐고, 큰 애는 2학년 됐는데, 원래는 3학년 돼야 하는데 2학년 됐는데 아니 선생님이 자꾸 전화 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자꾸 애들 때린다. (중략) 애는 자기 댁에는 놀자고 이름은 모르고, 말은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때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선생님, 아무개가 날 때려요, 이렇게 이르니까, 선생님 그 당시 못 봤으니까, 그래? 근데 계속 애들이 때린다고 자기한테 말한대요. 아휴, 내가 그거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그리고 2학년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책가방 안에다가 쓰레기만 한 가방 채워 보낸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를 왕따시키는 거지. 중국에서 왔으니까 대화도 안 되지, 또 재 손해, 말도 안 해. 그걸 또 말도 서투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글도 쓸 줄 모르고 하니까 애들이 진짜 왕따 시킨 거지. 어느 날 보니까 책가방에 쓰레기, 곰팡이 쓴 게 책가방에 들고 온 거야. <사례 7, 여성, 40대>

<사례 7>과 같이 자녀가 중국 출생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국이 중국인 경우가 북한인 경우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출신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북한 출신 자녀들보다 적은 편이다. 이번 통일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정책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으나 북한 출신 자녀들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일차적 양육이 여성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학교 및 사회 적응의 문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맺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적응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4〉 제3국 탈북청소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학생수			
		초	중	고	계
2011	북한출생	435	275	363	1,073
	제3국 출생	585(57.4)	13(4.5)	10(2.7)	608(36.2)
	계	1,020	288	373	1,681
2012	북한출생	580	268	436	1,284
	제3국 출생	624(51.8)	83(23.6)	1(0.2)	708(32.5)
	계	1,204	351	437	1,992
2013	북한출생	532	270	380	1,182
	제3국 출생	627(54.1)	208(43.5)	5(1.3)	840(41.5)
	계	1,159	478	385	2,022
2014	북한출생	534	313	357	1,204
	제3국 출생	594(52.7)	371(54.2)	14(3.8)	979(44.8)
	계	1,128	684	371	2,183
2015	북한출생	541	344	341	1,226
	제3국 출생	683(55.8)	480(58.3)	86(20.1)	1,249(50.5)
	계	1,224	824	427	2,475

\* 주1: 교육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통계 자료(2015.4.1.기준)임.

\*\* 주2: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제3국 출생 자녀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 자료: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p. 46에서 재인용.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적응이 중요한 문제이면서, 여성들의 적응 속도에 비해 남성들의 적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 지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 북한이탈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적응을 잘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게.. 이상하게 그.. 같은.. 남한 땅에 한국 땅에 같이.. 같은 날에 왔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여자들이 빨리 한다는 게?) 네. 그..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래 좀.. 사투리를 쓰고 많이 했었는데.. 그 여자.. 같이 온 여자 그 기수.. 그분들은 시장에 나가서 밥도 먹고.. 밖에 나가서 하면 말이 툇이 바뀌고.. 진짜 한국 여자처럼.. 노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생리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뇌를 뜯어 봐야..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차이점이.. 여자들은 항상 말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별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혼자서 있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막 많아지고.. 그리고 사회에서 뭐 이런 여러 프로그램을 한다 해도 정착 가면 90%는 여자이고.. 혼자서 멍 때리다가 있고.. 그러니까 말한.. 자꾸 말하고, 자꾸 듣고, 보고, 이걸 느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사례 12, 남성, 20대>

<사례 12>의 경우 같은 날에 함께 한국에 왔어도 여성과 남성이 적응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말투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남한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여성들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해도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모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취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적응하는 것과는 이어지는데, <사례 13>이 느끼기에 고용주들도 남성 보다는 여성들을 더 선호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센스가 있고.. 이게 좀.. 뭐 어디 자리 소개 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인간관계도 남성보다 또 유연하게 잘 대처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센스가 있고.. 고집 안 피우고.. 자존심 안 세우고.. 네.. 그게 또 편하잖아요. 일하기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간호학과를 선택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연결되어 있고.<사례 13, 남성, 30대>

이러한 적응에서 성별 차이는 남성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남녀 관계에서도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여기게 하였다.

네.. 뭐가 있을까? 어쨌든 외모에 대한 거를 중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가 탈북자라고 밝혔고 그 친구도 또 이해했었는데.. 이제 뭐.. 친구를 소개하는.. 친구랑 같이 모이는 자리를 같이 가는 걸 좀 꺼려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 피하고..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12, 남성, 20대>

제가 한국... 부모라면 당연히..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비전도 없고.. 뭐 앞으로 뭐.. 솔직히 여기서 힘들게 자란.. 그 막.. 이런 살벌한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도 힘든데.. 저쪽에서 살다

가 여기 와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시집보내려면.. 부모가.. 5천만 중에 몇 프로나 되겠는지..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사례 13, 남성, 30대>

<사례 12>와 <사례 13>은 한국 출신의 여자친구를 만난 경험이 있는데 자신이 탈북자라고 밝혔음에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모임에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이나 주변의 시선들이 이들로 하여금 남한 출신 여성과 결혼하기에는 자신들의 조건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결혼 및 이성 교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여성 응답자 296명 중 11.4%가 ‘있다’고 하였고, 남성 응답자 104명의 16.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북한 출신이라는 차별이 여성 보다 남성에게 더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

이같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점에서도 나타난다.

북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괜찮아요. 여성적이고 가정적이고.. 정말.. 네.. 그런 여자들인데.. 중국을 걸쳐서 뭐 어디를 걸쳐서 오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막 돈에 대해서.. 명품에 대해서.. 오! 고향에 있던 여자애가 여기 왔는데 와.. 진짜 아닌 거예요.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생각 자체가.. 뇌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어요. 많이 와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저기서 착하게 살다가 여기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기서 착하게 살다가 또 힘들게.. 막.. 안 좋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달라요. 저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저기서 바로 온 친구들.. 하나원 나와서.. 만나보면 그.. 완전 진짜 와.. 여성이에요. 진짜.. 그게 어떤 거예요? ‘여성이에요’ 할 때?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들어주고.. 네.. 서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조금 조금 조금 한 몇 달 몇 달 지나게 되면 변하기 시작해요. 뭐.. ‘오빠 밥 사줘’, ‘나 어디 가는데 뭐 필요해’ 뭐.. 그 다음부터.. 좀 싫기 시작하죠. (제일 많이 변하는 게 경제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요구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여자들처럼 관계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게.. 저희.. 북한 여성들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유롭게.. 왜냐면.. 보이는 게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유혹되고.. 또 한 번씩 경험하고 나서.. ‘오. 괜찮네.’ 하고선 만나서 ‘오. 이 사람도 괜찮네.’ 하고.. 많이 변하는... 거죠. <사례 12, 20대, 남성>

(애기 엄마는 여기 와서 변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조금 변했죠. (어떤 점이 변했어요?) 뭐, 이제, 이전에는 엄청 순했었는데..... 요즘은 뭐 많이 변했죠. (중국에서는 순하셨어요?) 네. (여기 와서는 좀 세졌어요?) 네. 세졌죠.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뭐, 여기 어느

나라 오면 어느 나라 법 따라 배우라고, 여기 왔으니까 그대로 또 하니까. (중략) (애기 엄마도 순하고? 선생님은 여기 와서 변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변하신 것 같으세요?) 뭐, 나요? 나도 뭐 변했겠죠. 모르지만, 다른 사람 보면 변했다 그러죠. <사례 16, 40대, 남성>

<사례 12>와 <사례 16>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때는 ‘여성스럽고’, ‘순했던’ 여성들이 남한에 와서 ‘세지고’, 변한다는 것이었다. <사례 12>는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상하게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한다고 할 정도로 이들의 변화에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가는 과정에서 변해가는 북한이탈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현재 북한이탈여성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는 남한 사회에 자신들 보다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러움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윤리적 평가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이들을 만나는 전문상담사들도 느낀다고 하였다.

남자가 불쌍하고 북쪽에는 여자가 불쌍하대요. 반반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 한 젊은 남자가 얘기하다가 여기는 다 여자가 주도를 하고 북한에서는 심하게 여자가 다 손해를 보고……. 중간됐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 됐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북한 출신 남자들이 여기 와서 되게 박탈감이나 어려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감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통화한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도, 북한에서는 여자가 다 희생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남자가 다 이렇게 감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한심하다, 저기하다 이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같고…….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적응을 하는 거겠죠. <전문가 3, 전문상담사>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살던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평등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함께 온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 보다 빠르게 적응해가고, 심지어 자신들에 대한 불만들을 제기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직면한 현실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점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과 성인지 교육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그런 전문상담사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주변에서 이용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 상담이 미국식이라고……. 상담하는 방식들이……. 그 정신과 방식, 설문지, 여러 가지 설문지, 하나원에 있을 때에도 그거 받아보고 했는데, 질문 내용들이 탈북자를 향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정신체계를 뽑아서 이래 보던데……. 아, 이거 가지고 우리 속을 알아내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럼 속상하거나 답답하거나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대화를 해야 그걸 빨리 풀어내야 하는데, 그럴 상대가 안 돼요. 그 상담사가. (그럴 때 주로 어떤 분들하고?) 그건 지인들끼리.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례 15, 남성, 40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 차이의 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한 경우 지역적 응센터에서 취업을 제외하고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례 15>가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는데, 자신의 경험상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는 상담의 내용이나 방식이 자신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특수하다 보니 자신들을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사례 9>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는 데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용이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우자가 북한 출신인 경우 불만도 많지만 아무래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처지를 잘 이해해주는 점이 좋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상담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중요한 역량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전문상담사로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이들의 전문 상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제고하면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수혜 경험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수혜 경험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우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수혜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사례 수 200명 중 25.5%에 그

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30대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양성평등 교육 수혜 여부

			있다		없다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51	25.5	142	71.0	7	3.5	
성별	남자	62	14	22.6	46	74.2	2	3.2	
	여자	138	37	26.8	96	69.6	5	3.6	
연령	20대	남자	12	1	8.3	10	83.3	1	8.3
		여자	22	4	18.2	17	77.3	1	4.5
		합계	34	5	14.7	27	79.4	2	5.9
	30대	남자	13	3	23.1	10	76.9	0	0.0
		여자	28	6	21.4	22	78.6	0	0.0
		합계	41	9	22.0	32	78.0	0	0.0
	40대	남자	17	6	35.3	11	64.7	0	0.0
		여자	51	16	31.4	34	66.7	1	2.0
		합계	68	22	32.4	45	66.2	1	1.5
	50대	남자	16	4	25.0	11	68.8	1	6.3
		여자	20	4	20.0	14	70.0	2	10.0
		합계	36	8	22.2	25	69.4	3	8.3
	60대 이상	남자	2	0	0.0	2	100.0	0	0.0
		여자	2	0	0.0	2	100.0	0	0.0
		합계	4	0	0.0	4	100.0	0	0.0
	무응답	남자	2	0	0.0	2	100.0	0	0.0
		여자	15	7	46.7	7	46.7	1	6.7
		합계	17	7	41.2	9	52.9	1	5.9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 본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하나원’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이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36〉 양성평등 교육 기관

구분	총 사례 수	문항11-1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또는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교회		직장		기타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32	16.0	6	3.0	3	1.5	3	1.5	13	6.5	3	1.5	140	70.0	
성별	남자	62	12	19.4	2	3.2	0	0.0	0	0.0	1	1.6	1	1.6	46	74.2
	여자	138	20	14.5	4	2.9	3	2.2	3	2.2	12	8.7	2	1.4	94	68.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수혜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200명 중 ‘있다’가 16.5%로 매우 낮았고, 이 수치는 양성평등 교육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연령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4-37〉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수혜 경험

구분	총 사례 수	문항13							
		있다		없다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33	16.5	148	74.0	19	9.5		
성별	남자	62	12	19.4	44	71.0	6	9.7	
	여자	138	21	15.2	104	75.4	13	9.4	
연령	20대	남자	12	2	16.7	9	75.0	1	8.3
		여자	22	4	18.2	13	59.1	5	22.7
		합계	34	6	17.6	22	64.7	6	17.6
	30대	남자	13	2	15.4	9	69.2	2	15.4
		여자	28	5	17.9	23	82.1	0	0.0
		합계	41	7	17.1	32	78.0	2	4.9
	40대	남자	17	3	17.6	11	64.7	3	17.6
		여자	51	8	15.7	38	74.5	5	9.8
		합계	68	11	16.2	49	72.1	8	11.8

구분			총사례수	문항13					
				있다		없다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50대	남자	16	4	25.0	12	75.0	0	0.0	
	여자	20	1	5.0	17	85.0	2	10.0	
	합계	36	5	13.9	29	80.6	2	5.6	
60대 이상	남자	2	0	0.0	2	100.0	0	0.0	
	여자	2	0	0.0	2	100.0	0	0.0	
	합계	4	0	0.0	4	100.0	0	0.0	
무응답	남자	2	1	50.0	1	50.0	0	0.0	
	여자	15	3	20.0	11	73.3	1	6.7	
	합계	17	4	23.5	12	70.6	1	5.9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양성평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하나원’과 ‘직장’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었다. 연령별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4-38〉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기관

구분		총사례수	문항13-1(중복문항)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또는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교회		직장		기타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43	14	33.3	6	14.3	2	4.8	3	7.1	12	28.6	6	14.3
성별	남자	13	5	38.5	1	7.7	1	7.7	1	7.7	2	15.4	3	23.1
	여자	30	9	31.0	5	17.2	1	3.4	2	6.9	10	34.5	3	10.3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 입소하면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수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받은지 오래되었기 때문인 점도 원인이겠지만, 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심층면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 다라고 하거나 못 들어 봤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들어는 봤지만 특별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경우도 많았다.

(공무원이면 양성평등 교육받아보셨죠?) 그건 못 받아 받습니다. (성평등 교육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성교육은 하는데요. 성희롱 방지교육 이런거요. 그런데 성평등교육은 따로 안 받아요? 네 (하나원에서 안 받았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인권교육은 따로 받으셨나요?) 안 받았던 거 같아요. <사례 6, 여성, 30대>

(교육 중에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교육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아, 그건 못 들어봤는데. (하나원에서든 혹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별에 대한, 혹시 들으신 기억이?) 교육은 모르겠는데, 남자여자 차별, 남녀평등, 북한이 남녀평등이라고 여기도 그런가?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여기에서 그런 교육은 안 받으신 거죠? 네, 기억은 없는데, 받은 게 없는데 (직업에 관련된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받은 교육을 다 기억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살기 바빠 가지고. 기억이 남는 것은 하나원에서 나가면 돈에서 사기 맞지 마라, 이단에 빠지지 마라 그런 거 기억나요 <사례 4, 여성, 30대>

아무래도 막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생활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인 취업이나 법률 등과 관련한 교육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원 퇴소 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교육에 대한 기억이 남고 도움이 된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양성평등이나 인권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혹시 그러면 성희롱이나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이런 것도 받아 본 경험이 있으세요?) 성……. 그런 건 없어요. (하나원에서 혹시 받으신 교육은 있으세요?) 하나원에서 받은 건 성교육, 성희롱,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어떠냐하면 그것도 처음 들으니까……. (크게 내용은 안 들어오시고?) 장난으로 들었죠. (그러고 나서 나와서 들을 기회가?) 나와서는 뉴스나,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신문, 책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보고알고, 관례로 알고, 그래 알았지. 교육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해주는 건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모든 그 붕붕……. <사례 15, 남성, 40대>

(남자 분들은 이거 더 강의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제가 그날……. 제가 그 양주에 있을 때 갔을 때 그때 두 시간인데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안성하고 틀리죠. 팔짱 딱 끼고 심지어 그 날은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까만 선글라스를. 또 제가 체구도 작고, 나이

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제가 53살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40대였거든요. 그때는 더 체구 작겠다, 여자가 강의한다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어디 여자가 와서, 나이도 어린 것 같고, 체구도 작고 이런데, 그래 너 어디 한 번 뭐 하나 들어보자. 그 분위기가 온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가 짝 오면서 짝 느껴져요. 그래서 하다가 한 20분 정도 흐르니까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다가 쉬는 시간에 선글라스를 찾아가서 눈이 아프세요, 애 쓰셨어요 말을 걸었더니 막 웃더니 실은 선생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쓰고……. 이제 이거 듣기 싫다는 거죠. 뭐라 할지 아니까. 여자가 오고 이러니까 내가 듣기 싫어서 썼는데 이제 벗을 거라고, 본인도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마음을 연 거죠. 그래서 아, 쓰고 계시라고. 이제 이번 시간에 꼴 보기 싫은 소리 할 거니까 쓰고 계시라고 했더니 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적대감이예요. 적대감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얼마나 싫어요. 거부장제 건드리는 건데……. 특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5, 여성, 양성평등 교육 강사>

특히,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양성평등, 인권 등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저항감을 보이기도 한다. 주제의 측면에서나 여성이 강의를 하고 자신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나 해당 교육에 대한 불만을 상대적으로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에 따르면 남성들의 경계심이 교육을 진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 교육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성매매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건 많은 거죠. 그래서 월수 얼마,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제라고 보냐, 하면 또 이제 막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성매매를 하면 후훗해 저요. 그래서 제가 성매매 시간을 많이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벌써 이렇게 힘들게 하면 교육 효과가……. 이거를 내가 뭐가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 이런 거 정말 듣기 싫다가 되면 이 소중한 세 시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도 사례로,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중략) 성매매까지 다루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걸 그 감성적으로 이런 거 안 듣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고.) 건드리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딱 보면 가정 폭력까지도 웃어요. 그런데 성매매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약간 가라 앉는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겠죠. 겪었던 분도 있고 들었던 분도 있고 혹은 저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도 많이 오니까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이탈 여성들에 대한 이런 거 들으면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또 싸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급 마무리를 하죠. 드릴 정보만 드리고, 나쁜 기억 안 떠오르게끔 마무리하고 그렇게 끝내죠. <전문가 5, 여성, 양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경우는 남한과 다른 북한의 문화,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상처 등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이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사례 3>의 경우는 하나원 교육을 통해 폭력 및 성폭력, 언어폭력에 대한 개념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과거 북한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이 성폭력이라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좀 있어요?) 거기서 도움이 되었던 교육이요? 음.. 그냥 그런 생각 했어요. 때리면 안 된다.. 우리는 여자들도 막 싸우면 손찌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화가 나서 미치거나 때리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내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 함부로 언어폭력 안 된다는 것 모르거든요. 언어폭력 이런 것도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손찌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만 도움이 됐어요. (인권이나 양성평등 이런 교육도 받았었죠? 하나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 아니요. 저 나올 땐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양성평등 이런 건 들어봤어요? 남녀평등. 평등교육은 안 받아봤어요?) 네. (남녀관계에 대한 얘기도 안 들어 봤어요?) 성폭력에 대한 거는 들었어요. 성추행. 성추행이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교육해요? (성추행, 성폭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성추행이고 이게 범죄라고. 그런 거는 신고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북한은 보통 그런 거 해도 신고 안하는 분위기니까.. 그거는 신고하면 도와준다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와 닿았어요? 그 교육이?) 아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막 뭘 도와준다고 생각 안 하고.. ‘아.. 저런 민망한 교육을 왜 해?’ 막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죠. 성추행이라는 개념이 와 닿긴 했어요? 저게 어떤 게 성추행인지 이런 게 좀.. 실감이 나던가요? 처음 들어봤잖아. 그 말 자체를. (성폭력. 이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치마를 이렇게 짧게 입었는데 남자가 이렇게 만진다거나.. 신체 접촉 있거나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 이걸 성추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범죄구나.. 그런 정도로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사례 3, 여성, 30대>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고, 지역적응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역적응센터에서도 초기 집중 교육에서 이 부분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없다고 하는 점을 보았을 때,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질적 평가와 함께 향후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는 했지만, 직장이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사례 10>, <사례 6>, <사례 14>는 직장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효과로 보인다.

(성희롱, 성평등 이런 개념은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죠. 성희롱을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거나 누가 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거나 친구가 다니는데 내가 해결해 주려고 했거나 그런 일들은 있나요?) 누가 당했다고 해결해 준 것은 없고요. 누가 당했다고 얘기 들은 적도 없는 거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경험한 것도 없어요. (성희롱, 성추행이 어떤 개념인지는 아는 거죠? 뭐예요?) 술 마시면서 따라라 했다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아니면 손을 잡는다든지 뭐 원하지 않는데 그런 거.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원래 안 좋다는 행동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는 건 알고요.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반도체 다닐 때 한번은 받고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시간이 한 번 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사례 6, 여성, 30대>

(그러면 사실은 요즘은 큰 기업들,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하죠. 다. (하세요? 여자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셔가지고 안 하나 했는데 그런 교육을 하긴 하세요?) 다 하죠. 회사에서 다 하죠. (의무적으로?) 교육 다 받고, 안전교육도 다 받고 다 하죠. 그게 안 하면……. 우리는 그게 특히나 더 하지. 독일 쪽은.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세요?) 받을 때도 있고 바쁘면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좋아하죠. <사례 14, 남성, 30대>

그러나 직장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많은 수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직장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규모나 종사상의 지위가 이러한 교육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장 외에 다른 공간에서의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원에 입소해있을 때 보다 실제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을 통해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수혜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 하나원에서 그런 교육 받았던 경험 혹시 기억나세요? 양성 평등 교육이라거나 성 교육이라거나? 성희롱, 성폭력 대처 교육 같은 거?) 그런 건 안 받았고 그 교육, 그 뭐야, 직업 훈련을 내가 많이……. 아니, 제가 그 수술하다보니까 교육을 더러 빠진 게 많았어요. 내가 병원에 가 있는 기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건 그냥 취업 프로그램을……. (네. 혹시 직장에서도 요즘은 성희롱, 성폭력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런 거……. 그런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받았어요. 직장에 계속 오더라고요?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걸로?) 네. 그것 때문에 와서 해주시고 가시고……. 그런 걸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직장 의무니까…….) 네. (사실 하나원에서 꼭 받지 않더라도 나와서 받으면 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그 분들이 직접 와서 해주시니까. (아, 그렇게 되겠구나.)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 그런 건 또 혜택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사례 10, 여성, 40대>

<사례 13>의 경우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수강하면서 여성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처럼 학교 공간도 중요한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대학의 경우는 교양과목을 자신이 선택하기 때문에 의무화가 쉽지 않지만,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인 예비대학 등에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이용하거나 검정고시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규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이 속한 대안학교나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업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들으셨어요?) 페미니즘.. 아.. 저기 철학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근의 경향.. 철학.. 학구적인 경향에 페미니즘이 있고.. 그거는 이제.. 남녀평등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근데 여성들이 차별받는 거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배우셨어요?) glass ceiling라고.. 유리천장.. 그런 문제점들을 좀 배웠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북한 남성들이 좀 배워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데.. 근데.. 참 흥미로웠어요. 내가 당연히 여겼던 이 남녀관계 그리고 이 사회 안에 같이 존재하는 구성원들이.. 이러한 차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차별을 받고 있구나.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사례 13, 남성, 30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한 인지 수준은 ‘알고 있다’는 응답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성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해당 항목들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나원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생활과 매체를 통해 습득하게 된 정보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접근성 제고 등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교육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4-39〉 성희롱 및 성폭력 인지 수준

구분	총사례 수	잘 알고 있다		조금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200	41	20.5	92	46.0	40	20.0	12	6.0	15	7.5	
성별	남자	62	16	25.8	25	40.3	13	21.0	5	8.1	3	4.8
	여자	138	25	18.1	67	48.6	27	19.6	7	5.1	12	8.7

〈표 4-40〉 폭력 피해 지원 기관 인지도

구분	총사례 수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여성긴급 전화 1366		여성폭력 원스탑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진단서 발급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자립지원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관련 법 등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전체	470	66	41.0	62	38.5	17	10.6	63	39.1	68	42.2	69	42.9	41	25.5	11	6.8	24	14.9	49	30.4	
성별	남자	169	32	65.3	12	24.5	3	6.1	28	57.1	25	51.0	21	42.9	13	26.5	2	4.1	9	18.4	24	49.0
	여자	301	34	30.4	50	44.6	14	12.5	35	31.3	43	38.4	48	42.9	28	25.0	9	8.0	15	13.4	25	22.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의 실시는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관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5>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이 상황에 따라 교육 시수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측면 때문이기도 하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 역시도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5년 공무원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매우 낮은 교육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교육 실적으로 성인지 의식의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 통일부의 업무 특성이 성별과 관련성이 없게 여겨지는 측면도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정책을 비롯해 통일정책 전반에서 젠더 이슈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성인지 의식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통일부를 비롯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성인지 교육의 확대와 심화가 필요하다.

〈표 4-4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교육유형별, 직급별 교육실적

(단위: 기관, 명)

기관명(기관수)	전체	교육유형별			직급별		분석 평가 책임관	기관 담당
		위탁 교육	찾아가는 교육	자체 교육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a)		
전 체	73,032	1,560	3,572	67,900	9,261	63,771	250	330
중앙행정기관44)	5,371	150	900	4,321	2,182	3,189	33	63
기획재정부	4	0	4	0	4	0	1	1
교육부	9	6	2	1	2	7	1	0
미래창조과학부	7	3	4	0	2	5	0	1
외교부	49	2	1	46	12	37	0	0
통일부	3	2	1	0	2	1	1	1
법무부	7	2	3	2	1	6	0	2
국방부	63	3	52	8	16	47	2	3
행정자치부	362	5	4	353	295	67	0	0
문화체육관광부	11	5	6	0	4	7	0	1
농림축산식품부	5	2	3	0	1	4	0	0
산업통상자원부	7	4	3	0	3	4	0	0
보건복지부	13	5	8	0	6	7	1	2
환경부	57	3	51	3	16	41	2	3
고용노동부	17	4	2	11	2	15	0	0
여성가족부	143	31	112	0	64	79	3	1
국토교통부	2,040	2	245	1,793	723	1,317	2	12
해양수산부	9	1	8	0	3	6	0	1

※ 주 1: a) 특정직에는 군, 경찰, 소방, 교육, 연구직 포함.

※ 주 2: 2015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주요 장기과정 중 신입 관리자과정, 고위정책과정의 관련 교육실적은 인사혁신처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의 관련 교육실적은 행정자치부 자체 교육실적에 포함.

※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 p. 59.

### 3. 폭력 경험과 성인지 의식

#### 가. 폭력 경험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폭력과 관련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이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가깝기는 하나, 전체 국민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가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이 과소대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관련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에 대한 폭력 경험과 본 연구에서 면접을 통해 드러난 경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에서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관련하여 김원홍 외(2013)의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실태와 정책과제』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 김원홍 외(2013)의 조사 결과는 다음 <표 4-42>, <표 4-43>, <표 4-44>와 같다.

<표 4-4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성희롱	성폭력
있음	42(7.0)	19(3.2)
없음	555(93.0)	571(96.8)
계	597(100.0)	590(100.0)

※ 자료: 김원홍·김인순·황의정·박정란(2013),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실태와 정책과제』, p. 98, p. 100.

<표 4-4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

	성희롱			성폭력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1(16.7)	9(34.6)	3(30.0)	8(44.4)
일을 그만 둘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음	1(16.7)	6(23.1)	2(20.0)	5(27.8)
일을 그만 둘까 생각해 본 적 있었음	1(16.7)	5(19.2)	4(40.0)	3(16.7)
일을 그만 둔 적 있었음	3(50.0)	3(11.5)	1(10.0)	2(11.1)
계	6(100.0)	26(100.0)	10(100.0)	18(100.0)

※ 자료: 김원홍·김인순·황의정·박정란(2013),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실태와 정책과제』, pp. 99-101.



〈표 4-4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후 대처 방법

	성희롱	성폭력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음	24(57.1)	10(55.6)
상대방에게 사과 요구	11(26.2)	7(38.9)
상사 또는 고충처리기구에 처리 요청	1(2.4)	1(5.6)
관련 기관에 신고	1(2.4)	
회사 그만둠	1(2.4)	
무응답	4(9.5)	
계	42(100.0)	18(100.0)

※ 자료: 김원홍·김인순·황의정·박정란(2013),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실태와 정책과제』, pp. 99-100.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참고 말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엔 좀 천대받았지만, 기술 배워놓으니까 괜찮아요. 식당일보다. 식당일은 서서 일하잖아. 못 견디잖아요. 앉아서 일하니까 시간이 길어도 인건비는 작아도. 진짜 천대도 많이 받고, 성희롱도 많이 받고. (아, 진짜? 무슨 천대를 받으셨어요?) 아이고, 처음에 검사를 하는 사람이 몸을 섞어야 일이 잘 된대요. 일 배워준대. 그래서 성희롱 많이 받았어요. 고생 말할 수 없어요. (거기 몇 명인데, 직원이?) 직원이 아니고 팀별로 있어요. 한 팀이 3명, 4명. 한 팀이. 내 진짜 맨 처음에 스트레스 많았어. (다 남자에요?) 남자, 여자. 근데 그 오야지가 덜되게 논다니까. 가족도 있는 놈이. (그래서 어떡하셨어요?) 어떡해요. 일을 배우려면 울며 겨자 먹고 하고, 그리고 이젠 안 하지. 진짜 누구 말만따라 그렇게 해줬지.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지. 기술을 배우려면. (그러면 잘 해줘요?) 이제 다른 데 바꿨지. 내가 기술을 배우니까 차버리고 다른 데 가는 거지, 배반하고. (그뎨 그럼 잘 해주고? 그 사람이?) 잘 해주긴 뭘 잘 해줘요. 개네들이 무시 부러먹듯 하지. (중략) 9 주번에 또 당했다는 사람 없었어요? 말들을 안 했겠지. 서로? 창피하니까?) 응. 그리고 나도 말 안 하고. 처음 오니까, 언니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자로서 말할 수 있냐, 하니까 그래도 말할 수 있다고. 그게 그거라고. 그거 다 물어볼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냐. 아 말할 수 있다고, 그런 거. 내가 이제 뭐 시집 가냐, 뭘 가냐. <사례 11, 50대, 여성>

<사례 11>은 영세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야 했다. 그런데 기술을 가르쳐줘야 할 남성이 계속 성희롱을 하였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른 남성들도 회식 자리에서 계속 술을 먹이거나 집에 못가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사

례 11>을 괴롭혔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사례 11>이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자신이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면 참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 참아 넘겼고 기술을 배워 공장을 옮기는 것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례 11>이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더욱이 영세한 업체이고,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다시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이 참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이다. <사례 11>의 경우는 다른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경제적인 위치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인다. 영세한 업체 또는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체나 직종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모두 받는 상황은 아니고 인식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성희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희롱 및 성폭력, 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하더라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폭력을 당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다’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이 ‘신변보호담당관이나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한다’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5〉 성희롱 및 성폭력, 폭력 대응 방식

구분	총사례 수	혼자 참고 만다		주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청한다		주변 남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이나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기타		무응답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성희롱 및 성폭력	전체	200	1	0.5	5	2.5	1	0.5	3	1.5	53	26.5	52	26.0	0	0.0	85	42.5
	남자	62	0	0.0	2	3.2	0	0.0	1	1.6	7	11.3	21	33.9	0	0.0	31	50.0
	여자	138	1	0.7	3	2.2	1	0.7	2	1.4	46	33.3	31	22.5	0	0.0	54	39.1
폭력	전체	200	6	3.0	8	4.0	0	0.0	4	2.0	45	22.5	81	40.5	0	0.0	56	28.0
	남자	62	1	1.6	4	6.5	0	0.0	0	0.0	8	12.9	29	46.8	0	0.0	20	32.3
	여자	138	5	3.6	4	2.9	0	0.0	4	2.9	37	26.8	52	37.7	0	0.0	36	26.1

실제 폭력을 경험했을 때 대응 방식이 현재 생각과는 다를 수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대처 방법은 경찰이나 신변보호담당관,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 때 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상담사들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직장 내 폭력 외에 가정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다. 대다수가 그러하지는 않지만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속한 가족 내에서도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폭력이 ‘그렇지 않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 남성에게 의한 폭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생활비 문제(2번 문항)와 언어적인 폭력(3번 문항)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6〉 배우자의 폭력

		사례수	매우 자주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 때리려고 위협한다	전체	72	8	11.1	2	2.8	10	13.9	52	72.2
	남성	23	0	0.0	0	0.0	3	13.0	20	87.0
	여성	49	8	16.3	2	4.1	7	14.3	32	65.3
2)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전체	74	2	2.7	5	6.8	21	28.4	46	62.2
	남성	22	0	0.0	0	0.0	5	22.7	17	77.3
	여성	52	2	3.8	5	9.6	16	30.8	29	55.8
3)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욕을 한다	전체	75	9	12.0	9	12.0	13	17.3	44	58.7
	남성	22	0	0.0	1	1.6	4	6.5	17	77.2
	여성	53	9	6.5	8	5.8	9	6.5	27	50.9
4)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다	전체	71	9	12.7	3	4.2	6	8.5	53	74.6
	남성	22	0	0.0	1	1.6	1	1.6	20	90.9
	여성	49	9	6.5	2	1.4	5	3.6	33	67.3
5) 자녀에게 욕을 하거나 자녀를 때린다	전체	70	0	0.0	9	12.9	9	12.9	52	74.3
	남성	22	0	0.0	0	0.0	4	6.5	18	81.8
	여성	48	0	0.0	9	6.6	5	3.6	34	70.8

심층면접에서는 한 사례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2>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해 결국 이혼을 하였다고 한다.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처는 혼자 참고 마는 것이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어떤 방법을 써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00씨가 맞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땐, 맞을 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같이 막 소리도 질러봤다가 교양도 해봤다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술만 마시면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애는. (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피할 데가 없나?) 피해도 보고, 밖에도 나가보고 이려고 이랬죠. 그런데 맨날 술 마시고 그럴 때마다 밖에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막 그래도 봤다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디 뭐 상담을 받게 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상담 가라 해줘도 가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 너무 강해요. 그래서 창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 애들도 아니에요. (그럼 그런 문제는 00씨랑 얘기 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혼자 내가 가만히 있죠. (안 힘들었어요?) 힘든……. 그러니까 다음 날에 너무 잘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산 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개가 진짜 술 마시면 눈도 막 돌아가요, 애가. 뭐…….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로?) 아니, 술만 마시면. (세계 때렸어요?) 세계 때리는 것보다……. <사례 2, 여성, 20대>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의 문제는 그 현황이 정확히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폭력과 관련한 실태 파악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폭력 경험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기도 하고, 이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폭력이나 인권 개념이 한국 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하여 4점 척도로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항목에 따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강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은 ‘그렇다’라는 점수에 가깝고, 아내 폭력과 언어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피해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점

수가 높았다. 각 항목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강간 피해 신고에 있어 남성들이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여기는 점수가 여성 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내 폭력과 언어 폭력에 대한 점수에서도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 보다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력에 대한 감수성 함양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7〉 폭력에 대한 인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강간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187	2.79	0.89
	남성	57	2.79	0.84
	여성	130	2.78	0.91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전체	187	3.06	0.76
	남성	57	2.98	0.77
	여성	130	3.09	0.76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일이지 다른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전체	186	3.16	0.78
	남성	57	3.04	0.93
	여성	129	3.22	0.71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폭력이다	전체	183	2.09	0.96
	남성	56	2.14	0.96
	여성	127	2.06	0.96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북한의 문화와 자신의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층면접 자료에서 잘 나타나는데, <사례 13>의 이야기에서 처럼 북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폭력에 대해 관대한 측면이 있다. 북한에서는 폭력에 대한 개념이 엄밀화, 세분화되지 않고 있고, 언어적인 폭력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고, 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북한에서는 폭력이.. 성적인 거 말고라도.. 약간 폭력이 좀 관대한 게 있잖아요. 싸워도 좀 몸으로 세계 싸우고.. 근데 여긴 좀 그렇지 않은 편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그쪽은 북한에서는 막 싸워서 경찰에서 뭐라 크게 안하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경찰이 목격했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좀 훈계나 훈방조치하고 그냥 내보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냥 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에서 크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요? (아니예요.) 크게 막.. 주먹다짐하면서 막 이런 걸.. 그냥 뭐 TV뉴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끔씩 나오지.. 그냥 보기엔 조금.. 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보다는.. 북한 같은 경우는 맨날 싸우고 쥐어 터지고 코피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사례 13, 남성, 30대>

(한국에 와보시니... 그... 한국은 남녀평등 사회로 보이시나요?) 네...아 오히려 여자가 유세가 더 높습시다...아니 내가 거기에 감동 돼서...이제 뭐이나 하면, 그것부터 말했거든요,, 중국에 왔을 때에...난 뭐 내가 우리 처한테 뭐 잘해 준 것은 없거든요... 그래도 나는 뭐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은 합니다.... 한 번도 나는 때린 적은 없습니다. 뭐 큰 소리 친 적은 있었어도...어떤 때는 개 간나 새 간나 이렇게 욕을 소리를 지른 적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 처도 저 앞 쪽에서 왔으니 까니.. 내가 갑자기 이 쌍 머저리 같은 것이 어디서 그냥 대갈통을 부셔 버린다고 하면, 이려고 욕을 하면, 무서워한다고 해도... <사례 17, 남성, 50대>

<사례 17>의 경우는 언어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욕설은 했지만 때린 적은 없었다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때리지 않은 것 하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사례 3>의 경우는 언어적인 폭력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TV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썼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자신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그 드라마 어디서 '꺼져' 라는 말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야.. 꺼져' 그게.. 드라마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여자가 하는 게?)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되게 상처받았나봐. "욕 좀 하지마" 제가 쌍시옷 욕은 안 하는데.. '꺼져' 아우.. 뭐.. '미친 놈' 뭐 그런 거를..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미친놈 정도는 북한에서 욕은 아닌데.. 내가.. "욕에 개간나, 베이비가 들어가야 욕이지. 어떻게 미친놈이 욕이나"고.. 막 그러면서.. 아우.. 그런 것 때문에.. 문화를 점점점점 익히느냐고.. 좀 어려웠죠. 욕하잖아요. 욕 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쌍시옷 욕은 안 해요. 근데 막 '꺼져'라는 말은 엄청나게 썼는데.. 그게 되게 나쁜 말이더라고요. 상대가 들었을 때는.. (들어본 적 없죠?) 없어요. (웃음)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야 꺼져'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말을 아이들이 또 쉽게 써요. 학교에서. 지들끼리 장난 할 때는 '야 꺼져' 이려고.. 근데 그게 되게 귀엽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잘못 받아들인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귀여울 때가 있는 거고, 심각할 때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랬어요. 좀 하면.. '꺼져'라고 막 그랬어요. <사례 3, 30대, 여성>

사례들에서 나타나듯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왜곡된 문화를 습득하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관습과 인식, 개인적 경험들이 개인에게 내재되고 체화되어 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한의 대중매체에서 재현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왜곡된 문화가 선진적이고 세련된 문화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왜곡된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평등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도 있지만, 자신이 폭력의 피해를 경험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 나. 성인지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인식 및 인권에 관한 의식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인식 및 인권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성인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 4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해당항목에 동의할수록 1에 가까운데, 여성의 역할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이라는 점과 남성이 약할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높았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대우 차이에 대한 문항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의 정도가 여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성별고정관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전체	196	3.04	0.75
	남성	61	2.98	0.88
	여성	135	3.07	0.68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전체	197	2.75	0.86
	남성	61	2.92	0.86
	여성	136	2.68	0.85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전체	194	2.64	0.88
	남성	61	2.66	0.98
	여성	133	2.64	0.84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	195	3.12	0.69
	남성	61	3.05	0.74
	여성	134	3.15	0.67

본 연구와 유사하게 북한이탈여성의 폭력 인식 및 성인지 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 조사 연구가 된 바 있다. 안양여성의전화는 “북한이탈여성의 폭력 감수성과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수거된 설문지 378부 중 결측치 17부를 제외하고 361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적응실태조사』연구에서 400명의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에서 성평등의식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안양여성의전화의 실태조사에는 성인지 문항 14개, 성평등의식 18개, 성희롱·성폭력 인식 17개 문항을 다루었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4-49> 북한이탈여성의 성인지·성평등 의식 인식

변수	점수범위		평균
	최솟값	최댓값	
성인지	0.71	1.79	1.258
성평등 의식	1	5	2.817

※ 자료: 안양여성의전화(2016), 「북한이탈여성의 폭력감수성과 성인지의식 실태조사」 자료집. p. 22, p. 2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 2문항,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4문항, 폭력 인식 1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음 <표 4-50>과 같다.



〈표 4-50〉 성평등의식

(단위: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표준 편차
북한 이탈 여성 (N=400)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2.6	49.0	20.3	8.1	2.14	0.86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1.9	40.1	28.5	9.6	2.26	0.91
	직장에서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결국 피해자만 손해 볼 뿐이다.	15.3	31.6	40.2	13.0	2.51	0.90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변에게 알려봐야 이로울 것이 없다.	16.5	32.0	39.8	11.7	2.47	0.90
	성폭력은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이다.	24.3	25.3	34.4	15.9	2.42	1.03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19.0	30.1	34.4	16.5	2.48	0.98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44.7	28.7	16.2	10.4	1.92	1.01
경기도 여성 (N=742)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19.0	40.6	36.7	3.8	2.25	0.80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34.8	49.1	14.3	1.9	1.83	0.73
	직장에서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결국 피해자만 손해 볼 뿐이다.	12.8	23.0	51.2	12.9	2.64	0.86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변에게 알려봐야 이로울 것이 없다.	17.0	27.2	48.4	7.4	2.46	0.86
	성폭력은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이다.	29.5	29.1	26.3	15.1	2.27	1.04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18.2	41.0	35.6	5.3	2.28	0.82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44.1	39.1	15.9	0.9	1.74	0.75

※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의 평균값임.

2) 경기도 여성은 2015년 본원에서 경기도 여성 7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정혜원(2015), 「경기도민의 폭력 허용태도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참조.

※ 자료: 안태윤(2016),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적응실태 연구』, p. 96.

안양여성의전화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성인지 의식이 평균치를 웃도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남한 출신 경기도 여성과 성평등

의식을 비교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여성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의식의 경향성을 보여줄 수는 있다 하겠다. 심층면접에서도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났다.

<사례 6>의 경우 여자는 남자가 보호해주고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은 여성이라서 보호받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어려운 일을 여성인 자신에게 시키지 않고 남성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자신은 여성이라서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았고 그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워크숍 등에 가서 음식 등의 준비를 여성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런 점에선 북한에서 사는 여자로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만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요?) 네,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라서 남자가 벌어오면 여자가 살림을 하고요. 대부분 그러는 거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같이 벌어서 당당하게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진짜 좋다고 하면 그쪽이 그래도 괜찮을까 싶은데.. (중략)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경험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던 거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눈치우기 할 때도 아침 일찍이나 공공기관에서 눈 치울 때하고 비올 때도 우비입고 학교 가셔도 물 푸기같은 것도 하는데요. (여자는 덜 시켜요? 나오지 말라고 해요?) 예, 힘든 건 남자들이 하고 무거운 거 나르고 여자는 빗자루로 좀 쓸게 하고요. 거기 내부에서도 축제할 때도 남자들이 무거운 거를 나르고 여자는 쉬운 일을 시키고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사례 6, 여성, 30대>

이처럼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 반면, 자신의 능력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평등하고 자신 역시 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사례 3>은 결혼을 해도 공부할 수 있고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아무래도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및 교육의 기회가 법적인 보장과 달리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례 3>의 경우는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고,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 00씨는 남편하고 관계에서 본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네.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목소리 낼 거 내고, 그래서 북한에서의 그런.. 엄마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평등하지 않나. 여자들이 여기는 결혼하고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아니거든요. 임신만 해도 퇴학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수시, 정시, 뭐 특별전형까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열린 사회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기회가 많거든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 여성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인가.. 꽤 남자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례 3, 여성, 30대>

<사례 3>과 <사례 6>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및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경험에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별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럼 혹시 한국에서 여자라고 겪는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집안이나 직장에서 일을 구할 때나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북한 사람이라 서는 있는데, 여자라 서는 없는?) 그렇죠. 그냥 사무직 들어가기 힘들어서 웬만하면 그렇지 다른 데는 괜찮아요. <사례 4, 여성, 30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관계에서 거부를 당하는 경험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 보다 북한출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건이 모든 차별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차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별이라는 변수도 차별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참가형태, 임금 등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데도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적응에 있어서 남성 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성들 자신이 열세에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아.. 그럼 북한이탈 남성하고 여성은 서로 평등해요?) 여기 와서는 여성들이 우위죠. 그분들이 다 점령하고.. (아.. 뭘 점령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잘하고, 뭐 방송.. 취지도 뭐.. 간호학과 쪽으로 뭐.. 다 100%. (근데 수치상으로는 남성들이 취업률이 높고, 임금도 남성들이 높아요. 여성들이 한 70%밖에 안 돼.. 남성 임금이.. 북한이탈 남성 임금이 북한이탈 여성의 임금이 70%밖에 안돼요. 통계적으로는.) ..... 여성들.. 그분들 많이 왔잖아요.

계속 직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3개월 일하다 또 다른 데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통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제가 말씀드리는 젊은 친구들은 간호학과도 다 잘 가고.. 뭐 간혹가다 일하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물론 이제 남한 사회의 어떤 불평등구조 안에 편승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남성.. 단순히 그냥 우리 세대의 북한 여성, 남성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우위죠. 이게. <사례 13, 남성, 30대>

성인지 의식은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대처 양식을 실천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그리고 성별로 인한 차별 뿐만 아니라 타인 또는 타문화와의 소통과 이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나, 한국 사회의 문화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성인지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더욱이 내재된 북한의 가부장적 의식과 문화가 한국 사회의 적응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의식과 관련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제5장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 법률 성별영향분석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187
제2절. 경제적 자립지원 및 교육지원	189

통일부가 소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운영 둘째, 경제적 자립 및 교육지원이다. 각각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적응센터 등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성과계획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운영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여기에는 의료지원, 위기가정 긴급생계비지원, 생활안정지원이 포함된다. 둘째,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여기에는 취업지원센터운영, 전문직종 특화사업, 온라인배움터자격취득 교육사업, 청년세대바우처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셋째,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사업으로 여기에는 장학사업, 화상영어교육지원, 학습지원, 통일미래 리더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된다(통일부, 2016: 89).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사업의 예산을 보면, 2015년 기준 241억 8,9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사업과 비교해서 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표 5-1〉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관련 예산사업의 개요

사업명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수립, 지역협의회 운영,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 정착 지원
사업기간	'97 ~ 계속	'11 ~ 계속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금('12~)

사업명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지원조건	집행지침 등 제반 규정 준수	집행지침 등 제반 규정 준수
시행주체	통일부, 16개 광역지자체(94개 지역협의회, 31개 지역적응센터), 한겨레 중고등학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 예산(백만원)	9,084	24,189

※ 자료: 통일부(2016), 「2016년도 성과계획서」, pp 90-91.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성별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사업의 근거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성인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 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항을 보면, 성 중립적(gender neutral)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이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법률에 성별 특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보호기준 등)의 제1항을 보면,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기준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요구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특성이 간과될 경우 수혜대상자인 남녀 북한주민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

현행	개정 의견
제5조(보호기준 등)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기준은 성별,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시행령 제42조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제2항을 보면,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

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별 균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표 5-3>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현 행	개정 의견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2절. 경제적 자립지원 및 교육지원

경제적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정착금 지급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생활공간 제공 등의 사업이 있다. 주요 사업의 내용과 지원대상,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표 5-4>와 같다.

<표 5-4>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지원 관련 예산사업의 개요

사업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급 -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장려금, 교육지원금, 미래행복통장 등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능력 제고 - 현장체험, 직업탐색 및 직업훈련, 생활관 복수 공사 등
사업기간	'97 ~ 계속	'97 ~ 계속



사업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지원조건	전액 국고	전액 국고
시행주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5 예산(백만원)	77,000	14,108

※ 자료: 통일부(2016), 「2016년도 성과계획서」, pp 90-9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예산은 2015년 기준, 141억1,800만원으로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이 사업의 근거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 성 인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24조(교육지원)의 내용을 보면,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 5-5>와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표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

현 행	개정 의견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성별, 나이, 수학능력(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조항에서 양성평등의식 향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북한사회가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양성 평등한 남녀관계가 무엇인지, 양성평등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다음 <표 5-6>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현 행	개정 의견
<p>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p> <p>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통일부 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p>	<p>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p> <p>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통일부 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르고 <u>양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u>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p>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입국자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30대가 2015년 기준 2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8년에 여성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 30대 여성이 16.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하현선, 2016: 15).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교육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경험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5-7>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표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현 행	개정 의견
<p>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p> <p>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p>	<p>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p> <p>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u>만 40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u> 또는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u>만 40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단, 임신과 출산으로 진학이 지연될 경우 지원 기간 연장</u></p>

제6장

##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5
제2절. 정책 제언	205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 북한이탈주민 현황

#### 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29,830명이고, 이 중 여성이 21,114명, 남성이 8,71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71% 정도를 차지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 보다 높아진 것은 2002년 이후로 매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연령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30대가 8,602명(29.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다음이 20대 8,350명(28.3%), 40대 4,970명(16.7%)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47.6%로 가장 많은 비율이고, 다음으로 ‘자유를 찾아서’ 32.3%,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21.5%, ‘가족을 따라서’가 21.1%인 것으로 나타난다.
  - 성별로 탈북 동기를 살펴보면 여성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남성은 ‘자유를 찾아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학력과 직업, 생활수준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직업을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은 무직부양이 가장 많고, 남성은 노동자가 가장 많다.
  - 재북 당시 생활수준은 중간층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데, 여성이 남성 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은 전체적으로 중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수를 보이나,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여성 보다 남성의 학력 수준이 높았다.

## 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 구성의 형태로 ‘양부모-자녀’가구가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성인 단독가구’ 27.2%, ‘편부모-자녀가구’가 24.3%이다.
  - 성인단독가구와 편부모-자녀 가구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여성은 ‘중국출신’(34.8%)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 순으로 ‘북한출신’(31.6%)인 반면, 남성은 ‘북한출신’(86.5%)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 취학 전 자녀 유무의 상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취학전 자녀의 출생국은 ‘남한’, ‘중국’순으로 높는데 최근 제3국 출생 자녀의 수가 북한 출생 자녀의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과 관련하여 현재 다니는 학교를 살펴보면 일반대학교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이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 19.6%, 전문대학 16.0%이다.
  - 성별로는 여성이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 비율이 가장 높고, 남성은 일반대학교 재학 비율이 가장 높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로는 2015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59.4%인 것으로 나타난다.
  -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인 북한이탈주민 4,459명 중 여성이 4,506명, 남성이 1,95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사 사업체의 유형은 여성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남성은 ‘제조업’, ‘건설 및 운수업’ 순으로 높다.
  - 종사상의 지위로는 남성은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만족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높는데, 만족의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인 것으로 나

타난다.

-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남성 보다 높았다.
  - 향후 남한 생활에 대한 기대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다.
-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받고 싶은 지원은 여성의 경우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순으로 응답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

###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내용에 따라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법」, 「교육법」 등에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의 기본교육과 지역적응센터의 지역적응교육으로 이루어진다.
  - 정착금은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금과 지방거주 장려금,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이 있다.
  - 주거는 주택알선과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을 지원한다.
  - 취업 지원은 직업훈련비 및 훈련 수당,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의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로 통

합되었다.

- 사회보장은 생계급여와 의료보호, 연금특례가 있고, 교육은 특례 편입학, 학비지원이 이루어지며, 상담의 경우는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취업, 심리, 의료에 대한 상담원이 진행되고 있다.

#### 나. 경제적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과 취업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안정 지원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고, 취업지원은 직업훈련비 및 훈련 수당,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지급과 자산형성제도로 진행되고 있다.
- 생활안정 지원 정책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적용 수급자의 수가 2013년 5,627명에서 2015년 3,499명으로 줄어들었다.
  - 성별로 특례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은 41.4%, 남성은 42.5%로 나타난다.
  - 특례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정착지 진입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50%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고, 여성이 남성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 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5.3%이고, 여성 29.3%, 남성 15.1%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이 높아 여성의 수급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처한 고용 환경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취업지원 정책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은 여성의 수혜율이 높으나, 실제 취업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취업장려금 수혜율은 남성이 높다.
  - 직업훈련 수당 수혜율은 남성 7.9%, 여성 12.5%, 직업훈련 장려금은 남성 3.8%, 여성 7.0%, 자격취득 장려금은 여성 9.6%, 남성 6.2%이다. 반면

- 취업 장려금은 남성 35.6%, 여성 33.3%로 남성이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
- 자산형성제도의 경우 2015년 시행된 이후 남성 1명, 여성 7명이 신청하여 여성 신청자가 많으나, 신청 액수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은 1인당 평균 신청액이 6,000,000원이고 여성은 5,400,000원이다.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비율은 2015년에는 남성 26명, 여성 134명으로 여성의 수가 많은데, 취창업률에서는 남성 84.6%, 여성 51.5%로 남성의 취창업률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난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2015년 이용자가 299명으로 취업 연계율은 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사회문화적응 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적응 지원은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교육과 함께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원에서는 12주간 총 39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적응센터는 2주 동안 60시간의 교육을 운영한다.
  - 사회적응교육의 경우 하나원교육과 지역적응센터 교육은 거의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원을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거쳐 가기 때문이고, 지역적응센터 역시 지역배정 직후 지역 사회적응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
  - 하나원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관련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지원은 하나원에서 건강검진과 진료를 지원하는 것과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 지원은 하나원에서 심리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적응센터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 의료 지원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의료 급여 1종 수급자 구성은 여성이 11,741명, 남성 4,699명으로 모집단 대비 성별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 지역적응센터의 상담실적으로는 취업이 11,817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 건수였고, 심리·정서 11,234건, 건강 9,497건으로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
- 교육지원은 정규학교 지원과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규학교 지원은 편입학 및 학비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은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하였다.
- 정규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우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남성은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비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607명, 남성이 3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경우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하는데 하나원은 전체 교육 시간 중 3시간, 지역적응센터는 2시간을 배정하고 있었다.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은 만족도 하위 10위 과목에 포함되고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 가. 경제활동 경험

-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하나원 퇴소 직후인 경우가 전체의 23%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 지역 정착과 함께 생계비를 수급하더라도 생활비와 브로커 비용, 북한 송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르바이트이고, 주로 서비스직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 정착 초기의 아르바이트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

기는 하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하게 되는 일의 특성 상 경력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별로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미루는 경우도 많았다.

-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율과 장려금을 수령한 비율에서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참여율과 수령비율이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양상은 자격증 취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 취업 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취업을 하더라도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거나 자격증과 관련된 취업을 하는 비율은 낮다는 것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여성들의 취업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생애 주기와 정착 단계, 진로 등 정착과 생활 전반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훈련부터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인 직업 교육이 아니라 정착 단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 속에서 직업 탐색을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탈주민의 구직활동 경험을 살펴보면 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기보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 북한이탈주민이 공공지원 기관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공지원 기관에서 연결해주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회의적이기 때문이었다.

-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 47.2%, 남성 60.3%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 임금은 145.2만원인데, 남성은 180.4만원, 여성은 130.3만원으로 약 50만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다.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은 제조업과 음식점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고, 남성은 제조업과 건설 및 운수업이 높다. 이러한 직종의 분리가 임금에서 성별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근로형태는 북한이탈주민의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 여성의 경우 30-45시간 미만, 3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보다 월등히 높아 여성의 근로 시간이 남성 보다 짧음을 알 수 있다.
  - 여성들의 근로 시간이 짧은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고, 육아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와 노동 문화의 차이가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 직장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의 문제는 남성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에 비해, 일하는 방식과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직장생활에서 나서는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교육기회 및 경력 단절의 문제와 교육 기회 부족의 문제이다. 세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네 번째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직장 내 조직 문화의 부적응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획이 없다 보니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된다.

## 나. 사회문화 적응 경험

-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 정착과 경제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로 꼽는 것이 건강상의 문제이다.
  -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환경,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외상,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입국 초기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녀 양육에만 몰두하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다.
  -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가족 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은 가족 문화와 자녀 양육,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에 비해 남성은 직장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배우자가 남한 출신, 중국출신, 북한 출신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특성이 가족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았다.
  - 이러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은 배우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남한 출신 남편의 경우는 문화적 차이와 북한 출신인 자신에 대한 무시가 갈등의 원인이었고, 북한 출신 남편은 과도한 음주와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하였다. 중국 출신 남편의 경우는 언어의 문제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특히 북한 출신과 중국 출신 남편의 경우는 이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 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녀 양육 문화의 차이도 어려움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다른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자신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과 이성 교제에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 보다 남성의 경우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으로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등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수혜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 조사 전체 사례 수 200명 중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75.5%였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83.5%였다.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함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당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시행한 교육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직장에서 받은 교육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규모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폭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과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력은 배우자와 직장 상사에 의한 경우들이

있었고, 피해들에 대해 참고 말거나 개인적인 차원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 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별 차이는 나타났는데, 여성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보였다.
-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의 정도가 여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여성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인식하기도 하였다.

####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성별영향분석

-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법률과 시행령, 규칙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 범위, 기준 등에서 성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 제2절. 정책 제언

#### 1. 정책 수혜율 제고

- 1)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  
(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

하는 것이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접할 수 있지만 사전 지식의 정도에 따라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를 야기하므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한 정보 및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대부분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업 정보와 생활 정보를 연계하게 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관을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 관련 안내를 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 다각화

-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일하기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 등이 있다. 정책이나 지원 서비스가 많은 것은 이들의 정착을 돕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하다 보니 정보 소외 집단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난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여성 북한이탈주민 특화 사업 소개는 미비하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 포함시켜 소개하고 연계시킬 것을 제안한다.
-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초기 적응 교육을 할 당시, 관련 기관 소개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지역의 새로일하기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는 관련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기관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방안은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해당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선안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합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공</li> <li>·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정보 연계</li> <li>- 각종 지원 서비스 정보 연계</li> <li>- 성폭력 및 가정 폭력 등 폭력 피해 신고 및 대처 방안 소개</li> <li>- 지원 서비스 기관 소개 등</li> </ul> </li> </ul>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li> <li>-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연동</li> </ul> </li> <li>·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 초기 적응 교육 시 관련 기관 및 지원 사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관 방문이나 기관 담당자 프로그램 참여 등</li> </ul> </li> </ul>

## 2. 경제활동 지원

### 가. 정책 제언의 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 의존율이 높다. 특히 여성의 수급율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취업률도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은 130.3만원으로 남성 북한이탈주민 180.4만원의 72% 수준이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요인에 더해 ‘여성’요인이 겹쳐져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도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초기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간제 노동을 시작하고 중간에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첫 시작 시기는 퇴소 직후인 경우가 23%로 많은 수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일 시작 시점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개월 이상-3개월 이내’ 일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이었던 것에 비해, 남성은 ‘6개월 이상-12개월 이내’가 많은 비



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났는데,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비와 브로커 비용,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을 위해 일을 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영양 상태는 이미 북한에서 열악했었고, 탈북과정의 상처,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런 문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 및 근로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거나 자격증 관련 분야에서 취업을 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낮았다. 이런 사실은 직업훈련이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 직업훈련 수당 및 장려금, 자격 취득 장려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나, 취업 장려금은 남성이 35.6%, 여성이 33.3%로 남성의 수혜율이 높았다.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취창업률에서 남성 84.6%, 여성 51.5%로 남성의 취창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 남한에서 취득한 학력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년제 일반대학교와 대학원 이상에 재학하는 비율이 높다. 이런 사실은 곧 취업에 있어서 남성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탈주민은 구직과정에서부터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과 무시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 나. 정책 제언

### 1) 여성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 자산형성제도의 가입 조건 완화(통일부 정착지원과)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주요한 목적으로 2015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을 실시하고 있다. 자산형성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착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월평균 임금이 130만 원 가량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최소 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1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혜율을 제고하려 한다면 가입 금액의 하한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가입금액을 5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 최근 통일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정책에서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가입 요건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2017년 해당 지침을 개정할 때 이번 제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현행	개선안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 중 지원 범위	근로소득의 30%이내(10-50만원) 중 본인이 계좌 개설시 설정한 저축 금액에 대해 1:1 매칭	현행 하한선 기준 10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 또는 하한선 폐지

○ 체험 중심 직업 교육과 의사소통 훈련 지원

(통일부 하나원, 지역적응센터,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북한이탈주민은 구직활동 단계에서 직업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남북한의 다른 산업 구조와 기술 발달 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업의 종류나 업무의 방식, 기술 등에서 차이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려고 해도 직업이나 업무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체험 중심의 직업 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정책적 요구가 나타나게 된다.
-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체험 중심 직업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에서 이미 실시하는 산업체나 폴리텍대학이나 기능대학 관련하여 견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

의 전문대학 협조를 구해서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폴리텍 대학은 주로 남성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폴리텍 대학 프로그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한 뒤 개선안을 도출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탈주민의 구직과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의사소통 훈련과 스피치 교육 과정이 있다. 남한 보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정착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은 타인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직장 생활 적응에서도 언어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억양과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직과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
  - 그런데 현재 의사소통 훈련이나 말하기와 관련한 부분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직업훈련 과정에 말하기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취약계층 특화 계좌적합훈련과정(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언어 및 의사소통 관련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시기에 따른 단계별 적응, 취업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통일부 정착지원과)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제고하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단계별 진로 지원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국 초기 5년 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주지만, 언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거주지 진입 직후와 1년 후, 2~3년 후, 5년 후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의 내용과 질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적응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면, 정착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적응센터, 고용지원센터, 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정보서비스 연계 강화(통일부 정착지원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적응센터와 고용지원센터,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의 중복성이 갖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한계일 수도 있다.
-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고,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상담과 알선 등이 전문화, 체계화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에 특화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세 기관이 공식 연계망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지원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세 기관의 업무 협력은 사례 관리와 대상자 발굴 및 접근, 일자리 발굴 및 연계의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했던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초기 대상자 발굴과 기관 연계,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 사례 관리, 기관 업무 연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적응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연계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진로 설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에서 나타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50%가 넘고, 새로일하기센터 이용율과 취업률이 취업성공패키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지원센터는 진로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에 특화된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진학 및 학업 유지 지원 기한 연장  
(통일부 정착지원과)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제고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 개선이

라 하겠다. 현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임금은 매우 낮고, 고용상의 지위도 열악한 상황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지니고 있던 경력이 남한에서 단절된 것이기도 하고, 이들이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취득 상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일반대학교 재학 비율이 더 높고(남성 32.5%, 여성 29.5%), 대학원 이상 재학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남성 5.2%, 여성 3.1%).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의 질을 개선을 위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진학 지원 조건은 만 3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영향으로 교육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만 40세로 연령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연령 조건의 조정은 대학 진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전공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학하거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학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여성의 진학률을 제고하고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데 간접적이거나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연령 조건의 조정을 제안한다.
- 교육 지원 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여성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 지원 기간을 6년 범위 내 8학기 지원을 7년 범위 내 9학기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복지지원

#### 가. 정책 제안의 배경

-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 정착에서 문화적이거나 심리·정서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아울러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에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기존 연구와 조사에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는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상태나 질병, 성장 상태 등이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재북 당시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의 이산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남성의 경우 음주와 관련한 중독의 문제도 심각하다. 여성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배우자의 음주가 가정 내 안정을 해치는 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남성 및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정도에 따라 갈등이 발생한다. 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이런 현실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는 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 및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속도의 차이는 부부관계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켜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배우자가 중국 출신인 경우가 많고, 자녀도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출생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적응과 함께 가족의 적응을 도와야 하며 가정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등 정착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이는 북한 사회가 가부장적이며 인권 의식 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정착하려면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특히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은 자신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관련 교육을 보장 및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 내용 중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3시간에 그친다. 그나마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시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응센터에서도 교육을 진행하지만 교육 시간이 2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다.
-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를 거친 이후에는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다. 직장이나 대학에서 교육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적은 숫자가 이러한 기회를 갖는다. 왜냐하면 관련 교육을 시행할 정도 규모에 종사하거나 대학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은 한 두 차례 교육으로 함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야 교육을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남성에 비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하겠다.

## 나. 정책 제언

### 1) 북한이탈주민 복지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중독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중독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지원은 현재 질병은 아니지만 향후 질병이 발현하거나 가정 및 사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에도 개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독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알콜 중독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마약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들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는 여전히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알콜 및 약물 중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특화시켜 실태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의 연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중독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2)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보장 및 전문화

-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 내실화(통일부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처음으로 양성평등 및 인권 개념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율이 높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교육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그런데 하나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다 보니 진행 상황에 따라 교육 시간 조정으로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시간이 과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지역적응센터의 경우도 2시간 정도 배정되어 교육의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이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적어보이지만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교육은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의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 관련 교육 시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교육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
  - 현재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은 표준화된 매뉴얼보다 개별 강사의 커리큘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과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현재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관련 분야 교육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파견 강사를 통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남북하나재단 교육 매뉴얼에 해당 분야 교육 내용을 제시해 놓았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보인다. 이때 교육 매뉴얼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그리고 개발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재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보수 심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강사 교육 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강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교육 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폭력 및 차별 대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익정책과)

-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통해 폭력이나 차별에 대응하는 기본적 역량을 갖추게 하고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이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발한 매뉴얼은 여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다.

3) 지역적응센터 상담의 전문화

○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강화(통일부 정착지원과)

-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폭력 피해를 당하면 신변보호 담당관이나 전문상담사와 의논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문상담사의 해당 분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심리분야 전문상담사의 경우 성인지 교육이나 성폭력 상담 교육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특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지침」에 전문상담사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 부분을 명시하고, 이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폭력 피해 지원 전문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통일부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이 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적응센터와 신변보호담당관, 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적응센터와 폭력 피해 지원 기관이나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북한

이탈주민이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 해당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기회를 지역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정책 수립 및 실행체계

### 가. 정책 제언의 배경

- 양성평등정책의 실행과 정책 효과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의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려면 마땅히 관련 법률 근거를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지 않은 채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혜와 관련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책적 요구와 정책 수혜에 대한 성별 분석을 하려면 성별분리통계가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 우선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해야 하고, 실태 파악 조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통일부에서는 2년에 1회씩 전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착 실태를 세분화하여 경제 및 사회분야 정착 실태를 조사한다.
  - 해당 조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성별을 분리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경험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관련 문항

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조사에서 여성노동 인식을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외 남성과 여성의 경험 차이를 반영한 조사 문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이를 고려한 조사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조사문항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한 뒤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 성희롱 및 성폭력,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 관련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자료의 성격상 외부 발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먼저 공무원과 사업담당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해당 공무원,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 관련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 수혜율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책의 접근성이 수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취업 등 정착 관련 정보를 혼자 스스로 알아서 찾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탐색하고 있었다. 자연히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정책의 접근성과 수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 여성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양성평등 및 인권, 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그러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폭력, 차별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정책 제언**

**1)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담당 부처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통일부의 경우 성인지 교육 수혜율이 낮은 실정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 하나원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선안
사업 추진 내용	· 각 부처의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통일부는 낮은 이수율을 보임	· 통일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 북한이탈주민정책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율 증대
지침 개선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지침)	제6조(활동 지원) ④ 이사장은 상담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과 슈퍼비전,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상담사의 슈퍼비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④ 이사장은 상담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과 슈퍼비전,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상담사의 슈퍼비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상담사들의 성인지 의식 함양을 위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2) 성인지적 관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실행을 위한 체계 마련**

- 유관부처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책 협의체 구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해당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이 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 기구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정책을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 이 협의체는 통일부(통일여성정책과)가 주체가 되어서 해당 부처의 담당자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보장
- 성인지적 관점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개선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위원) 7.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및 정책 수혜에 대한 성별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 성별분리통계 생산  
(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 수혜와 관련한 성별분리통계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도 성별로 분리해 놓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성별분리통계를 요청하고 이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초 자료를 구축할 때부터 성별분리통계를 마련하고 이를 발표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에서 성별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성별분리통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나 만족도 조사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분리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관련 서식에 성별 표기가 빠져 있다면 성별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부처 및 기관	내용
통일부	· 교육지원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성별 표기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	· 관리대상자 명단 · 만족도 조사 설문지 · 감사현황 등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성별분리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통계 사이트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통계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관련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사이트 내에 특화 통계 DB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항목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정착 경험의 성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 조사 추진

(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

- 현재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문항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선택 문항을 수정·보완한 뒤 정착 실태에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착 경험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문제, 일-가정 양립 관련 문항 등을 개발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80% 정도가 여성이지만 성별 요인에 따른 실태 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려면 성별 요인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의식과 인권 개선을 위해 이들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관련 실태 조사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는 실태조사 외에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 조사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간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개선안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결과에 대한 성별 응답율 제시</li> <li>· 성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문항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li> <li>· 조사문항 및 선택 문항 개발</li> <li>· 건강, 일-가정 양립, 인권 상황 등에 대한 문항 개발 및 추가</li> </ul>
조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에 1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조사</li> <li>· 매해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조사</li> <li>· 매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10개 부문 중 5개 부문씩 매해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북한이탈주민 실태에 대한 별도 조사 진행</li> <li>· 북한이탈주민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문항 추가</li> <li>*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협력</li> </ul>

#### 4)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안(통일부 정착지원과)

	현행	개정 의견
보호 기준	<p>제5조(보호기준 등)</p> <p>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제5조(보호기준 등)</p> <p>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기준은 성별,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교육 지원	<p>제24조(교육지원)</p> <p>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4조(교육지원)</p> <p>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성별, 나이, 수학능력(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 의견
	<p>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p> <p>② 통일부 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p>	<p>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p> <p>② 통일부 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u>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르고 양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u>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p>
	<p>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p>	<p>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u>40세 미만에</u>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또는</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이 지연된 경우 만 40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사람.</p>



## 참고문헌

- 강일규(200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강일규·김종우(2006), 『새터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 강혜영 외(2009), 『입국 후 5년 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 통일부.
- 고지영·정형옥·최용환(201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와 취업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강녕(2012), “대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 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권 1호.
- 김승희(2009), 『강원도 새터민 생활실태 분석』, 강원발전연구원.
- 김연희(2010), 『하나센터 서비스 효과성 평가』, 통일부 용역보고서.
- 김영수 외(2010),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 행정안전부.
- 김영운·양연모(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 김원홍·김인순·황의정·박정란(2013),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실태와 정책과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김재엽·류원정·김지민(2014), “탈북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6, pp.85-107.
- 김정규 외(2009),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및 초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 김현수·김수원·김민규(201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경로 분석”,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9(1), pp.45-79.
- 나영주(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검토”, 『민족연구』 66권.
-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노경란·전연숙(2009), “입국 초기 새터민의 진로개발을 위한 직업카드 분류법의 적용 연구.” 『직업교육연구』 28(1).
- 박성재(201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및 취업지원제도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박성정·문미경·장명선(2011),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성정·오은진(2012),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개선과제”, 『직업교육연구』, 31(4), pp.135-152.

- 박정란(2009), “여성새터민이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집.
- 박정란·강동완(2011), “탈북여성 연구: 동향, 쟁점,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5(2).
- 북한인권정보센터(2016),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 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
- 서창록(2010),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동서연구』, 22(1).
- 선한승(2005),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송인호(20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10호.
- 안상윤(2013),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 연구: 지원제도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4(5).
- 안선영·류성혁·김석배(2015), “단일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탈북자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대한내과학회지』, 89(1), pp. 54-63.
- 안양여성의전화(2016), 『북한이탈여성의 폭력감수성과 성인지의식 실태조사』 자료집.
- 안연진(200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태윤(2012),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오수성 외(2008), 『새터민을 위한 PTSD 극복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 유길상·김화순(200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직업훈련 지원방안』, 노동부.
- 유욱(2008),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공법연구』, 36(4).
- 윤여상(2007),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및 조기 정착방안』, 자유기업원.
- 윤여상·이금순(200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 윤홍희(2010),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대책”,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이금순(1995), 『북한 이탈주민 대책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 이기영·안혜영·이민영·박은숙·박윤숙·김현경·김선화(2008).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 서울: 나남.
- 이수연·김원홍·김영택·김인순(2012),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애란(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 조사 및 지원정책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우영 외(2000),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이주호·배정환(2011),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충청북도

-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 임인숙·윤인진(2008), “북한이주민의 성역할태도와 부부권력의 변화와 지속”, 『가족과 문화』, 20(3).
- 장미혜·박건표·전미현·정지연(2014),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지영(2000),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본국귀환 및 정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논집』, 제5호.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성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정혜숙·최윤정·최자은(2012),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 실태 분석 및 여성청소년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동운·김용태(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2).
- 조영아·김연희(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5(3).
- 조영아·전우택(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1).
- 조은상(2012), 『북한이탈주민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대석·박영자(2011), “북한이탈주민 정책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51(1).
- 최선경(2011),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정착지원 방안”, 『평화학연구』, 10(1).
- 최성일 외(2008), 『경기도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용환·김동성·김영수·이금순·윤여상(2005), 『북한이탈주민 대거유입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및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최용환·김을식(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개발연구원.
- 통일부(2014),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통일부.
-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 통일부(2016), 『2016년도 성과계획서』, 통일부.
- 하영수(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1).

-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한반도평화연구원(2009),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통해서 본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한반도평화연구원.
- 홍선영·이기영·권신정(2009),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승아·김소영·박정란(2012),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인창(2007),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개선방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권미혁 의원실 보도자료, “탈북여성 2만명, 탈북 생계급여 수급자의 70%이상이 여성”, 2016. 10. 18.
- 이용호 의원실 보도자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2016. 09. 18. 『여성신문』 2016년 6월 17일자.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법령시스템, <http://www.elis.go.kr>
- 이스라엘 정부 이민자 정착지원 부서 홈페이지 <http://www.moia.gov.il>
- 이스라엘 정부 이민자 정착 지원 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



---

## 부 록

[부록]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양성평등 등 교육 실태 조사 설문지	231
--	-----

## [부록]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양성평등 등 교육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은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하는 중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나 신상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10.

주 관 : 여성가족부

조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문 의 처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tongil@ewha.ac.kr)

◎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1. 선생님은 남한에 와서 일을 해 본 경험(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 일한 경험이 있으면 다음 장에서 2번으로, ② 일한 경험이 없으면 3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7. 취업박람회를 비롯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지 적어주십시오. (예: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명	주최기관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7-1.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족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에 필요한 정보(이력서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 ② 일자리로 연결이 되었다
- ③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 ④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다
- ⑤ 경력에 도움이 되었다
- ⑥ 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⑦ 기타 ( )

7-2.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족스럽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 ② 일자리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 ③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다
- ④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 ⑤ 기간이 너무 짧았다
- ⑥ 기타 ( )

8. 선생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문가와 취업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5. 선생님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혼자 참고 만다.
- ② 주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주변 남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④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⑤ 신변보호담당관이나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⑥ 경찰에 신고한다
- ⑦ 기타 (                    )

16. 선생님은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혼자 참고 만다.
- ② 주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주변 남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④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⑤ 신변보호담당관이나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⑥ 경찰에 신고한다
- ⑦ 기타 (                    )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답해주세요.**

17. 선생님은 현재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동거            ⑤ 사별

**◎ 결혼한 경우만 응답해주세요.**

17-1. 선생님의 배우자(동거 포함)는 어느 나라 분입니까?

- ① 남한            ② 북한            ③ 조선족        ④ 한족            ⑤ 기타

17-2. 선생님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불만족한다    ④ 매우 불만족한다

17-3. 다음 중 배우자의 행동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자주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때리려고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2)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다	①	②	③	④
5) 자녀에게 욕을 하거나 자녀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답해주세요.

18. 선생님은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강간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6)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7)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일이지 다른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폭력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해주세요.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령	만 세	거주지역	서울 인천 경기
탈북년도		입국년도			
가족형태	현재 귀하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없음 ② 남편 또는 아내 ③ 부모 ④ 자녀 ⑤ 손자녀 ⑥ 기타				
거주형태	① 임대아파트 ② 개인소유주택 ③ 기타				
학력	북한: ① 소학교(인민학교) ② 중학교(고등중학교) ③ 전문학교 ④ 대학교				
	남한: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재북 당시 직업	① 일을 하지 않았음 ② 학생 ③ 군인 ④ 노동자 ⑤ 사무원 ⑥ 농장원 ⑦ 고위직 관리 ⑧ 전문직(의사, 교사 등) ⑨ 장사 ⑩ 기타 ( )				
생활비 충당 방법	①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는다 ②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산다 ③ 배우자가 주로 돈을 벌고, 나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다 ④ 생계비로만 생활한다 ⑤ 생계비를 받으며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다. ⑥ 기타( )				

연구보고 2016-5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년 11월 30일 인쇄

2016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 강 은 희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801-01